

KINU 연구총서 11-05

북한형사재판제도: 특징과 실태

이규창 · 정광진

KINU 연구총서 11-05

북한형사재판제도 연구: 특징과 실태

이규창·정광진



북한형사재판제도 연구: 특징과 실태

인 쇄 2011년 12월

발 행 2011년 12월

발 행 처 통일연구원

발 행 인 통일연구원장

편 집 인 북한인권연구센터

등 록 제2-02361호 (97.4.23)

주 소 (142-728) 서울시 강북구 한천로 1307(수유동) 통일연구원

전 화 (대표) 900-4300 (직통) 901-2528 (팩시밀리) 901-2572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기획·디자인 두일디자인 (02-2285-0936)

인 쇄 처 (주)현대아트컴

ISBN 978-89-8479-609-6 93340

가 격 ₩ 8,000

© 통일연구원, 2011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정부간행물판매센터:

•매장: 734-6818 •사무실: 394-0337



북한형사재판제도 연구: 특징과 실태

□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목 차

요약	vii
I. 서론	1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3
2. 연구범위	4
3. 연구방법	6
II. 북한형사재판제도의 연원	9
1. 국내법	11
2. 국제법	31
3. 초법적 규범	37
III. 정규재판제도	47
1. 형사사법제도의 특징	49
2. 재판절차 및 재판심리상의 특징과 실태	59
3. 판결·판정 집행의 특징과 실태	81
IV. 유사재판제도	97
1. 국가안전보위부의 정치범 판결	99
2. 동지심판	101
3.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	112

북한형사재판제도 연구: 특징과 실태

V. 특별형사제도	127
1. 인민보안단속	129
2. 행정처벌	138
VI. 결론	151
참고문헌	159
최근 발간자료 안내	167



표·그림 목차

<표 II-1> 북한 형법 주요 조문 내용 대조표	22
<표 III-1> 재판의 독립에 대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생각	53
<표 III-2> 북한 재판소의 관할 및 심급	58
<표 III-3>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 및 구성요건	82
<표 III-4> 북한의 강제노동 처벌 비교	93
<표 V-1> 행정처벌의 종류와 대상행위	141
<표 V-2> 행정처벌 대상행위와 처벌 종류	144
<그림 II-1> 북한 인민보안부(구 인민보안성) 포고문	40
<그림 III-1> 북한 최고재판소 재판정의 모습	61
<그림 III-2> 유나 리 재판일지	65
<그림 III-3> 북한주민들의 변호 받을 권리 인지 정도	74
<그림 III-4> 북한 내 변호인의 역할	77
<그림 III-5> 최고재판소의 사형집행 승인 요청문건 (1)	86
<그림 III-6> 최고재판소의 사형집행 승인 요청문건 (2)	87
<그림 IV-1>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의 행정처벌 흐름도 ..	123
<그림 V-1> 구 사회안전단속법상의 단속행위	131
<그림 V-2> 인민보안단속법에 추가된 단속행위	132
<그림 VI-1> 북한형사재판제도의 관계 및 구조	156

요 약

본 연구에서는 북한형사재판제도를 특징과 실태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제2장에서는 북한형사재판제도의 연원을 살펴보고, 제3장에서는 정규재판제도의 특징과 실태를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유사재판제도를, 제5장에서는 특별형사제도를 살펴보았다.

북한형사재판제도의 연원(淵源)은 크게 국내법과 국제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북한 형법은 2004년 전면 개정되면서 조문의 체계화, 죄형법정주의 채택과 유추해석 허용 조문 삭제, 형벌 종류의 재정비 및 법정형의 완화, 구성요건의 구체화, 경제범죄 등 사회변화의 적극적 반영 등 긍정적으로 평가될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었다. 그러나 2007년 형법부칙(일반범죄)의 제정으로 반국가범죄를 제외한 일반범죄에 대하여 무기노동교화형 내지 사형으로의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체제안보적 형법의 기능을 보다 강화하였다. 이어 북한은 2009년 4월에 형법을 대폭 개정하면서 체제유지와 관련되는 규정들을 정비하고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1963년 채택된 영사협약은 영사기능의 하나로 국민의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제5조). 또한 영사협약 제36조는 파견국 국민과의 통신 및 접촉에 대하여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과 영사관계가 체결되어 있지 않지만 북한과 수교한 스웨덴 대사관을 통해 영사접근권을 추구한 바 있다. 반면 2009년 3월 발생한 개성공단 직원 조사과정에서는 이와 같은 기본적인 권리들이 전혀 보장되지 않았다. 한편, 북한에서는 김일성 교시나 김정일 말씀, 노동당의 지침·방침·원칙 등이 초법적 기능을 하고 있다. 형사재판과 관련하여서도 김정일 말씀이나 노동당의 지침이 인민보안부 포고 형태로 이

행되는 경우들이 있다. 이로 인해 사실상 형법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 북한의 후계자로 공식 등장한 김정은의 지시도 초법적 기능을 하고 있다. 이는 그의 지시로 탈북행위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데서 잘 나타나고 있다.

북한의 정규재판제도는 재판에 대한 당적 통제와 영도, 인민참심원 제도 채택, 편의적 관할제도 도입, 검사의 재판감시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 지금까지 남한에 유입한 북한이탈주민들의 경우 검사, 판사, 인민참심원, 변호사 출신이 없는 상황이어서 정확한 재판절차의 실태를 파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북한이탈주민 증언 가운데는 북한의 형사재판절차가 형법, 형사소송법, 재판소구성법 등 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도 있다. 서류상으로만 재판을 실시한다는 증언들도 있다. 유나 리 재판에서는 북한 형사소송법 규정들이 대체로 준수되었다. 북한에서는 상소제도의 목적이 원판결의 잘못을 시정하여 불이익을 받는 재판관계자를 구제하고 법령해석의 통일을 기하는 데 중점이 있는 것이라 아니라 김일성 교시와 김정일 말씀, 노동당 정책을 얼마나 충실히 반영하였는가를 감독하는 데 있다. 이에 따라 더러 상소가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있으나 북한주민들은 상소나 신소를 하는 경우 추가형량이 더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현지공개재판은 일반주민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므로 학교운동장, 장마당, 마을회관 근처, 역전 광장, 강변, 영화관, 공설운동장, 농민시장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장소에서 개최되는데, 공개재판 이전에 재판소에서 형이 결정되고 공개재판에서는 단지 판결문을 낭독한 후 형을 집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개재판을 통해 형이 확정되는 것인지의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 현지공개재판 판결은 상소가 불가능하다는 증언도 있다.

북한에서 변호인은 피소자의 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기도 하지만 변호인 활동의 본질은 재판기관과 형사재판사업에 협력하고 노동당의 사법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활동이라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공개처형을 하는 경우에도 북한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를 대상으로 사형 판결을 하고 사형이 확정되면 일정한 절차에 따라 사형이 집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문건들이 공개되었다. 그러나 모든 공개처형이 이 문건들에 나타나 있는 절차대로 집행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노동단련대에 수감되는 수감자들은 2가지 종류로 구분된다. 하나는 재판을 받지 않고 비사회주의적 행위를 하여 들어온 일반 수감자가 있고, 다른 하나는 재판에서 노동단련형을 받고 들어오는 수감자들이 있다. 노동단련형을 언도받고 수감된 수감자의 경우 일반 수감자와는 일도 따로 시킴으로써 재판을 받지 않고 수감된 자들과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 재판을 받지 않고 노동단련대에서 강제노동에 처해지는 경우 검찰감시법과 판결판정집행법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북한사회 전반에 걸쳐 뇌물수수 등 부패가 만연되어 있는데 형사재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정규재판조직에 의하지 않고 유사재판제도에 의해 재판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북한 사법제도의 커다란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 유사재판제도에는 국가안전보위부의 정치범 판결과 동지심판제도(군중심판) 및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가 있다. 정치범의 경우 정식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가안전보위부 검찰국이 재판소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증언되고 있다. 그러나 국가안전보위부의 정치범 판결에 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는 아직 발견되지 않는다. 동지심판제도의 법적 근거는 검찰감시법 제40조에서 찾을 수 있다. 동지심판 대상은 ① 당의 유일 사상체계가 똑바로 서지 못하고 계급적 각성이 부족하며 혁명적 기풍이 없는 자, ② 김일성·김정일 교시와 당 정책 학습을 태만히 한 자,

③ 무의식적으로 당 정책 또는 교시를 비방하는 행위, ④ 교시 및 당 정책의 내용을 왜곡 전달하는 행위, ⑤ 각종 부당이득·공유물의 사유화·관리감독 소홀 및 과오로 인한 손해발생 등 소액의 경제사범, ⑥ 풍기문란 등 비도덕적인 기타 사범으로 '유일사상에 저해되는 경미한 사건이나 경미범죄 내지 도덕적 비리' 등과 관련된 사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동지심판회는 이와 같은 행위를 한 대상자에 대하여 책벌, 엄중경고, 경고 등의 처분을 한다. 책벌에는 정식재판 회부, 출당, 6개월 이하의 무보수노동 처분, 경제적 탐오를 저지른 경우에는 그 액수의 10배 내지 20배 정도 되는 벌금을 월급에서 공제하는 행정 벌금 처분, 행정적 권리행사 중지 처분 등을 하며, 군대에서는 정치지도원이 제기하고 대상자가 자아비판을 하면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어 처벌을 결정하는데 화장실 청소 등의 사역을 한다고 한다. 일반 형사 재판과의 관계에 있어 동지심판은 이미 형이 확정된 사람들에게 단지 경각심을 주기 위한 차원에서 실시된다는 증언과 반대로 동지심판 이후에 재판을 받고 형이 확정되었다는 상반된 증언들이 있다. 1992년 북한헌법은 “국가는 사회주의 법률제도를 완비하고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한다.”는 규정을 추가 신설하여 사회주의법무생활에 관한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북한에는 사회주의법무생활을 조직·지도하는 기관으로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법무생활지도위원회는 행정처벌과 신소를 담당하는 등 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하는 것은 선군시대를 건설하는 데 있어 중요한 과제임이 강조되고 있다. 그 이유로는 사회주의법무생활 강화가 첫째, 인민대중 중심의 북한식 사회주의제도를 철저히 옹호·고수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며 둘째, 국가사회생활 모든 분야에 혁명적인 제도와 질서를 세울 수 있게 하기 때문이고 셋째, 경제강국 건설 투쟁의 당면한 과업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북한에는 특별형사제도로 인민보안단속제도와 행정처벌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인민보안단속제도는 인민보안단속법에 의해, 행정처벌제도는 행정처벌법에 의해 각각 규율되고 있다. 인민보안단속법은 제2장에서 단속대상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구 사회안전단속법과 비교해보면 사회안전단속법이 제8조부터 제28조까지 21개 조문에서 단속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데 비해 인민보안단속법은 제8조부터 제40조까지 33개 조문에 달하고 있다. 행정처벌은 형벌을 적용할 정도에 이르지 못한 위법행위를 한 기관·기업소·단체와 공민에게 적용된다. 북한 행정처벌법은 ① 경고, 엄중경고, ② 무보수노동, 노동교양, ③ 강직, 해임, 철직, ④ 벌금, ⑤ 중지, ⑥ 변상, ⑦ 몰수, ⑧ 자격정지, 강급, 자격박탈을 행정처벌 종류로 규정하고 있다. 행정처벌은 법무생활지도위원회와 내각·검찰·재판·중재·인민보안기관과 검열감독기관이 준다. 해당 기관·기업소·단체도 행정처벌을 줄 수 있는데 심의대상 행위와 부과할 수 있는 행정처벌은 각 기관마다 차이가 있다. 형사재판제도와 행정처벌제도의 관계와 관련하여 행위의 경중, 다시 말해 행정처벌과 형사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각 도·시·군에 있는 인민위원회에서 결정하며, 행정처벌을 줄 수 있는 기관은 자기들만의 고유한 업무에 따른 권한이 있어 중복 처벌을 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I. 서론



북한형사제판제도 연구: 특징과 실태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인권은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제1세대 인권과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제2세대 인권을 거쳐 연대의 권리를 특징으로 하는 제3세대 인권, 그리고 최근에는 인간 뿐만 아니라 ‘모든 존재’도 인권을 갖는다고 보는 제4세대 인권까지 그 개념이 확장·발전되고 있다.¹ 이 가운데 북한 형사법제는 북한주민의 제1세대 인권, 즉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있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

북한은 1950년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제정한 이래 지금까지 여러 차례 동 법령들을 개정해 오면서 이 법령들을 근거로 형사재판제도를 운용하여 오고 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국내 유입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으로 북한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문제가 드러나면서 북한의 형사재판제도는 대표적인 인권침해 사례로 국내외에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형사재판제도를 포함한 북한의 사법제도에 대한 관심이 제기된 것도 이 즈음이다. 법원행정처는 1996년 『북한사법제도개관』을 발간하였는데 북한사법제도의 형성과 발전, 북한의 재판소제도, 검찰소제도, 민·형사재판절차, 국가중재제도, 변호사제도, 북한의 법학교육 및 법조인력 양성제도 등을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또한 법원행정처는 2006년에는 『북한의 형사법』을 발간하였는데 이 책자는 북한 형사법의 개념 및 발전과 북한 형법 및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상세히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이 책자는 북한이탈주민들을 상대로 한 북한사법제도 면접조사 결과를 일부 반영하고는 있으나 조문 해석에 치우쳐 있어 북한에서의 형사재판 운용 실태에 대한 분석이 부족한 면이 없지 않다. 또한 『북한

¹ 채형복, 『국제인권법』 (서울: 높이깊이, 2009), pp. 18~20.

사법제도개관』은 발간된 지 15년이 지나 그 동안의 북한 형사법의 발전과 실태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아울러 그 동안 북한형사법제의 실태와 문제점들이 많이 드러나기는 하였지만 구체적으로 북한형사재판제도가 어떻게 운용되는지, 예를 들어 북한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는 현지공개재판은 어떤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지, 또한 국내외의 집중적인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공개처형은 어떤 절차에 따라 집행되는지, 재판소에서 재판하는 경우 형사법규정이 준수되는지의 여부 등에 대해서는 아직도 분명하지 않은 요소들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북한형사재판제도의 특징과 실태를 분석함으로써 기존 북한형사재판제도와 관련된 연구를 보완·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구범위

본 연구의 연구범위 내지 연구 대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이 2004년에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전면 개정한 바 있는데 그 이후 북한형사재판제도와 관련이 있는 북한 형사법 규정의 적용실태를 분석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둘째, 형사재판은 광의의 형사재판과 협의의 형사재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수사, 기소 단계를 포함하여 공판절차와 판결의 집행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에 반해 후자, 즉 협의의 형사재판은 재판정에서의 재판만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광의의 재판과 관련하여 북한사법제도의 한 가지 특징은 수사와 기소 사이에 예심이라는 별도의 절차를 두고 있다는 점이다.² 본 연구는 협의

² 관련 선행 연구로 김수암, 『북한의 형사법제상 형사처리절차와 적용 실태』 (서울:

의 형사재판을 중심으로 하였다. 판결의 집행과 관련하여서는 최근 입수된 자료를 토대로 공개처형의 절차에 대한 실태를 분석하였다.

셋째, 북한은 최고재판소(구 중앙재판소), 도(직할시)재판소, 인민재판소 외에 특별재판소로 군사재판소와 철도재판소를 두고 있다. 본 연구는 일반형사재판만을 연구범위로 삼았고 특별재판인 군사재판과 철도재판은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군사재판의 경우 일부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이 있기는 하지만³ 실태 파악이 용이하지 않고 재판소구성법과 형사소송법에 몇 가지 관련 조항을 제외하면 재판조직이나 운영과 관련된 구체적인 조문도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⁴ 철도재판과 관련하여 북한은 2010년 12월 2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306호로 철도차량법을 제정하였다. 철도차량법은 기존 북한 철도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철도차량의 생산과 등록,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들을 두고 있다. 특히 철도차량법 제42조는 제41조에 열거되어 있는 행정처벌 사유들이 범죄에 이를 경우 형사책임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학자는 철도운수부문에 대한 감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⁵ 이러한 점들을 보건대 행정처벌법에 따른 행정처벌 또는 철도재판소에서의 철도재판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⁶ 철도재판

통일연구원, 2005), pp. 79~85 참조.

³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 2011』 (서울: 통일연구원, 2011), pp. 152~153.

⁴ 특별재판과 관련하여 북한은 2011년 1월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356호로 해사소송관계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령은 특별재판소로 기존의 군사재판소와 철도재판소 외에 해사재판소를 규정하고 있어 의미있는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군사재판과 철도재판이 형사특별재판인 반면에 해사재판은 민사특별재판이다. 해사재판은 “해사분야에서 계약위반 또는 기타 원인으로 발생한 분쟁사건을 해결하는 민사재판의 한 부분”으로 정의되고 있다(해사소송관계법 제2조제1호). 북한의 해사소송관계법 제정의 의미와 평가에 대해서는 이훈재, “북한의 ‘해사소송관계법’ 제정의 의미와 평가,” (북한법연구회 제169회 월례발표회, 2011.9.29), pp. 1~24 참조.

⁵ 안광혁, “철도운수부문에 대한 행정경제감시의 중요성,” 『정치법률연구』, 2010년 제4호 (2010), pp. 39~40.

소는 철도운수부문의 종업원이 저지른 범죄사건과 철도운수사업을 침해한 범죄사건을 재판한다(형사소송법 제128조).

넷째, 우리의 사법제도와 비교할 때 북한은 유사재판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북한의 형사사법제도 내지 형사재판제도에 있어 정규재판제도와 함께 유사재판제도도 논해야 북한 형사법제를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정규재판제도와 더불어 유사재판제도도 연구의 범위에 포함시켰다. 아울러 북한에서 시행되고 있는 특별형사제도로 인민보안단속제도와 행정처벌제도에 대해서도 함께 다루었다.

3. 연구방법

연구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적으로 북한법을 분석할 때 방법론은 북한법 규정에 대한 분석과 실태 파악, 남북한 관련 법제도의 비교, 나아가 통일 이후 통합 등 3가지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 가운데 첫 번째 방법론을 택하였다. 다시 말해 북한 형사재판 관련 법제도와 남한 형사재판 관련 법제도를 비교하고 통일 이후 남북한 형사법제의 통합방향을 모색하는 것은 본 연구의 범위에서 벗어난다. 하나하나의 주제가 광범위하고 별도의 연구를 필요로 하는 주제들이다.⁷

둘째, 북한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는 형사재판절차 관련 규정들을 하나하나 분석하기보다는 북한형사재판제도의 특징과 실태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그 이유는 재판절차 관련 규정은 이미 선행연구에서

⁶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규창, “철도자량법 제정과 북한주민의 인권,”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Co 11-29, 2011) 참조.

⁷ 이 주제와 관련된 최근의 선행 연구로는 도중진·박광섭·조훈, 『통일대비 북한 형사법령 통합방안 예비연구』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8) 참조.

자세히 분석되었기 때문이다.⁸

셋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문헌연구와 함께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통일연구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면접조사 결과도 상당히 반영하였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들을 상대로 북한형사재판제도의 구체적인 운용실태에 대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는 데 일정한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북한형사재판제도의 구체적인 운용실태는 재판소 또는 검찰소 출신의 북한이탈주민이 가장 잘 알 수 있는데 아직까지 북한의 판사 또는 검사 출신의 북한이탈주민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이다.

넷째,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선행 설문조사 결과들도 반영하였다. 윤대규가 2005년 조사한 『북한주민의 법의식 연구』, 이금순과 전현준이 2010년 조사한 『북한주민 인권의식 실태연구』, 최봉대가 2011년 실시한 『북한이탈주민 법의식 사례연구』 가운데 형사재판제도와 관련된 내용들을 본 보고서에 반영하였다.

서술 순서는 먼저 제2장에서 북한형사재판제도의 연원을 살펴보고, 제3장에서는 정규재판제도의 특징과 실태를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유사재판제도를, 제5장에서는 특별형사제도를 살펴보았다.

⁸ 법원행정처, 『북한의 형사법』 (서울: 법원행정처, 2006), p. 474 이하 참조.

II. 북한형사재판 제도의 연원



북한형사재판제도 연구: 특징과 실태

본 장에서는 크게 국내법과 국제법으로 구분하여 북한의 형사재판제도 연원(淵源)에 대하여 살펴본다. 아울러 북한 체제의 특성상 북한에서 실질적으로 법의 기능을 하고 있는, 정확히 표현하자면 초법적 기능을 하고 있는 김일성 교시와 김정일 말씀 및 김정일의 후계자로 공식 등장한 김정은의 지시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본다.

1. 국내법

형사재판은 형사처벌, 형사소송절차, 재판소 조직, 검찰소 조직, 변호사 제도 등과 관련되어 있다. 이에 관한 북한 법령들에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재판소구성법, 검찰감시법, 변호사법, 판결판정집행법 등이 있다. 2010년 12월 22일 제정된 『아동권리보장법』에도 변호인의 방조를 받을 권리를 비롯하여 형사재판과 관련된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다.⁹ 본 절에서는 이 가운데 헌법과 형사재판제도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형법, 형사소송법 및 노동당규약에 대해 살펴보고 나머지 법령들은 각각 해당되는 곳에서 필요한 범위에 한해서 살펴본다.

헌법과 형법, 노동당규약은 각각 2009년과 2010년에 개정된 바 있는데 이는 북한 후계구도와 맞물려 있다. 자세히 분석하겠지만 북한은 헌법과 노동당규약에 선군사상을 명시함으로써 선군정치를 제도화하였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내부 통제 및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형법을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북한주민들이 형사재판에 회부되는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¹⁰

⁹ 사법분야에서의 아동권리보장의 기본요구(제47조), 사회적 교양처분의 적용(제49조), 변호인의 방조를 받을 권리(제50조), 사건취급처리에서 아동의 인격존중(제51조), 증인 심문에서 아동의 보호자입회(제52조), 체포·구속의 통지(제53조) 등이 형사재판과 관련이 있는 조문들이다.

I
II
III
IV
V
VI

가. 헌법

북한은 2009년 4월 9일 헌법을 개정한 데 이어 2010년 4월 9일 다시 헌법을 부분 개정하였다. 2010년 4월 9일 최종 개정된 현행 북한 헌법은 “공민은 국가의 법과 사회주의적 생활규범을 지키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공민된 영예와 존엄을 고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형사처벌의 헌법적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제82조). 한편, 북한의 2009년 헌법 개정은 북한 인권과 관련하여 국내외의 상당한 주목을 받았다. 그 이유는 “...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고 함으로써 헌법적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인권 존중 및 보호’를 명시하였기 때문이다(제8조제2항). 이전까지 북한은 변호사법,¹¹ 형사소송법,¹² 인민보안단속법¹³(구 사회안전단속법)¹⁴ 등 하위의 개별 법령에서 ‘인권’을 규정하고 있었을 뿐이다.

10. 이하 북한 헌법, 형법, 노동당규약 내용은 이규창, “김정은 후계구도하의 북한인권법제 분석과 평가,” 법제처, 『2011 남북법제연구보고서』(서울: 법제처, 2011), pp. 243~256을 이 보고서의 체제에 맞추어 구성을 일부 조정하고 내용 일부를 보완한 것이다.

11. 변호사법 제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변호사는 변호활동과 법률상 방조를 통하여 **인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법률제도를 옹호한다.

12. 형사소송법 제5조: 국가는 형사사건의 취급처리에서 **인권**을 철저히 보장하도록 한다.

13. 인민보안단속법 제6조: 국가는 인민보안 단속에서 **인권**을 유린하거나 직권을 람용하지 않도록 한다.

14. 구 사회안전단속법이 인민보안단속법으로 법령 명칭이 바뀐 이유는 종전의 사회안전부(사회안전성)가 인민보안성(현 인민보안부)으로 개칭된 것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사회안전단속법은 1992. 12. 28 제정되어 1999. 3. 24 개정되었다. 이 때도 사회안전단속법이란 명칭을 유지하였다. 이후 2001. 9. 13, 2002. 5. 22, 2005. 7. 26 각각 개정되었는데 정확히 어느 시점에 인민보안단속법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사회안전성이 2000년에 인민보안성으로 명칭이 변경된 것을 볼 때 2001. 9. 13 개정시에 법령 명칭이 변경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인민보안부는 치안유지를 주임무로 하는 내각 산하 기관으로 우리의 경찰기구에 해당된다. 사회안전부로 불리다가 1998년 9월 사회안전성으로 개칭되었고, 2000년에 인민보안성으로 다시 개칭되었다. 조순래 외, 『북한용어소사전』(서울: 연합뉴스, 2003), p. 179. 인민보안성은 2010년 4월 국방위원장 산하의 인민보안부로 격상되었다.

이후 북한은 2010년 7월 8일 「노동보호법」, 같은 해 12월 22일 「여성 권리보장법」과 「아동권리보장법」 등 인권 관련 법령을 제정하였으나¹⁵ 재판제도와 관련하여 북한은 2010년 4월 9일 헌법을 부분 개정하면서 종전의 중앙재판소와 중앙검찰소를 최고재판소와 최고검찰소로 명칭을 변경한 것 외에는 별다른 내용상의 변경은 없다(제159조~제168조). 이와 관련하여 북한은 1948년 헌법을 제정하면서 최고재판소, 최고검찰소로 부르다가(제6장) 1972년 사회주의헌법을 채택하면서 명칭을 중앙재판소, 중앙검찰소로 변경한 바 있다(제10장).¹⁶ 한편, 북한 형사소송법, 재판소구성법 등은 아직까지 중앙재판소, 중앙검찰소로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 헌법 규정에 맞게 곧 개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하 북한 형사소송법과 재판소구성법에 규정되어 있는 중앙재판소와 중앙검찰소는 헌법 규정에 따라 최고재판소와 최고검찰소로 부른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북한은 선군정치를 표방하고 있다. 북한은 2009년 헌법을 개정하면서 세 가지 방향에서 선군정치를 제도적으로 공고화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첫째, 2009년 개정 헌법 제3조는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고 하여 기존의 주체사상과 함께 선군사상을 지도적 지침으로 천명하였다(제3조).¹⁷ 선군사상은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역사상 처음으로 혁명군대를 주력군으로

15. 자세한 분석 및 평가는 다음 문헌들을 참조. 이규창, 『2009년 헌법 개정 이후 북한 노동법제 동향: 제정 노동보호법 및 노동정량법의 분석과 평가』, 통일정세분석 2011-04 (서울: 통일연구원, 2011); 임순희·김수암·이규창, 『북한의 여성권·아동권 관련 법 제정 동향』, 통일정세분석 2011-08 (서울: 통일연구원, 2011).

16. 최은석 박사는 북한이 중앙재판소, 중앙검찰소를 종래의 명칭인 최고재판소, 최고검찰소로 바꾼 데에는 사법기관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최은석 박사의 자문결과 (자문일자: 2011.10.28).

17. 북한 헌법 제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

I
II
III
IV
V
VI

하여 강력한 혁명역량을 꾸리는 길을 새롭게 밝힌 위대한 혁명사상이 라고 한다.¹⁸ 선군사상은 2009년 개정 헌법에 명시되기 이전부터 ‘자주 시대 혁명적당건설의 가장 올바른 지도적 지침’이라고 주장되어졌다.¹⁹

둘째, 국방위원회 위원장에 관한 절을 신설하였다(제6장제2절). 특히 국방위원회 위원장의 임무와 권한으로 ① 국가의 전반사업 지도, ② 국방위원회사업의 직접 지도, ③ 국방부문 중요간부의 임명 또는 해임, ④ 다른 나라와 맺은 중요조약의 비준 또는 폐기, ⑤ 특사권의 행사, ⑥ 국가 비상상태와 전시상태, 동원령 선포를 명시하고 있다. 2009년 개정 헌법은 이와 함께 국방위원회의 권한도 강화하였다. 기존의 1998년 헌법은 ① 국가의 전반적 무력과 국방건설 사업 지도, ② 국방부문의 중앙기관 신설 또는 폐지, ③ 군사칭호 제정 및 장령 이상의 군사칭호 수여를 국방위원회의 임무와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었다(제103조).²⁰ 2009년 개정 헌법은 이에 더하여 ① 선군혁명노선을 관철하기 위한 국가의 중요정책 수립, ② 국방위원회 위원장 명령, 국방위원회 결정·지시집행정형의 감독 및 대책 수립, ③ 국방위원회 위원장 명령, 국방위원회 결정·지시에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지시 폐지를 국방위원회의 권한과 임무에 추가하고 있다(제109조).

북한은 1998년 헌법을 개정하면서 국방위원회 지위와 권능을 새롭게 규정함으로써 선군정치의 헌법적 담보를 마련한 바 있다. 북한이 2009년에 헌법을 개정하면서 국방위원회 위원회에 관한 장을 신설하고 국방

18. 안광수, “선군사상은 혁명군대를 주력군으로 하여 강력한 혁명역량을 꾸리는 길을 밝혀준 혁명사상,” 『정치법률연구』, 2006년 제2호 (2006), p. 17.

19. 박철, “자주시대 혁명적당건설의 가장 올바른 지도적 지침,” 『김일성종합대학학보: 력사·법학』, 제53권 제1호 (2007), pp. 57~62.

20. 이외에 중요군사간부의 임명 또는 해임과 국가 전시상태와 동원령 선포도 국방위원회 권한과 임무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들은 2009년 헌법 개정시 국방위원회 위원장의 권한에 속하게 되었다.

위원회 권한을 강화한 것은 선군정치체제를 더욱 공고화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할 수 있다.²¹ 이 같은 점은 북한학자의 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 북한학자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²²

“주제98(2009)년 4월 9일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1차회의에서는 우리 당과 인민의 절대적인 념원을 반영하여 대의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우리 당과 국가, 혁명무력의 탁월한 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변함없이 높이 모시고 사회주의헌법을 수정보충하여 선군정치를 법적으로 확고히 담보하는 중대조치를 취하였다.

… (중략) …

새로 수정보충된 사회주의헌법은 혁명적무장력의 사명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방위원회 위원장, 국방위원회의 법적 지위와 임무, 권한을 새롭게 규정함으로써 우리 당의 선군정치 실현을 법적으로 더욱 확고히 담보한다.”

셋째, 2009년 개정 헌법 제59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장력의 사명은 선군혁명노선을 관철하여 혁명의 수뇌부를 보위하고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외래침략으로부터 사회주의제도와 혁명의 전취물, 조국의 자유와 독립, 평화를 지키는데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선군혁명노선을 관철하여 혁명의 수뇌부를 보위’한다는 조항은 1998년 헌법에는 없던 것으로 2009년 헌법 개정 시 추가 신설된 것이다. 김정일은 2003년 1월 29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의 담화에서 선군혁명노선을 “우리 시대의 위대한 혁명노선이며 우리 혁명의 백전백승의 기치”라고 하면서 선군혁명의 길에 강성대국건설도

21. 장명봉, “북한의 2009 헌법개정과 선군정치의 제도적 공고화,” 『헌법학연구』, 제16권 제1호 (2010.3), pp. 363~364.

22. 리명일, “새롭게 수정보충된 사회주의헌법은 선군정치실현을 확고히 담보하는 위력한 법적무기,” 『김일성종합대학학보: 력사·법학』, 제56권 제2호 (2010), p. 113.



조국통일도 있고 주체혁명위업의 승리가 있다며 북한주민들에게 선군 혁명노선에 나설 것을 독려하고 있다.²³ 2009년 개정 북한 헌법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선군혁명노선을 관철하기 위한 국가의 중요정책 수립을 국방위원회의 권한 가운데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제109조제1호).

2009년 4월의 북한 헌법 개정이 김정은이 후계자로 내정된 시점과 맞물려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김정일은 2009년 1월 8일 김정은의 생일날에 맞춰 김정은을 후계자로 결정했다는 교시를 이제강 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에게 하달했고, 동시에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을 통해 북한군 대좌(우리의 대령급) 수준까지도 전달되었다고 한다.²⁴ 이후 북한은 같은 해 4월 헌법을 개정하면서 선군정치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한 것이다. 김정은은 2009년 1월 후계자로 내정된 이후 21개월간 대외적으로 비공개 활동을 하다가 2010년 9월 말에는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및 당 중앙위원, 그리고 인민군 대장에 선임됨으로써 3대 권력세습이 공식화되었다. 김정일이 김정은에게 가장 먼저 군 관련 직책 부여를 공식화한 것은 선군정치를 지속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고, 또한 이는 ‘선군혁명영도’의 역사적 일관성을 후계자에게도 적용하려는 치밀한 기획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²⁵

나. 형법

현행 북한 형법은 2004년 4월 29일 전면 개정되고 2005년 4월 19일

23. 김정일, “선군혁명노선은 우리 시대의 위대한 혁명노선이며 우리 혁명의 백전백승의 기치이다,” 『김정일 선집 15』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5), p. 368.

24. 김갑식, “북한 당대표자회와 김정은 후계체제 전망,” 제주평화연구원, 『정책포럼』, No. 2010-34 (2010), p. 4.

25. 위의 글, pp. 4~6.

과 7월 26일, 2006년 4월 4일과 10월 18일, 2007년 6월 26일과 10월 16일 각각 부분 개정되었다.

(1) 2004년 형법 전면 개정

2004년 전면 개정 이전 북한 형법은 내용에 있어 형사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를 채택하지 않았고, 심지어 유추해석까지 허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북한 형법은 2004년 전면 개정되면서 조문의 체계화, 죄형법정주의 채택과 유추해석 허용 조문 삭제, 형벌 종류의 재정비 및 법정형의 완화, 구성요건의 구체화, 경제범죄 등 사회변화의 적극적 반영 등 긍정적으로 평가될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²⁶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형법은 형사재판과 관련하여 여러 문제점들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북한 형법은 2004년의 전면 개정에도 불구하고 내용상 아직도 인권보장 측면에서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북한 형법 제2조는 “국가는 범죄자의 처리에서 로동계급적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고 사회적 교양을 위주로 하면서 이에 법적 제재를 배합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형법의 해석 및 적용도 정치와 분리될 수 없는 것으로서 높은 정치사상성이 요구되므로 형법을 올바르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계급적 입장이 철저히 지켜져야 하며 당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여 강한 정치적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²⁷

둘째, 북한 형법 제57조는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와 고의적 중살인범죄²⁸에 대해 형사소추 시효기간에 관계없이 형사책임을 지운다고 규정

26. 한명섭, 『남북교류와 형사법상의 제문제』 (파주: 한울아카데미, 2008), pp. 17~21.

27. 위의 책, p. 27.

28. 이 보고서를 집필함에 있어 북한 원전이나 북한 법령을 직접 인용하는 경우 우리 맞춤법이나 띄어쓰기와 맞지 않아도 북한식 표현을 최대한 존중하여 원문 그대로

하여 공소시효제도(제56조)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셋째, 북한 형법이 2004년 전면 개정되면서 이전에 비해 구성요건이 명확해졌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기는 하지만²⁹ 여전히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북한 측에 의한 일방적·자의적 해석의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2009년 3월 미국 여기자 유나 리(Euna Lee)와 로라 링(Laura Ling)이 북한에 억류되었다가 재판을 받고 풀려난 적이 있는데 미국 여기자들에 대한 재판에서 북한 중앙재판소(현 최고재판소)는 북한 형법 제69조(조선민족적대죄)와 제233조(비법국경출입죄)에 따라 노동교화형 12년형을 선고한 바 있다. 조선민족적대죄에 대해 북한 형법은 “다른 나라 사람이 조선민족을 적대시할 목적으로 해외에 상주하거나 체류하는 조선사람의 인신, 재산을 침해하였거나 민족적 불화를 일으킨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09년 6월 16일자 조선중앙통신에 의하면 미국 여기자들은 “○○○이 소개한 안내자를 따라 불법월경자들을 찾아다니며 범죄자들이 주는 갖가지 악담들을 수집”하였는데 이것이 “공화국을 비방 중상하기 위한 극히 불순한 정치적 동기에서 출발한 적대행위”라는 점에서 조선민족적대죄에 해당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북한 형법 규정에 의하면 조선민족적대죄는 외국인이 해외에 상주하거나 체류하는 북한 국민의 인신이나 재산을 침해한 경우에 성립되므로 북한의 주장은 타당하지 못하다. 또한 북한 형법 제69조는 외국인이 민족적 불화를 일으킨 경우 조선민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다만, 독자의 편의를 위해 일부 수정을 가하였다. 예를 들어 ‘고의적중살인범죄’를 ‘고의적 중살인범죄’로, ‘고의적중살인죄’는 ‘고의적 중살인죄’로, ‘프로레타리아’를 ‘프롤레타리아’로, ‘화폐’를 ‘화폐’로 표현하였다.

²⁹ 한인섭, “북한의 개정 형법의 동향과 평가,” 『북한법연구』, 제8호 (2005), pp. 118~120.

족적대죄가 성립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민족적 불화’라는 개념이 매우 추상적이어서 악용될 소지가 매우 높다.

넷째,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에 대한 은닉죄(제70조),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에 대한 불신고죄(제71조) 및 반국가범죄에 대한 방임죄(제72조)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어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에 대하여 일종의 연좌제를 제도화하고 있다.³⁰

(2) 2007년 형법부칙(일반범죄) 채택

북한은 2004년 형법을 전면 개정한 이후 2005년 두 차례(4월 19일과 7월 26일), 2006년 두 차례(4월 4일과 10월 19일), 2007년 두 차례(6월 26일과 10월 16일) 각각 부분 개정하였다. 이후 북한은 2007년 12월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483호로 형법부칙(일반범죄)이라는 특수한 형태의 법을 제정하였다. 형법부칙(일반범죄)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제정되었고 이것이 북한 형법의 규정을 보충·변경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비록 명칭을 ‘부칙’으로 하고는 있으나 북한법체계상 부문법 내지 주요 법령의 하나로서 위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 점에서 형법부칙(일반범죄)은 형법 본문과 동위의 효력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³¹

형법부칙(일반범죄)은 모두 23개 조문으로 되어 있는데 마약 밀수, 밀매 등 16개 조문에서 최고 사형을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북한은 2004년 형법을 전면 개정하면서 국가전복음모죄, 조국반역죄, 테러죄, 민족반역죄 및 고의적 중살인죄 등 제한적인 범죄에 대해

30.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 2009』 (서울: 통일연구원, 2009), p. 113.

31. 박정원, “북한의 체제수호를 위한 규범통제: 2007년 북한 형법 부칙을 중심으로,” 『통일문제연구』, 통권 제53호 (2010), p. 236.

서만 사형에 처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북한이 2007년 형법부칙(일반범죄)을 제정하면서 사형 해당 범죄를 확대한 것은 북한 주민을 통제하고 체제를 보위하려는 의도라는 점에서 인권의 측면에서 후퇴라고 평가된다. 또한 형법부칙(일반범죄)상의 사형을 규정하고 있는 16개 조문은 공통적으로 ‘특히 무거운 경우’ 또는 ‘극히 무거운 경우’라는 추상적인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북한 당국에 의한 자의적인 해석의 문제를 남겨두고 있다. 아울러 형법부칙(일반범죄)은 한 범죄자가 범한 여러 범죄행위의 정상이 특히 무겁거나 개준성이 전혀 없는 경우 사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형에 해당되지 않는 범죄라고 하더라도 북한 당국의 판단에 따라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제23조).³²

2004년 이전 북한 형법의 중심이 정치형법적인 기능을 강조하는 데 있었다면 북한은 2004년 형법 개정 시 많은 경제 관련 조항들을 신설함으로써 북한 형법의 중심이 경제형법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었다.³³ 그러나 2007년 형법부칙(일반범죄)의 제정으로 형법의 중심이 다시 정치형법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시 말해 북한은 형법부칙(일반범죄)에서 반국가범죄를 제외한 일반범죄에 대하여 무기노동교화형 내지 사형으로의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체제안보적 형법의 기능을 보다 강화하였다. 이는 사회질서의 안정을 통한 국가기강의 확립을 꾀함으로써 종국적으로는 체제이완을 방지하고 체제결속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³⁴

32.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 2011』, pp. 59~60.

33. 한인섭, “2004년 북한 형법 개정, 그 내용과 의미,” 『법학』 (서울대), 제46권 제1호 (2005), p. 193.

34. 박정원, “북한의 체제수호를 위한 규범통제: 2007년 북한 형법 부칙을 중심으로,” pp. 238~251.

(3) 2009년 4월 형법 개정

북한은 2009년 4월 이후 미상(未詳) 시기에 형법을 대폭 개정하면서 북한 헌법에서 천명하고 있는 선군사상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반국가범죄 가운데 하나인 파괴암해죄의 경우 사형까지 가능하도록 처벌을 강화하고 있고(제64조), 불신고죄의 처벌대상으로 반국가범죄 외에 반민족범죄도 추가하였다(제71조). 국방관리질서를 침해한 범죄의 조문들을 대폭 개정하면서 새로운 처벌유형을 많이 신설하고 처벌을 강화하였다. 명령·결정·지시집행 태만죄의 대상에 국방위원회 위원장 명령, 최고사령관 명령, 당 중앙군사위원회 명령·결정·지시를 추가하였고(제73조), 무기·탄약의 파손행위 및 약취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였다(제75조, 제76조, 제78조). 군수품생산 관련 처벌대상을 확대하고, 처벌도 강화하거나 세분화하였다(제80조, 제81조). 국방비밀누설죄에서 엄중한 결과가 초래되지 않더라도 가중 처벌하도록 처벌을 강화하였다(제88조). 이와 함께 북한은 자본주의 문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도 강화하였다. 퇴폐물의 반입 및 유포만을 처벌하던 데서 보관행위도 처벌대상에 포함시켰고(제193조), 마약사용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였다(제217조). 집단적 소동죄, 직무집행방해죄, 허위풍설 날조·유포죄에 관한 처벌도 강화하였다(제219조, 제220조, 제222조). 정상이 무거운 경우 3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하던 것을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탈북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였다(제233조). 이와 같이 2009년 개정 북한 형법은 체제유지와 관련 되는 규정들을 정비하고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³⁵

³⁵ 이백규, “북한의 2009년 개정형법 개관,” (북한법연구회 제157회 월례발표회, 2010.9.16), p. 5.

I
II
III
IV
V
VI

2009년 개정 형법은 인권측면에서 진일보하기보다는 오히려 북한 형법 제1조에서 천명하고 있는 국가주권 및 사회주의제도 보위 방향으로 개정됨으로써 후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³⁶ 2009년 형법 개정 이후 발표된 글에서 한 북한 형법학자는 형벌의 가장 큰 목적이 반국가범 죄자들이 더는 반항할 수 없도록 철저히 진압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³⁷ 이는 형법의 가장 큰 목적이 체제보위에 있음을 말해 준다. 북한이 2009년 4월 이후 미상 시기에 형법을 개정하여 체제유지와 관련된 규정들을 정비한 것은 김정은 후계구도를 염두에 두고 내부통제를 강화하려는 조치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³⁸

표 II-1 북한 형법 주요 조문 내용 대조표

2007년 10월 형법	2009년 4월 개정 형법	비 고
제73조 국방위원회 결정, 명령, 지시 위반 죄: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	제73조 국방위원회 위원장 명령, 최고사령관 명령, 국방위원회 결정·지시, 당중앙군사위원회 명령·결정·지시 위반죄: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	처벌 범위 확대

36. 북한 형법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은 범죄에 대한 형사책임 및 형벌제도를 바로 세워 국가주권과 사회주의제도를 보위하고 인민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

37. 조용춘, “주체의 형법리론이 새롭게 밝힌 공화국형벌의 적용목적,” 『정치법률연구』, 2009년 제4호 (2009), p. 33. 조용춘은 형벌 적용의 둘째 목적은 일반범죄자들을 제재과정을 통해 교양개조함으로써 그들을 범죄의 길에서 건져내어 사회주의근로자의 대열에 서게 하는 것이며, 셋째 목적은 범죄자들에게 형벌을 적용하는 과정을 통해 범죄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유사한 자들에게 강한 경고와 자극을 주어 범죄의 길에 나서지 않게 하며 균중을 계급적으로 각성시켜 반범죄투쟁에 나서게 함으로써 범죄예방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한다.

38.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 2011』, p. 66.

2007년 10월 형법	2009년 4월 개정 형법	비 고
제74조 전시생산준비를 하지 않은 죄: 정상이 무거운 경우 3년 이하의 노동교화형	제74조 전시생산준비를 하지 않은 죄: 정상이 무거운 경우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	처벌 강화
제76조 전투기술기재 파손죄: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	제76조 무기, 탄약, 전투기술기재 파손죄: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	처벌 대상 확대
제78조 무기·탄약 불법 휴대·양도죄: 3년 이하의 노동교화형	제78조 전투기술기재 약취, 무기·탄약 불법 휴대·양도죄: 3년 이하의 노동교화형 무기·탄약 약취, 대량의 전투기술기재 약취죄: 3년 이상 8년 이하의 노동교화형	처벌 대상 행위 확대 신설 (처벌 강화)
제80조 군수품생산에 필요한 설비·원료·자재를 제때에 생산보장하지 않은 죄: 정상이 무거운 경우 3년 이하의 노동교화형	제80조 군수품생산에 필요한 설비·원료· 연료·전력 ·자재를 제때에 생산보장하지 않은 죄: 정상이 무거운 경우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	처벌 대상 확대 및 처벌 강화
제86조 군인으로 가장한 죄: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	제86조 군인으로 가장한 죄: 정상이 무거운 경우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	처벌 강화
제193조 퇴폐적인 문화반입·유포죄: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	제193조 퇴폐적인 문화반입· 보관 ·유포죄: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 성 녹화물 반입·보관·유포죄: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	처벌 대상 행위 확대 신설
제217조 불법 마약 사용죄: 정상이 무거운 경우 2년 이하의 노동교화형	제217조 불법 마약 사용죄: 정상이 무거운 경우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	처벌 강화
제219조 집단소요행위로 살인, 파괴 등의 결과를 일으킨 죄: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	제219조 집단소요행위로 살인, 중상해 , 파괴 등의 결과를 일으킨 죄: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	처벌 대상 행위 확대

I
II
III
IV
V
VI

2007년 10월 형법	2009년 4월 개정 형법	비 고
제220조 폭행·협박·모욕의 방법으로 관리 일군의 직무집행 방해를 공모한 죄: 3년 이하의 노동교화형	제220조 폭행·협박·모욕의 방법으로 관리일 군의 직무집행 방해를 여러 번 또는 공모한 죄: 3년 이하의 노동교화형	처벌 대상 행위 확대
제222조 허위 날조·유포죄: 2년 이하의 노 동단련형	제222조 허위풍설 날조·유포죄: 정상이 무 거운 경우 3년 이하의 노동교화형	처벌 강화
제233조 불법국경출입죄: 정상이 무거운 경 우 3년 이하의 노동교화형	제233조 불법국경출입죄: 정상이 무거운 경 우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	처벌 강화

다. 노동당규약

북한은 2010년 9월 28일 노동당규약을 개정하였다. 1980년 10월 13일 이후 30년 만에 노동당규약을 개정한 것이다. 노동당규약이 개정된 2010년 9월 28일은 김정은이 후계자로 공식 등장한 시점과 일치한다. 이 점은 노동당규약 개정이 김정은 후계구도 하에서 이루어졌음을 말해주고 있다.

개정 당규약은 “조선로동당은 근로인민대중의 모든 정치조직들 가운데서 가장 높은 형태의 정치조직이며 정치, 군사경제, 문화를 비롯한 모든 분야를 통일적으로 이끌어나가는 사회의 령도적 정치조직이며 혁명의 참모부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북한 헌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조선인민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높이 모시며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여 나갈 것이다.”고 천명하고 있다(前文). 이와 같은 헌법상 독점적 당 지위 규정은 조선노동당이 북한권력의 산실임을 명백히 하고 있으며, 당이

여타 기관보다 우위에 있는 권력구조임을 말해준다.³⁹ 또한 북한 헌법은 당규약과 헌법의 관계와 관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1조). 이 규정들을 볼 때 노동당은 북한 사회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당규약은 실정법을 향도하는 일정한 원칙으로서의 의미와 기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⁴⁰ 이 점에서 당규약 개정이 가지는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개정 당규약에는 기존 당규약에는 없던 선군정치와 관련된 규정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첫째, 조선노동당은 선군정치를 사회주의 기본정치방식으로 확립하고 선군의 기치 밑에 혁명과 건설을 영도한다고 명시하고 있다(前文). 둘째, 선군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할 것을 당원의 임무로 규정하고 있다(제4조제1항). 셋째, 당 중앙위원회의 임무 가운데 하나로 선군사상 구현을 규정하고 있다(제23조). 넷째, 시(구역)·군 당 위원회의 사업 가운데 하나로 선군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제38조). 다섯째, 기층당조직의 임무로 선군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할 것과 당원 및 근로자들 속에서 선군사상원리교양을 비롯한 사상교양을 강화하여 부르조아사상문화의 침습을 막고 비사회주의적 현상을 비롯한 온갖 부정적인 현상들을 반대하여 견결히⁴¹ 투쟁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제45조제1항, 제4항). 여섯째, 조선인민군은 당의 선군혁명영도를 맨 앞장에서 받들어나가는 혁명의 핵심부대, 주력군이라고 규정하면서(제46조), 조선인민군 안의 각급 당조직들의 사업 가운데 하

39. 통일부 통일교육원, 『북한이해 2010』 (서울: 통일교육원, 2010), p. 40.

40. 법원행정처, 『북한의 형사법』, p. 16.

41. ‘견결하다’는 것은 의지나 태도가 깨끗하고 굳센 것을 말한다. 통일부 <www.unikorea.go.kr> → 북한소식 → 북한용어 → 북한용어사전: 견결하다(검색일: 2011.5.5).

나로 당원 및 근로자들을 선군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한 사상과 신념의 강자로 키울 것을 규정하고 있다(제48조). 일곱째, 당은 인민정권이 선군사상과 그 구현인 당의 노선과 정책을 철저히 관철하도록 정치적으로 지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53조). 여덟째,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에 대해 선군혁명의 대를 이어 나갈 당의 정치적 후비대⁴²라고 규정하고 있다(제56조).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북한은 2009년 4월 개정 헌법에서 주체사상과 함께 선군사상을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고 천명하였다(제3조). 그리고 2010년 개정 당규약에서는 선군정치를 사회주의 기본정치방식으로 확립하고 선군의 기치 밑에 혁명과 건설을 영도한다고 천명하였다(前文). 또한 개정 당규약은 곳곳에서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을 함께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주체사상, 선군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할 것을 당원과 기층당조직의 임무로 규정하고 있고(제4조제1항, 제45조제1항), 주체사상, 선군사상 구현을 당 중앙위원회 임무로 규정하고 있다(제23조). 이와 같이 선군사상이 개정 헌법과 개정 당규약에 주체사상과 함께 병기(併記)됨으로써 선군사상이 주체사상과 동일한 지위에 놓이게 되었는지 나아가 향후 주체사상을 대체하게 될지의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개정 당규약은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하는 주체형의 혁명적 당이다.”라고 함으로써 주체사상만을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규정하고 있다(前文). 여기에 대해서는 상반된 평가가 있다. 하나의 견해는 선군사상이 주체사상과 함께 헌법과 당규약에 병기됨으로써 선군사상이 주체사상과 동일시되거나 동급으로 상향 조정되었다고 보는 입장이

⁴² 후비대(後備隊)란 앞으로 일정한 대열을 보충하거나 사업을 계승하고 활동하게 될 대오 또는 그에 속한 사람을 의미한다.

다.⁴³ 이에 반해 선군정치를 이론적으로 체계화한 선군사상이 주체사상을 대체하여 김정일 시대, 나아가 향후 김정은 시대에 새로운 통치이념으로 부상할 것인가는 아직 미지수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 이 입장에 따르면 현재까지의 선군사상은 주체사상에 대응할 수 있는 이념체제라기보다는 김정일 정권의 통치방식을 정당화하는 정치 슬로건 역할에 치중하고 있다고 한다.⁴⁴ 선군사상의 주체사상 대체 여부는 북한의 통치이데올로기와 관련하여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의 관계는 본 연구의 주제에서 벗어나는 것이지만⁴⁵ 적어도 선군정치가 계속 강화될 것이며 선군사상이 개정 헌법과 개정 당규약에 명시됨으로써 이론적 체계화와 더불어 지도적 지침으로서의 심화·발전 단계에 접어들게 될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전망해 볼 수 있다.⁴⁶

라. 형사소송법

현행 북한 형사소송법은 2004년 5월 6일 전면 개정되고 2005년 7월 26일과 같은 해 10월 18일 각각 부분 개정된 것이다. 현행 북한 형사소송법은 “수사, 예심, 기소, 재판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형사사건을 정확히 취급처리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사명으로 천명하고 있다(제1조).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선군정치 실현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한 북한학자는 북한 형사소송법은 당의 선군정치 실현을 법적으로

43. 김갑식, “북한 당대표자회와 김정은 후계체제 전망,” p. 6.

44. 통일부 통일교육원, 『북한이해 2010』, p. 38.

45.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의 관계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문헌들을 참조. 양무진, “주체사상과 선군사상: 지배이데올로기의 변화 가능성,” 『한국과 국제정치』, 제24권 제3호 (2008), pp. 57~93, 특히 pp. 86~87; 진희관, “북한에서 ‘선군’의 등장과 선군사상이 갖는 함의에 관한 연구,” 『국제정치논총』, 제48집 1호 (2008), pp. 391~396.

46. 장명봉, “북한의 2009 헌법 개정과 선군정치의 제도적 공고화,” p. 352.

튼튼히 담보하는 위력한 법적무기라고 하면서 그 이유로 네 가지를 들고 있다. 북한 형사소송법은 첫째,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위하는 것을 기본사명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며 둘째, 당의 선군정치 실현을 저해하는 온갖 범죄자들에 대한 형사사건취급처리를 기본활동으로 하고 있으며 셋째, 국방관리질서를 철저히 세우기 위한 사업을 법적으로 담보하고 있으며 넷째, 온 사회에 군사중시기풍을 철저히 세우기 위한 사업을 법적으로 담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⁴⁷ 또한 그는 북한 형사소송법이 선군정치를 실현시키는 위력한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북한이 지속적으로 표방하고 있는 사회주의강성대국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담보해 주는 수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⁴⁸

현행 북한 형사소송법은 2004년 이전의 형사소송법에 비해 인권보장적 측면에서 진일보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피심자(피의자)·피소자(피고인)를 구금할 수 있는 기간을 단축하고, 기소 및 재판을 위한 구류기간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체포영장제도를 명확히 하였으며, 강압에 의한 진술뿐만 아니라 유도에 의한 진술도 증거로 쓸 수 없도록 하는 등 인권보장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수사기관이나 예심기관이 권한을 행사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방법을 규정함으로써 법에 의한 사법권 통제를 도모하고, 야간심문의 금지(제163조), 중복조사의 금지(제150조), 비밀누설의 금지(제15조), 피심자에 대한 권리통고(제169조), 증인 구인시간의 제한(제227조), 재판정에서의 구속금지(제283조), 제1심 및 제2심 재판기간의 단축(제287조) 등의 규정들도 모두 인권보장과

47. 리창세, “공화국형사소송법은 당의 선군정치실현을 법적으로 튼튼히 담보하는 위력한 무기,” 『정치법률연구』, 2006년 제4호 (2006), pp. 29~30.

48. 리명일, “공화국형사소송법은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의 위력한 법적무기,” 『김일성종합대학학보: 력사·법학』, 제52권 제2호 (2006), pp. 60~61.

관련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조항들이다.⁴⁹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사재판과 관련하여 현행 북한 형사소송법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지적할 수 있다.⁵⁰

첫째, 북한 형사소송법은 근본적으로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써 사회주의 체제를 보호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북한 형사소송법 제2조는 “국가는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와의 투쟁에서 적아를 엄격히 가려내어 극소수의 주동분자를 진압하고 다수의 피동분자를 포섭하며 일반범죄와의 투쟁에서 사회적 교양을 위주로 하면서 법적제재를 배합하도록 한다.”고 규정하여 계급노선 관철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제3조는 “국가는 형사사건의 취급처리에서 균중의 힘과 지혜에 의거하도록 한다.”고 규정하여 균중노선 관철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둘째, 수사와 예심절차에서는 여전히 수사기관 및 예심기관이 재판소의 사법적 심사를 받지 않고 체포·구속은 물론 압수·수색 등의 강제 처분을 검사의 지휘·감독만 받고 임의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재판소의 통제를 받지 않는 수사와 예심단계에서의 장기간 구금이 허용되고, 변호인의 실질적 조력을 받을 기회도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다.

셋째, 재판의 공정성을 위해 북한 형사소송법 제271조는 재판공개원칙을 천명하면서도 “국가 또는 개인의 비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거나 사회적으로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을 경우에는 재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여 폭 넓은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넷째, 구속적부심제도의 미채택, 무죄추정 원칙과 전문(傳聞)법칙 배제 등 적법절차 원칙이 미비되어 있다.

49. 한명섭, 『남북교류와 형사법상의 제문제』, p. 30.

50. 위의 책, pp. 30~32; 법원행정처, 『북한의 형사법』, pp. 25~26.

다섯째, 재판의 독립성이란 측면에서도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북한은 재판에 대한 당적 통제 내지는 당적 영도의 일환으로 재판의 독립을 부인하고 있다. 이 문제는 제3장 제1절에서 살펴본다.

마. 실태

지금까지 북한이 2009년 개정 헌법과 2010년 개정 당규약에 선군사상을 명시하고 형법 개정을 통해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조치를 취하였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2009년 4월 형법 개정 이후 북한주민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사건들이 줄을 이었다. 북한 내부적으로는 2009년 11월 말 전격적으로 단행한 화폐개혁이 실패로 드러나면서 북한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었다. 2010년 9월 말에는 김정 은 후계구도가 공식화되었다. 남북관계 차원에서는 2010년 3월 천안함 사건과 같은 해 11월 연평도 포격사건이 있었다. 북한 당국은 주민들의 불만을 차단하고 후계체제를 안정시키기 위해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0년대 중반 잠시 주춤하던 공개처형이 늘어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1990년대 중후반 고난의 행군 시기에 비해 2000년 이후 공개처형 빈도수는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다. 2006년에서 2008년 말에 이르기까지 2000년대 하반기에 탈북한 북한이탈주민들을 중심으로 실시한 인터뷰에서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들은 2000년대에 들어서는 1990년대 고난의 행군시대보다 공개처형의 빈도가 줄어들었다고 증언하였다. 그런데, 일부 북한이탈주민들은 2007년을 기점으로 해서 공개처형이 늘었거나 공개처형을 실시하라는 새로운 지시가 내려왔다고 증언하고 있다. 특히 2009년과 2010년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면접조사에 의하면 다시 공개처형이

늘어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08년 1월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2007년 이전에는 총살이 줄었는데, 2007년 11월 다시 처형이 이루어졌다고 증언하였다. 2007년 9월 말경 인민군대 쪽으로 특수 기밀에 속하는 김정일의 문건이 내려왔는데, 사회 무질서가 많이 조성되기 때문에 총소리를 울려야 한다는 내용이었다고 한다. 이에 따라 2007년 10월 초부터 함경북도에 대한 집중 지도검열이 있었고, 함흥에서 4명이 총살되었다고 한다. 또 다른 북한이탈주민은 공개총살 횟수가 줄어들었다가 2007년도부터 늘어났다고 증언하였다. 2007년을 기점으로 2009년과 2010년에 공개처형이 늘어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은 2007년 형법부칙(일반범죄) 제정과 2009년의 형법 개정 및 2010년 9월 김정운의 후계자 공식지명과 상당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⁵¹

2. 국제법

가. 세계인권선언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은 모든 사람이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누릴 권리가 있으며(제3조), 자의적인 체포·구금을 당하지 않는다고 선언하고 있다(제9조). 또한 모든 사람이 자신의 변호를 위해 필요한 모든 보장을 갖춘 공개된 재판에서 법률에 따라 유죄로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하고 있다(제11조제1항). 세계인권선언은 대부분의 규정이 국제관

⁵¹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 2011』, pp. 81~84. 북한이 2009년 형법 개정을 통해 내부 통제 및 처벌을 강화함에 따라 북한주민의 시민적·정치적 권리 침해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규창, “김정은 후계구도하의 북한인권법제 분석과 평가,” pp. 251~254 참조.

습법화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⁵² 다시 말해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는 것이다. 참고로 북한은 국제관습을 국제법의 연원(淵源)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태도를 바꿔 국제관습규범도 국제법의 연원⁵³에 속한다고 한다. 즉, 국제관습법도 국제법으로 인정한다는 것이다.⁵⁴

나.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⁵⁵(이하 ‘자유권규약’)은 모든 사람의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와 자의적인 체포 또는 억류 금지, 체포이유 통보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제9조제1항),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은 인도적으로 또한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을 존중하여 취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0조제1항). 또한 재판과 관련한 여러 가지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데 특히 변호의 준비를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편의를 가질 것, 본인이 선임한 변호인과 연락을 취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제14조제3항 b). 북한은 자유권규약의 당사국으로서 이 규정들을 준수할 법적 의무가 있다. 북한은 1981년 9월 14일 자유권규약에 가입하였는데, 가입 시 어떠한 유보(reservation)⁵⁶도 하지 않았다.

52. R. Jennings & A. Watts, *Oppenheim's International Law*, 9th ed., Vol. I (Essex: Longman, 1992), pp. 1003~1004.

53. 북한은 연원이라는 용어 대신 원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국제법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02), p. 65.

54. 자세한 내용은 김찬규·이규창, 『북한국제법연구』 (과주: 한국학술정보, 2009), pp. 80~83 참조.

55.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채택일: 1966. 12. 19, 발효일: 1976. 3. 23.

56. 북한에서는 이를 ‘보류’하고 한다. 보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김찬규·이규창, 『북한국제법연구』, pp. 131~133 참조.

또한 자유권규약 제14조제5항은 “유죄판결을 받은 모든 사람은 법률에 따라 그 판결 및 형벌에 대하여 상급 법원에서 재심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 상소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 점에서 북한 형사소송법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 북한 형사소송법은 상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나(제357조) 최고재판소의 제1심 재판으로 채택된 판결에 대해서는 상소가 불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제359조). 이는 재판을 받을 권리라는 측면에서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권규약에도 반한다. 북한 재판소에서의 상소 관련 규정 및 실태는 이 보고서 제3장 제2절에서 자세히 분석한다.

다.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1963년 채택되어 1976년 발효한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⁵⁷ (이하 ‘영사협약’)은 영사기능의 하나로 국민의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제5조). 동 협약 제36조는 파견국 국민과의 통신 및 접촉에 대하여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는 1980년 미국과 이란 간의 테헤란 인질 사건에서 영사협약이 영사관계에 관한 기존의 국제관습법규를 성문화한 조약이라고 하였다.⁵⁸ 특히 2001년 미국과 독일 간의 LaGrand 사건을 판결하면서는 영사협약 제36조제1항이 국가의 권리인 동시에 개인의 권리라고 판시한 바 있다.⁵⁹ 이 판결이 영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국가의 권리만이 아닌

⁵⁷. Vienna Convention on Consular Relations, 채택일: 1963. 4. 24, 발효일: 1967. 3. 19.

⁵⁸. Case Concerning United States Diplomatic and Consular Staff in Tehran(USA v. Iran), Judgment of 24 May 1980, I. C. J. Reports 1980, p. 24(para. 45).

⁵⁹. Grand Case, Judgment of 27 June 2001, ICJ at <<http://www.icj-cij.org>>, paras. 89, 128(3).

개인의 권리로 판시한 점은 인권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⁶⁰ 또한 ICJ는 Avena 사건⁶¹에서 영사협약 제36조제1항에 따라 미국이 체포된 51명의 멕시코인들에게 영사협약상의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할 의무와 그 중 49명에 대하여는 이들에 대한 체포를 멕시코의 영사관원에게 알려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ICJ는 나아가 미국이 멕시코의 영사관원이 자국민과 통신하고 접촉할 수 있는 권리와 영사관원이 체포된 자국민을 면담할 권리를 침해하였다고도 판단하였다. 이상과 같은 ICJ판결에서 분명한 것은 영사협약 제36조제1항에 규정된 권리가 체약당사국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개인의 권리이기도 하다는 점이다.⁶² 참고로 미주인권재판소(American Court of Human Rights)도 1999년 권고적 의견에서 영사협약 제36조는 구금되어 있는 개인에게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며 국제인권법의 일부라고 한 바 있다.⁶³

60. William J. Aceves, “LaGrand(Germany v. United States) Judgement,”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96 (2002), p. 216, p. 218; M. Mennecke & C. J. Tams, “LaGrand Case(Germany v U. S. A.),” *International Comparative Law and Quarterly*, Vol. 51 (2002), p. 454.

61. Avena and Other Mexican Nationals (Mexico v. United States of America), Judgment, I. C. J. Report 2004, p. 12. 이 사건은 멕시코가 미국 내에서 영사보호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51명의 자국민들을 위하여 미국을 상대로 ICJ에 제소한 사건이다.

62. 오승진, “영사보호에 관한 국내법적 실행,” 『국제법학회논총』, 제53권 제1호 (2008), p. 125.

63. IACHR, Advisory Opinion OC-16/99: The Right to Information on Consular Assistance in the Framework of the Guarantees of the Due Process of Law at <<http://www1.umn.edu/humanrts/iachr/A/OC-16ingles-sinfirmas.html>>, paras.141.1 & 141.2.

라. 실태

현재 우리나라와 북한 사이에는 영사관계가 설정되어 있지 않지만 제3국을 이용한 영사접근권을 주장할 수 있다.⁶⁴ 자국의 여기자를 위해 스웨덴을 활용한 미국의 사례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미국은 북한과 영사관계가 체결되어 있지 않지만 북한과 수교한 스웨덴 대사관을 통해 영사접근권을 추구한 바 있다. 북한은 2009년 3월 30일, 5월 15일, 6월 1일과 6월 23일 미국 여기자들에 대한 스웨덴 대사와의 면담을 허용하였다.⁶⁵ 한국계 여기자 유나 리는 그의 저서에서 3월 30일과 6월 1일 북한 주재 스웨덴 대사 Mats Foyer를 만나 면담한 사실을 서술하고 있다.⁶⁶ 특히 유나 리는 3월 30일 양각도 호텔에서 스웨덴 대사를 면담한 이후 자신에 대한 북한 관리의 대우가 좋아졌다고 술회하고 있다.⁶⁷ 조사 및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영사접근권이 개인의 인권 차원에서 중요함을 말해 준다. 북한에 무단 입국하였다가 43일 만에 풀려난 한국계 미국인 로버트 박을 챙긴 것도 스웨덴 대사관이었다.⁶⁸ 2010년 11월 체포되었던 한국계 미국인 전용수의 경우에도 조선중앙통신은 2011년 4월 13일 억류사실을 공개하고 북한 내 미국의 이권을 대표하는 북한 주재 스웨덴 대사관과 연계하여 영사접촉을 비롯한 인도주의

64. 비슷한 맥락에서 북한이 영사협약에 가입하였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우리가 영사협약의 관련 주요원칙을 적극적으로 원용함에 있어 법적 장애물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박기갑, “북한의 행위와 국제법: 대한민국 국적인 피해사례와 황강댐 무단방류사건을 중심으로,” 『안암법학』, 통권 제31호 (2010.1), p. 371.

65. 『연합뉴스』 <www.yonhapnews.co.kr>, “스웨덴 대사, 北억류 美여기자들 면담,” (보도일: 2009.5.16); 『연합뉴스』 <www.yonhapnews.co.kr>, “스웨덴 대사, 北억류 美여기자 면담,” (보도일: 2009.6.24).

66. Euna Lee, *The World is bigger now* (New York: Broadway Books, 2010), pp. 142~146, pp. 194~195.

67. *Ibid.*, p. 152.

68. 『중앙일보』, 2010년 2월 8일, p. 8; 『국민일보』, 2010년 2월 19일, p. 15.

적 편의를 보장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⁶⁹ 한편, 2009년 3월 북한이 개성공업지구(개성공단)에서 근무하던 현대아산 직원을 강제 억류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북한은 자유권규약의 당사국으로서 동 규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변호인 선임권과 영사협약의 당사국으로서 동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사접근권을 보장했어야 한다. 그러나 개성공단 직원 조사과정에서 이와 같은 기본적인 권리들이 전혀 보장되지 않았다.⁷⁰ 북한은 자국의 국내법과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이하 ‘출입·체류합의서’)에 영사보호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우리 정부의 영사접근권 추구를 부인하려 들 수 있다. 그러나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이하 ‘조약법협약’)⁷¹은 국가가 조약상의 의무불이행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국내법 규정을 원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⁷² 북한이 입법미비를 이유로 영사협약상의 의무를 면할 수는 없다. 북한이 아직까지 조약법협약의 당사국이 아니기 때문에 동 협약의 규정들을 북한에 적용하는 것에 대해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나 조약법협약은 몇 가지 조항을 제외하면 기존의 국제관습법을 성문화(成文化)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⁷³

69. 『연합뉴스』 <www.yonhapnews.co.kr>, “北, 한국계 미국인 전용수씨 억류 인정,” (보도일: 2011.4.14).

70. 이 점에서 현행 출입·체류합의서를 개정하거나 별도의 신변안전 보충합의서를 체결해야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자세한 내용은 이규창, “남한주민의 북한지역 출입·체류와 신변안전보장: 국제법적 분석의 시각에서,” 『법조』, 통권 제644호 (2010), pp. 225~267 참조.

71.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채택일: 1969. 5. 23, 발효일: 1980. 1. 27.

72.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7조: 어느 당사국도 조약의 불이행에 대한 정당화의 방법으로 그 국내법 규정을 원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은 제46조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73. Shabtai Rosenne,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in R. Bernhardt (ed.), *Encyclopedia of Public International Law*, Installment 7 (Amsterdam·

3. 초법적 규범

가. 초법적 규범의 연원성

북한법의 특성 가운데 하나는 철저한 전거주의(典據主義)에 입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일성 교시나 김정일 말씀이 법의 성립근거나 법해석의 기준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법학연구논문도 기본적으로 김일성, 김정일의 문건을 문장의 서두에 내걸고 이것을 전제로 서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방법은 종교사회에서 종교창시자나 종교지도자의 가르침이 금과옥조로서 일반적인 생활규범이 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⁷⁴ 한 예로 북한학자는 형사책임을 논하면서 “위법행위를 한 사람들을 엄격히 다스리고 책임추구를 강하게 하는 것이 바로 법적투쟁입니다.”라고 한 김정일 선집에 나와 있는 김정일의 말씀을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⁷⁵ 다른 논문에서도 “증거는 그 정확성이 철저히 검토확인되기 전에는 사실관계를 밝히고 입증하는 증거로서의 가치가 없습니다.”라고 한 김정일의 말씀을 전제로 삼고 있다.⁷⁶ 2009년 인민보안성(현 인민보안부)이 발간한 『법투쟁부문 일군들을 위한 참고서』도 이러한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이 참고서는 가장 먼저 법의 준수 및 집행과 관련된 김일성 교시와 김정일 말씀을 16쪽에 걸쳐 서술하고 있다.⁷⁷

New York·Oxford: North-Holland Publishing Company, 1984), p. 531; P. Malanczuk, *Akehurst's Modern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Law*, 7th revised ed. (London & New York: Routledge, 1997), p. 130.

⁷⁴ 윤대규, “북한에서의 법의 성격,” 『북한법연구』, 제6호 (2003), pp. 29~30.

⁷⁵ 리정준, “형사책임의 특징,” 『정치법률연구』, 2009년 제2호 (2009), pp. 34~35.

⁷⁶ 강희준, “형사소송에서 과학적 증거로 되는 조건,” 『정치법률연구』, 2006년 제1호 (2006), pp. 26~27.

⁷⁷ 리윤기 외 13인, 『법투쟁부문 일군들을 위한 참고서』 (평양: 인민보안성출판사, 2009), pp. 12~27.

위와 같은 김일성 교시나 김정일 말씀, 나아가 노동당의 지침·방침·원칙 등이 북한 법제에서 법의 연원, 즉 법원(法源)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북한 헌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고 규정하여 노동당의 지도적 지위를 헌법상으로 인정하고 있다(제11조). 또한 개정 당규약은 전문(前文)에서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하는 주체형의 혁명적 당이다. 조선로동당은 주체사상을 당 건설과 당 활동의 출발점으로 당의 조직사상적 공고화의 기초로,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는데서 지도적 지침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북한 헌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고 천명하고 있고(제3조), 국방위원회 위원장을 북한의 최고령도자로 규정하고 있다(제100조). 이 같은 점들을 종합할 때 북한의 법체계는 김일성 교시와 김정일 말씀이 최고 상위규범이 되고 그 아래에 노동당규약과 헌법이 위치하게 되는 형태가 된다고 볼 수 있다. 이 점에서 김일성 교시와 김정일 말씀, 노동당의 강령·지침 등은 북한 체제상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정법을 향도하는 일정한 원칙으로서의 의미와 기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⁷⁸ 북한에서는 김일성 교시가 법의 지도 원리이자 초헌법적 법원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적인 상황이라고 보는 견해⁷⁹나 북한의 법이론은 주체사상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법은 수령과 노동당의 정책을 집행하는 수단에 불과하다고 보는 견해⁸⁰도 이러한 맥락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78. 법원행정처, 『북한의 형사법』, pp. 15~16.

79. 법제처, 『북한법제개요』 (서울: 법제처, 1991), p. 41.

나. 초법적 규범에 대한 북한주민들의 인식

2005년 북한이탈주민 600여명을 대상으로 북한주민들이 김일성 유훈, 김정일 말씀, 당의 지시, 주체사상, 유일사상체계 확립 10대원칙 가운데 어느 것을 더 권위 있는 것으로 여기고 있는가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서는 김정일 말씀이 52.8%, 김일성 유훈이 39%를 차지하여 김일성 부자의 말씀이 차지하는 비율이 도합 91.8%에 이르렀다.⁸¹ 2011년 북한이탈주민 80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도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에 사는 동안 법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었느냐는 질문에 김정일 말씀·지시가 90.5%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인민보안부 포고문 86.5%, 헌법·형법 등의 국가법 79.7%, 국방위원회 명령 77%, 당의 방침 74.3%, 유일사상 10대원칙 71.6%, 내각 결정문·지시서 56.8% 순이었다.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가지는 힘의 순서에는 김정일 말씀(지시) → 당의 명령 → 내각의 결정 → 당간부 지시 → 헌법(일반법)의 순이라는 응답이 52.9%를 차지하였다.⁸²

북한이탈주민 출신의 NK지식인연대 김홍광 대표는 북한 내 법의 연원 간 상하관계를 최우선 1순위와 2순위, 3순위, 4순위로 구분하고 있다. 1순위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지시 및 당대회 보고기록과 같은 저작들, 현지도과정에 남긴 지시사항들, 심지어 기자와의 인터뷰나 차를 타고 가다가 가볍게 한 이야기도 모두 교시와 말씀으로 등록되어 하부에 시달된다고 한다. 노동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 10대원칙과 당규약,

⁸⁰ 윤대규, “북한에서의 법의 성격,” 『북한법연구』, 제6호 (2003), pp. 22~25, 특히 p. 24.

⁸¹ 윤대규, 『북한주민의 법의식 연구』 (서울: 한국법제연구원, 2005), pp. 25~27.

⁸² 최봉대, 『북한이탈주민 법의식 사례 연구』 (통일부 정책연구용역결과보고서, 2011), pp. 10~12.

상급당 지시가 2순위에 속한다고 한다. 헌법과 형법·민법 등의 일반법 규와 최고인민회의가 채택한 각종 법규가 3순위에 속하고, 최고인민회의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법집행 등을 목적으로 시달하는 법규와 내각의 각종 결정들은 4순위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하고 있다.⁸³

다. 인민보안부 포고

형사재판과 관련하여 북한 사회에서 김정일 말씀이나 노동당의 지침이 인민보안부 포고 형태로 이행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그림 II-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북한 당국은 한 포고령에서 외화유통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공개처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 포고령은 북한 인민보안부(구 인민보안성)가 2009년 12월 28일 포고한 것이다.⁸⁴

● 그림 II-1 북한 인민보안부(구 인민보안성) 포고문

포 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령역에서 외화를 류통시키는 자들을 엄격히 처벌함에 대하여
<p>국가의 유일적인 화폐류통질서를 철저히 지키는 것은 모든 공민들의 신성한 법적인무이며 민족의 자주권을 지키고 사회의 경제적 기초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이다.</p> <p>그러나 최근 일부 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와 공민들은 국가의 화폐류통질서를 란폭하게 위반하여 사람들의 사상정신생활에 커다란 후과를 미치게 하고 있으며 건전한 사회질서를 파괴하고 사회주의경제관리질서를 헝클어놓고 있다.</p> <p>이것은 국가와 인민의 이익을 침해하는 엄중한 범죄행위이며 강성대국건설을 저해하고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를 쪼먹는 매우 위험한 해독행위이다.</p>

⁸³ 김홍광, “김정은 후계체제 공식화 과정에서의 북한 법제 개편 전망,” 법제처, 『2011 남북법제연구보고서』 (서울: 법제처, 2011), pp. 172~175.

⁸⁴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 2011』, pp. 64~65.

인민보안성은 공화국정부의 위임에 따라 국가의 화폐유통질서를 엄격히 세우고 국내에서 외화를 유통시키는 범죄와 위법행위를 철저히 없애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포고한다.

1. 모든 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와 국민들은 국내에서 외화현금을 유통시키는 행위를 일체 하지 말라.
 - 1) 외화상점, 식당, 봉사소를 비롯한 모든 단위들에서 외화현금을 받고 진행하던 봉사를 일체 중지하고 우리 돈으로 봉사하라.
비행장, 국제려관을 비롯한 전문대외봉사단위들은 외국인들이 외화를 화폐교환소에서 우리 돈으로 바꾸어 쓸 때에만 봉사하라.
 - 2) 국가기관들이 외화로 받아들이던 각종 수수료와 운임, 료금 등을 우리 돈으로 받으라.
 - 3) 모든 무역기관(합영, 합작단위 포함)들은 수입한 상품을 국가계획에 따라 공급하며 계획에 없는 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와 국민들에게 수입상품을 넘겨주어 비법적인 외화유통을 조장시키는 모리간상행위를 일체 하지 말라.
 - 4) 모든 국민들은 외화를 반드시 화폐교환소를 통하여 우리 돈과 바꾸어 쓰는 질서를 철저히 지키며 외화를 가지고 암거래, 자판장사, 고리대, 사기협잡, 거간, 밀수, 뇌물, 약취 등의 범죄행위를 일체 하지 말라.
 - 5) 모든 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들에서 필요한 외화는 국가계획에 맞물려 보장받으라.
2. 국가가 승인해준 단위들을 제외한 그밖의 모든 단위들의 국내수출지표를 모두 없애며 국내 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상호간 비법적인 외화무현금거래를 일체 하지 말라.
3. 해당 은행기관들은 외화와 우리 돈의 교환체계와 질서를 바로 세우고 교환사업을 책임적으로 하라.
4. 모든 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와 국민들은 비법적인 외화유통을 단속통제하는 감독통제기관과 일꾼들의 사업을 간섭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절대로 하지 않으며 국내에서 비법적으로 외화를 거래하는 행위를 보면 즉시 법기관에 신고하라.
5. 이 포고를 어긴 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는 경영활동과 영업을 중지시키거나 해산하고 거래한 돈과 물건은 몰수하며 외화로 물건을 팔고 사는 자, 외화암거래, 고리대, 거간, 뇌물행위를 비롯하여 비법적으로 외화를 유통하거나 약취한 자, 그러한 행위를 조직하거나 묵인조장시킨 자에 대해서는 거래한 돈과 물건을 몰수하고 엄중성 정도에 따라 사형에 이르기까지 법적으로 엄격히 처벌한다.
6. 이 포고는 국가의 모든 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무력 및 특수기관 포함)와 국민들, 외국인들에게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보안성
주체 98(2009)년 12월 28일

I
II
III
IV
V
VI

이에 앞서 북한 사회안전부는 1997년 8월 5일 「남알을 훔치고 팔며 허실하는 자들을 엄격히 처벌함에 대하여」라는 포고를 공포한 바 있다.⁸⁵ 또한 북한은 2006년 3월 1일 인민보안성 명의의 포고인 「전력선, 통신선을 끊거나 마약거래 행위하는 자들을 엄벌에 처함에 대하여」를 공포하였다. 이 포고문은 전력선·통신선을 끊거나 파괴하는 행위, 전력선·통신선을 끊어가거나 훔쳐 파는 행위, 유색금속을 몰래 팔고사거나 다른 나라에 팔거나 또는 가공품을 만들어 팔거나 이용하는 행위, 관련 일꾼들이 전력·통신시설과 설비들에 대한 관리와 순찰 및 경비질서 위반행위, 마약을 불법적으로 재배·제조·거래·사용하거나 생산·수출하는 행위 등을 금하고, 이를 위반하는 엄중행위를 조직한 자와 집행한 자는 사형에 이르기까지 엄벌에 처하며 가족까지 추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2006년 11월 15일에는 「전력생산에 피해를 주거나 전력을 낭비하는 자들을 엄격히 처벌할 데 대하여」라는 포고를 공포하여 전력 낭비현상을 막기 위해 전력 생산에 필요한 원료를 빼돌리는 현상과 뇌물을 주고 불법적으로 전력을 사용하는 현상, 불법적으로 전기를 연결해 끌어 쓰는 현상 등에 대해 벌금 또는 노동교화형 등의 상응하는 처벌을 내릴 것을 경고한 바도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에 따르면 이와 같은 포고가 몇 달에 한번 꼴로 공포되며, 강연회를 통해 그 내용이 전달되고 포고 내용을 위반하면 형벌을 받는다고 한다. 이 증언이 사실이라면 북한은 2004년 형법 개정을 통해 죄형법정주의를 천명하고서도 여전히 당국의 포고에 의하여 형법상 법정형으로 사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행위를 반국가범죄로 의제하여 사형선고가 가능하게 하여 결과적으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이 포고들이 한

⁸⁵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 2010』 (서울: 통일연구원, 2010), pp. 54~55.

시적으로만 적용되는지 아니면 공포된 후 지속적으로 효력을 유지하는지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포고 내용을 보면 한번 공포되고 나면 계속 적용된다고 볼 수밖에 없다. 북한이탈주민의 증언대로 포고가 몇 달에 한 번씩 공포된다고 한다면 그동안 발령된 수많은 포고로 인해 사실상 형법의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⁸⁶

라. 후계자 김정은의 지시

북한의 후계자로 공식 등장한 김정은의 지시도 초법적 기능을 하고 있다. 이는 그의 지시로 탈북행위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데서 잘 나타난다. 김정은은 2010년 11월 18일 ‘국경에서 시범으로 경적을 한 번 울리라’는 지시를 하였으며 이 지시에 따라 국가보위부, 보위사령부, 중앙당 간부들로 이뤄진 검열대가 국경지역에 파견돼 해당지역의 보위부·보안부원과 함께 국경경비를 강화하고 불법월경자, 탈북 저지·색출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한다. 후계자 김정은의 지시로 기존 5호담당제에서 3호담당제로 국경지역 주민들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하였다고도 한다. 또한 2011년 1월 3일에는 김정은이 국가안전보위부에 ‘중국 내 탈북자를 모조리 잡아들이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한다. 이 명령에서 김정은은 “정치사상 진지를 허물어뜨리는 자들이 바로 중국의 탈북자들”이라며 중국에 있는 탈북자들을 모두 잡아들이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그리고 같은 해 4월에는 탈북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중국과의 국경지역에 조명지뢰를 매설하기 시작했다고도 한다. 같은 해 5월 3일에는 김정은 명의로 북·중 접경지역에 탈북자 단속 강화 등

⁸⁶ 한명섭, “북한 형사법률의 적용실태,” 대한변호사협회, 『2010 북한인권백서』 (서울: 대한변호사협회, 2010), pp. 176~178.

을 내용으로 하는 지시가 내려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후계자 김정은 이 탈북자 문제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 인민보안부, 국가안전보위부 등 북한의 공안기관들이 성과를 내기 위해 탈북자 단속에 인간함을 쓰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한 탈북자 색출 및 가족들에 대한 단속이 북한 내륙지역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는 예전에는 없던 현상으로 탈북자들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이 새로운 차원에 접어들고 있음을 말해준다.⁸⁷ 국경에서의 탈북 감시 및 통제 강화로 인해 급기야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나고 말았다. 2011년 10월 25일 북한 양강도 혜산 부근에서 압록강을 건너 중국측 도로에 올라선 탈북 남성이 북한 경비대가 쏜 것으로 보이는 총에 맞아 쓰러져 숨진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중국 땅에 도착한 탈북자를 사살한 것은 이례적이다. 북한은 지금까지 경비병들에게 탈북을 시도하는 북한주민들을 사살할 수 있는 권한을 주기는 하였지만 중국 땅에 도착한 탈북자에게 총을 쏘지는 않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중국으로 가는 탈북자도 남한으로 도망치는 조국반역자로 간주해 즉결 사살하라는 내부 지시가 내려왔으며, 탈북자를 사살한 군인은 공훈을 세운 것으로 인정받아 표창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⁸⁸ 북한이 중국 땅에 이미 발을 디딘 탈북자를 향해 총을 발사하였다는 것은 양국의 이해와 협조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무력의 사용이나 무력의 위협은 유엔 현장에서 금지하고 있다(제2조제4항). 1970년 채택된 「유엔 헌장에 따른 국가 간의 우호관계 및 협력에 관한

87. 이규창, “김정은 후계구도하의 북한인권법제 분석과 평가,” pp. 253~254.

88. 『동아일보』, 2011년 11월 7일, p. A1. 북한이 국경에서 탈북 감시 및 통제를 강화함에 따라 해상을 통한 탈북 시도가 증가하고 있다. 2011년 한 해 동안 10월 말까지 해상을 통한 탈북 시도가 6건(서해 4건, 동해 2건) 있었다. 관련 내용은 이규창, “북한의 탈북 감시 및 처벌 강화와 우리의 대응,”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CO 11-30, 2011.11).

국제법원칙선언」⁸⁹도 마찬가지로 규정하고 있다(제1항). 이를 볼 때 북한과 중국 양국 간에 탈북자 사살에 관한 모종의 합의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본 연구의 주제인 형사재판과 관련하여 볼 때도 문제다. 탈북 행위가 설령 북한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국반역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재판을 통하지 않고 현장에서 사살하는 것은 생명권에 반할 뿐만 아니라 재판을 통해 형을 판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북한의 법령에도 반한다. 재판을 받을 권리는 북한도 당사국으로 되어 있는 자유권 규약에도 규정되어 있다. 자유권규약은 모든 사람이 그에 대한 형사상의 죄를 결정함에 있어서 본인의 출석 하에 재판을 받을 권리를 완전하고 평등하게 향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4조제3항).

⁸⁹- Declaration on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Concerning Friendly Relations and Co-operation among States in accordance with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1970년 유엔총회결의 2625(XXV).

Ⅲ. 정규재판제도



본 장에서는 북한주민의 인권 측면에서 북한 정규재판제도의 특징과 실태를 살펴본다. 크게 북한 형사사법제도의 제도상의 특징(제1절)과 재판절차 및 재판심리상의 특징과 실태(제2절), 판결·판정 집행상의 특징과 실태(제3절)로 구분하였다. 제1절 북한 형사사법제도의 제도상의 특징으로는 재판에 대한 당의 영도와 통제, 인민참심원 제도 채택, 편의적 관할제도 도입, 검사의 재판 감시 등을 들 수 있다. 제2절 재판절차 및 재판심리상의 특징과 실태에서는 제1심 재판절차 관련 법규정의 준수 실태와 제2심 및 상소 실태, 현지공개재판, 변호권 실태, 재판감독절차를 분석한다. 제3절 판결·판정 집행상의 특징과 실태에서는 공개처형 과정에서의 사형 관련 규정 준수 실태와 형사처벌로서 2004년 북한 형법에 노동단련형이 신설되었지만 행정처벌로서의 노동단련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문제, 뇌물에 의해 재판이 영향을 받는 문제를 살펴본다.

1. 형사사법제도의 특징

가. 재판에 대한 당의 영도와 통제

북한의 판사는 선거를 통하여 선출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즉, 최고재판소 소장은 최고인민회의에서 선거하며(헌법 제91조제12호), 그 외 최고재판소 판사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선거하고, 도(직할시)재판소와 인민재판소 판사는 해당 인민회의에서 선거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재판소구성법 제4조, 지방주권기관법 제10조). 그러나 북한은 당 우위 및 중앙집권제원칙에 따라 김정일 또는 노동당이 명목상 최고 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의 입법권을 실질적으로 통제한다.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선출과 활동도 역시 노동당이 주관한다. 내각

I

II

III

IV

V

VI

과 최고재판소 등은 형식상 최고인민회의가 선출하고 그 앞에 책임을 지게 되어 있다. 최고재판소는 자기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앞에 책임을 지며 최고인민회의가 휴회 중인 경우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앞에 책임진다(헌법 제168조). 결국 최고재판소 등 북한의 사법기관은 그 상급기관, 최고인민회의, 노동당의 관리·감독을 받는 제한적 수임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점에서 북한의 사법기관은 최고인민회의 정책에 따라 사법적 실무를 담당하는 사법적 집행기관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하는 입장도 있다.⁹⁰

북한은 재판의 독립과 관련하여 재판소는 재판에서 독자적이며 재판 활동을 법에 의거하여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헌법 제166조, 형사소송법 제272조). 그러나 이는 개별 법관의 독립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소 단위의 조직체계로서의 독립만을 선언한 것에 불과하여 진정한 의미의 재판독립이라고 할 수 없다. 오히려 인민대중이나 반독재세력의 비판으로부터 독립하여 김일성부자의 교시와 노동당의 주체사상적 영도만을 따른다는 투쟁적 개념을 내포하고 있다.

북한의 사법권 내지 재판 독립의 부인은 북한 재판제도의 본질 및 임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북한의 모든 재판소는 당의 노선과 정책을 통일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중앙의 통제를 받을 의무를 진다. 북한에서는 노동당이 국가와 정부의 원동력이고 정치·경제·사상 등 모든 분야의 중추기관이기 때문에 당이 입법·사법·행정기관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의 임무를 조정하고 활동을 지도하며, 노동당원이 모든 국가기관에서 직위를 독점하고 당의 노선과 정책을 엄격히 수행하는 것을 통치원리로 하고 있기에 자유민주주의 국가처럼 권력분립의 원칙은 인정

⁹⁰ 이상철, “북한 형사법에 관한 연구,” 『육사논문집』, 제61집 1권 (2005), p. 194.

되지 않고 있다. 북한은 헌법 제5조에서 권력통합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는데 북한에서 모든 국가기관들은 민주주의 중앙집권제원칙에 의하여 조직되어 운영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모든 재판소도 당의 노선과 정책을 통일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중앙 즉 김일성부자를 의미하는 당의 지도와 통제를 받을 의무를 지게 된다. 북한의 학자들은 민주주의 중앙집권제는 인민대중의 창조력과 국가의 통일적 지위를 결합시킴으로써 사회주의 건설과 프롤레타리아 독재실현을 위한 사회주의 국가기관들의 조직과 운영의 기본원칙이라고 설명하고 있다.⁹¹ 이 같은 해석은 민주주의 중앙집권제는 김일성 주석의 단일적 영도 아래만 성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는 북한학자들의 주장에 의하여 더욱 확실해진다.⁹²

북한에서 김일성 주석은 다음과 같이 교시한 바 있다.

“법이란 정치의 외부적 표현에 불과합니다. 법이란 정치를 알지 못하고서는 결코 이해되거나 집행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법은 국가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 국가정책은 곧 당의 정책이기 때문에 우리 당의 정책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은 우리나라 사법일군⁹³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법을 해석 적용할 때 우리 당이 요구하고 있는 계급적인 관점 다시 말해서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관점에 의하여 정확히 해석하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법자체가 우리 당의 정책

91. 인문과학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해설』 (평양: 인문과학사, 1973), p. 11.

92. 북한연구소, 『북한의 재판제도』 (서울: 은창문화사, 1991), p. 49.

93. 일군(員軍)의 본래 어원은 히브리어로 ‘휴페라테스’인데 의미는 배 아래쪽에서 밖을 보지 못한 상태로 노 젓는 사람이란 뜻이다. 즉 하나님의 일군, 명령에 순종·복종하는 자, 내가 어디로 가는지 물을 권리가 없는 복종의 의미가 있는데, 북한에서는 수령과 당 정책에 무조건 복종한다는 뜻으로 일군이란 표현을 그 어원에서 빌려 온 것으로 보인다.

I
II
III
IV
V
VI

을 옹호하고 실현시키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인 한 법을 정확히 집행한다는 것은 곧 당의 정책을 확실히 집행한다는 것으로서 당의 정책에 복종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⁹⁴

북한 헌법은 재판활동을 통하여 주권과 사회주의제도를 보호하는 것을 재판소의 임무 가운데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헌법 제162조). 북한의 재판소는 소극적으로는 당, 최고인민회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지도와 감독을 받으며, 적극적으로는 이들 기관의 지도와 감독이 없더라도 당의 노선과 정책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연구하여 모든 재판활동이 그에 합치되도록 노력함으로써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무기인 도구로서의 임무를 부여받는 것이 된다. 김정일은 재판기관을 검찰기관 및 사회안전기관들과 함께 당과 국가의 안전을 보위하고 나라의 법질서를 강화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프롤레타리아 독재기관이라 하고 있다.⁹⁵ 한 북한학자는 북한의 검찰기관과 재판기관은 노동당의 믿음직한 정치적 보위자이며, 검찰기관과 재판기관들이 노동당의 노선과 정책을 기준으로 준법감시를 강화할 때만이 국가의 법이 정확히 집행되고 당 정책이 정확히 관철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⁹⁶

2006년 4월 법원행정처가 탈북인사들을 상대로 실시한 면접조사에서 북한의 도·시·군 인민위원회에 법무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중요 형사사건의 경우 판사가 판결을 선고하기 전 법무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증언이 있었다.⁹⁷ 북한 헌법과 지방주권기관법은 재판소 판결 심사를 지방인민위원회의 임무와 권한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

94. 조선로동당출판사, 『김일성선집 5』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3), pp. 451~452.

95. 리윤기 외 13인, 『법투쟁부문 일군들을 위한 참고서』, p. 25.

96. 장성철, “당정책집행에 대한 법적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검찰, 재판기관의 중요과업,” 『정치법률연구』, 2007년 제2호 (2007), p. 29.

97. 법원행정처, 『북한의 형사법』, p. 26.

(헌법 제147조, 지방주권기관법 제24조). 2011년 3월 탈북한 북한이탈주민 ○○○도 중앙이든 시·군이든 마찬가지로 판결을 내리기 전에 인민위원회 내에 있는 안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판결이 최종 확정된다고 증언하였다.⁹⁸

2005년 북한이탈주민 6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 설문조사결과 북한에서 재판관은 재판활동에서 당의 지도를 거부할 수 없다고 대답한 사람이 83.8%, 재판소는 독립되어야 한다고 대답한 사람이 69.6%에 달했다.⁹⁹

표 III-1 재판의 독립에 대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생각¹⁰⁰

현재의 생각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재판소는 다른 국가기관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되어야 한다	합 계	64	56	84	264	32
	백분율(%)	12.8	11.2	16.8	52.8	6.4
재판관은 재판활동에서 당의 지도를 거부할 수 있다	합 계	348	71	17	31	33
	백분율(%)	69.6	14.2	3.4	6.2	6.6

나. 인민참심원제도 채택

참심제(參審制)는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 하여금 직업판사와 합의재판부를 이루어 재판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일반인인 참심원도 재판부의 어엿한 구성원으로 직업판사와 함께 재판에 전면적으로

⁹⁸ 북한이탈주민 ○○○ 증언, 2011년 6월 7일.

⁹⁹ 윤대규, 『북한주민의 법의식 연구』, p. 63.

¹⁰⁰ 위의 책, p. 64.

I
II
III
IV
V
VI

참여하여 직업판사와 동등한 권리를 행사하고 다수결에 따라 재판내용을 결정한다. 북한은 1945년 11월 23일 사법국이 내린 포고령 제4호 「재판소 조직에 관한 건」에 따라 구 소련의 인민참심제를 모방한 인민참심원제도를 도입·운영하기 시작했다.¹⁰¹

인민참심원의 임기는 해당인민회의 임기와 같다(헌법 제160조). 인민참심원은 민주주의적 원칙에서 선거한다. 최고재판소 인민참심원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선거하며 도(직할시)재판소와 인민재판소 인민참심원은 해당 인민회의에서 선거한다(재판소구성법 제4조). 실질적으로 당성이 강한 자들만이 인민참심원으로 선출될 수 있고 선출된 인민참심원은 당의 지시를 받지 않을 수 없는 북한의 현실에서 인민참심원제도는 당에 의한 재판소 통제를 제도적으로 가능케 하는 수단으로 볼 수 있다. 제1심 재판소는 판사인 재판장과 인민참심원 2명으로 구성한다. 특별한 경우에는 제1심 재판소를 판사 3명으로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느 한 판사가 재판장으로 된다(재판소구성법 제9조). 인민참심원은 1년에 14일간 재판심리에 참가할 수 있다. 필요에 따라 인민참심원은 14일 이상 재판심리에 참가할 수 있다(재판소구성법 제12조). 인민참심원은 재판심리에 참가한 기간의 생활비, 노력보수와 여비를 그가 속한 기관·기업소·단체에서 받는다. 기관·기업소·단체에 근무하지 않는 인민참심원은 해당재판소에서 재판심리에 참가한 기간의 여비를 받는다(재판소구성법 제13조). 북한의 인민참심원제도는 비법률가이며 비상임인 인민참심원이 재판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으며, 인민참심원은 재판소에서 판사와 동등한 자격으로 재판소를 구성하여, 사실인정 및 법률적용의 모든 과정에 참여하고 해당사건의 재판에 관

¹⁰¹ 법원행정처, 『북한의 형사법』, p. 27.

하여 판사와의 사이에 아무런 권한 차이가 없다. 이 점에서 북한의 인민참심원제도는 배심원들만으로 하나의 합의체로 구성하여 사실인정에만 관여케 하는 영미법계 국가들의 배심원제도와는 다르다. 북한학자들은 참심원제도를 통하여 인민들이 재판소 구성에 다수로 참여하여 재판의 주체가 된다는 점에서 이 제도가 가장 민주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¹⁰² 서구 자본주의 국가들의 배심제도에 대해서는 착취계급이 자신들의 이익을 옹호하는 법적 수단의 하나로 배심제를 이용하고 있으며,¹⁰³ 배심제가 자본주의사회에서 정치적 자유와 민주주의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인정되고 있으나 자본주의사회는 인간에 의한 인간의 지배와 예속, 착취와 압박에 기초하고 있다며 이 점에서 자본주의사회에서 정치적 자유와 공정한 재판이란 논의할 여지가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¹⁰⁴

인민참심원으로 선출되기 위한 특별한 자격이나 조건은 없다. 구 재판소구성법에 따르면 인민참심원은 일정한 자격요건이 필요했으나 현행 재판소구성법에는 자격요건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실제로 인민참심원을 선출하는 선거가 실시되는지 여부에 대해 알려져 있지 않으나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인민참심원을 선출하는 선거가 없으며, 있다고 하여도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한다.¹⁰⁵

재판과 관련하여 중요한 점은 인민참심원이 재판과정이나 판결에 있어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느냐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법률에

¹⁰² 북한연구소, 『북한의 재판제도』, p. 49.

¹⁰³ 조은향, “배심제도의 발생에 대한 고찰,” 『정치법률연구』, 2009년 제4호 (2009), p. 43.

¹⁰⁴ 장청송, “자본주의국가의 배심제도와 그 반동성,” 『김일성종합대학학보: 력사·법학』, 제55권 제1호 (2009), p. 150.

¹⁰⁵ 안소울, “북한의 재판제도,” 법원행정처, 『통일사법정책연구(1)』 (서울: 법원행정처, 2006), pp. 374~375.

는 판결을 낼 때 회의에 참가한 판사·인민참심원들의 다수가결로 판결을 채택한다고 규정되어 있다(재판소구성법 제17조). 그러나 인민참심원들은 비록 법률에는 재판에 있어 판사와 동일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법률 문외한이라는 점, 그리고 외부의 간섭 등의 사유로 판결의 성립에는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¹⁰⁶ 재판에 있어 단순히 거수기에 불과하다는 북한이탈주민의 증언도 있었다.¹⁰⁷ 그러나 2005년 북한이탈주민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에서는 이와는 다른 결과가 나왔다. 이 조사결과에서는 인민참심원이 재판에 관여한다는 의견이 52%, 모르겠다는 대답이 37.4%를 차지했고, 인민참심원이 재판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불과 3%에 불과하였다.¹⁰⁸

다. 편의적 관할제도 도입

북한 재판소의 심급은 최고재판소와 도(직할시)재판소, 인민재판소의 3급 2심제로 구성되어 있다. 도(직할시)재판소는 반국가 및 반민족 사건, 사형, 무기노동교화형으로 기소된 일반범죄사건을 제1심으로 재판하고, 관할 지역 내 인민재판소의 판결에 대한 상소·항의사건을 제2심으로 재판한다. 필요에 따라 도(직할시)안의 인민재판소의 관할에 속하는 범죄사건을 직접 재판하거나 다른 인민재판소로 보낼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27조). 최고재판소는 도(직할시)재판소, 철도재판소의 제1심 재판에 대한 상소·항의 사건을 제2심으로 재판한다. 그러나 필요에 따

106- 법원행정처, 『북한의 형사법』, pp. 28~29.

107- 안소율, “북한의 재판제도,” p. 375.

108- 윤대규, 『북한주민의 법의식 연구』, p. 65.

라 인민재판소나 도(직할시)재판소의 관할에 속하는 제1심 사건을 직접 재판하거나 같은 급 또는 같은 종류의 다른 재판소에 보낼 수 있다(제129조). 인민재판소는 도(직할시)재판소와 특별재판소 및 최고재판소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일반범죄사건을 재판한다(제126조). 북한의 심급제도는 최고재판소가 1심으로 심리·재판하는 사건을 제외하고는 상급재판소에 상소·항의할 수 있도록 하는 2심제로 되어 있는데 상급재판소의 권한이 넓고 강하다는 특징이 있다. 즉 상급재판소는 그 관할 구역 내에 있는 하급재판소의 사건에 대하여 직접 심리·재판을 하거나 동급의 다른 재판소로 이송할 수 있다. 이는 북한에서는 원칙적으로 3급 2심제를 채택하면서도 심급제의 이익조차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 인권보장과 권리의 구제에서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북한 형사소송법은 필요에 따라 범죄사건을 이송할 수 있는 특별규정을 두어 사물관할 및 심급관할의 원칙을 사실상 무력화시키고 있다. 편의적 관할제도의 도입은 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지만 북한주민들의 인권보장 후퇴라는 문제점이 있다. 아울러 북한의 심급제도는 상소권과 관련해서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 다시 말해 북한은 3급 2심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최고재판소가 1심으로 한 재판은 그 자체로서 확정되기 때문에 상소나 항의로는 더 이상 다룰 수 없고 비상상소나 재심에 의해서만 다룰 수 있을 뿐이기에 사물관할이나 심급관할이 무의미해질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다.

최고재판소가 제1심으로 재판한 사건의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 여자 유나 리와 로라 링 사건이다. 두 여기는 2009년 3월 17일 북한 지역에 침입한 혐의로 체포되어 2009년 6월 4일 중앙재판소(현 최고재판소)에서 북한 형법 제69조의 조선민족적대죄와 제233조 비법국경출입죄로 기소되어 각각 12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 또한 북한은

I
II
III
IV
V
VI

2010년 1월 25일 북·중 국경지역을 통해 북한에 들어간 미국인 아이잘로 말리 고프스(Aijalon Mahli Gomes)에 대해서도 역시 중앙재판소에서 제1심으로 재판을 하여 조선민족적대죄와 비법국경출입죄로 유죄를 확정하고 8년의 노동교화형과 7천만 원의 벌금을 선고하였다. 이들 재판은 중앙재판소가 제1심으로 재판을 하였기 때문에 그대로 형이 확정되었다.¹⁰⁹

표 III-2 북한 재판소의 관할 및 심급

사건	심급	1심	2심
도(직할시)재판소와 특별재판소 및 최고재판소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일반범죄		인민재판소	도(직할시)재판소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사건, 사형, 무기노동교화형으로 기소된 일반범죄사건, 필요에 따라 도(직할시)안의 인민재판소의 관할에 속하는 범죄사건		도(직할시)재판소	최고재판소
군인, 인민보안원이 저지른 범죄사건, 군사기관의 종업원이 저지른 범죄사건		군사재판소	-
철도운수부문의 종업원이 저지른 범죄사건과 철도운수사업을 침해한 범죄사건		철도재판소	최고재판소
필요에 따라 어느 재판소의 관할에 속하는 제1심사건		최고재판소	-

라. 검사의 재판 감시

북한은 검찰기관으로 하여금 수사와 예심뿐만 아니라 재판을 감시하게 하고 있는데 이는 위에서 살펴본 재판에 대한 당의 통제 내지는 당의 영도의 또 다른 측면으로 볼 수 있다. 재판에 대한 감시는 검사가 한다(형사소송법 제14조). 검찰감시법은 이를 보다 자세하게 규정하고

¹⁰⁹ 한명섭, “북한 형사법률의 적용실태,” p. 185.

있다. 우선 검찰감시를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을 정확히 지키고 집행하는가를 감시하는 국가의 권력적 활동’으로 정의하고(검찰감시법 제1조), 감시를 ‘국가의 믿음직한 정치적 보위자’로 내세우고 있다(제7조). 검사는 재판에서 사건을 법의 요구에 맞게 제때에 정확히 집행하는가를 감시하여야 한다(제12조). 재판에 대한 감시는 사건심리에 참가하는 방법으로 한다. 검사가 특별한 사정으로 재판 심리에 참가하지 못하거나 재판소의 판결·판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사건기록을 요구하여 볼 수 있다(제26조). 심지어 검찰감시를 신속, 정확히 하기 위하여 기관·기업소·단체의 일군과 공민에게 법준수집행정형에 대한 설명과 문건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행정회의에 참가하거나 회의록을 볼 수도 있다(제30조). 검찰감시과정에 범죄와 위법행위를 확정하였을 경우 감시조서를 만들 수 있다(제28조). 검사가 위법행위를 발견하였을 경우 재판소에 의견을 제기할 수 있다. 이때 재판소는 검사의 의견을 심리하고 판정으로 해결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88조).

2. 재판절차 및 재판심리상의 특징과 실태

가. 재판절차

(1) 재판소 구성

제1심 재판은 재판장인 판사와 인민참심원 2명으로 구성되며, 특별한 경우에는 판사 3명으로 재판을 할 수 있다. 제1심 재판에는 재판서기가 참가한다(형사소송법 제274조, 재판소구성법 제9조). 재판심리에는 검사와 변호사가 참가해야 한다. 특별한 사정으로 검사가 참가하지

I
II
III
IV
V
VI

못하거나 피소자가 변호인의 방조를 받을 권리를 포기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검사나 변호인의 참가 없이도 재판심리를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76조). 재판소성원, 즉 판사와 인민참심원은 재판정의 가운데 자리를 차지하고, 검사와 변호인은 서로 마주한 자리를 차지한다. 재판서기는 재판소성원 옆의 자리를 차지하고, 피소자는 재판소성원과 마주한 자리를 차지한다(제280조).

실제로 재판소에서의 재판에서는 위 규정들이 형식적으로는 지켜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에 의하면 함흥시 해안구역 인민재판소에서 재판할 때 해안구역 검찰소에서 검사 1명, 해안구역 재판소에서 판사 1명, 변호사 1명, 인민참심원 2명이 참가하였다고 한다.¹¹⁰

유나 리는 최고재판소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그녀가 기술하고 있는 재판소 모습은 위 규정들과 일치하고 있다. 유나 리는 최고재판소 재판정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재판정 앞 높은 단 위에 커다란 책상이 있고 판사 3명이 앉아 있었다. 재판석 옆에 속기사가 앉기 위한 책상과 의자가 있었다.¹¹¹ 방청객들과 유나 리를 숙소에서 재판정에 데리고 온 여군 2명은 판사들을 마주보고 긴 의자에 앉아 있었다. 재판정 오른쪽에 로라 링측 변호인이 자리하고 있었고,¹¹² 재판정 왼쪽에 검사가 자리하고 있었다. 방청석 앞에는 로라 링과 유나 리가 앉기 위한 의자가 2개 있었다.¹¹³ 유나 리의 진술을 토대로 북한 최고재판소

110-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 2011』, p. 1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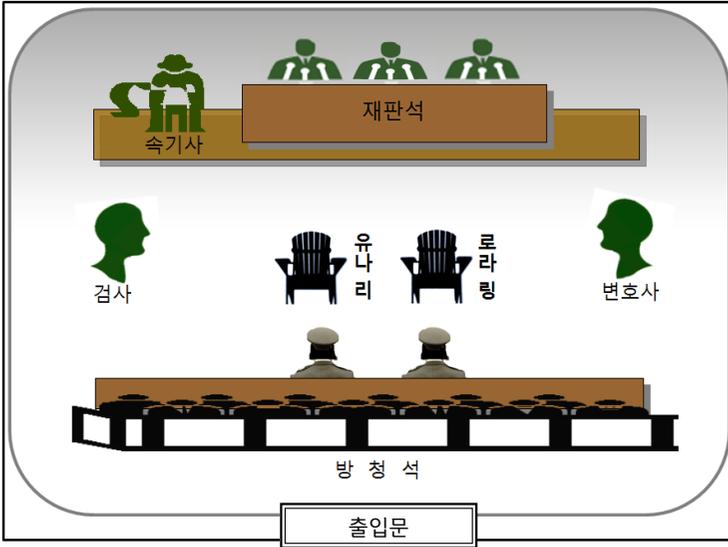
111- 속기사가 재판석 좌, 우측 어디에 앉아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다.

112- 유나 리는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다. Euna Lee, *The World is bigger now*, p. 187.

113- *Ibid.*, p. 197. 유나 리와 로라 링의 자리는 설명되어 있지 않아 유나 리의 자리가 오른쪽이었는지, 아니면 왼쪽이었는지의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

재판정의 모습을 그리면 아래 그림과 같다.

● 그림 III-1 북한 최고재판소 재판정의 모습



(2) 재판준비

제1심 재판절차는 재판준비로부터 시작된다. 재판준비는 재판을 담당한 판사가 하는데 사건기록을 통해 예심에서 범죄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되었는지, 기소에 근거가 있는지, 형법조항이 옹게 적용되었는지 등을 검토하며 범죄현장과 증거를 확인할 수 있다(제289조~제291조). 검토결과 예심이 충분히 진행되었다고 인정되면 피심자를 재판심리에 넘기는 판정을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범죄사건을 검사에게 돌려 보내는 판정을 한다(제292조, 제293조). 이와 같은 재판준비절차는 사건에 대한 새로운 조사를 시행하는 단계가 아니라 수사, 예심, 기소단계

I
II
III
IV
V
VI

의 기록들을 검토하여 재판심리단계로 넘기는 문제를 해결하는 중간단계로서, 재판심리단계에 들어가기 전 재판준비단계에서 재판소와 검사가 피소자의 형벌과 형량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는 것으로 파악된다.¹¹⁴

(3) 재판심리

제1심 재판은 재판심리 시작, 사실심리, 논고와 변론, 피소자의 최후진술(마지막 말), 판결의 선고 등 크게 5단계로 진행된다(형사소송법 제301조).

재판이 개시되면 재판장은 재판시작을 알리고 피소자에게 본인이 틀림없는가를 확인한 다음 기소장등본접수정형과 체포일시를 묻고 피소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려주고(제302조), 피소자와 재판관계자에게 재판소성원과 검사, 변호인, 재판서기, 감정인, 통역인, 해석인 교체 여부를 물어본다(제303조).

재판장이 사실심리가 시작된다는 것을 알리면 검사가 기소장을 낭독하는데, 검사가 재판심리에 참가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재판서기가 기소장을 낭독한다(제305조). 이후 재판장은 피소자에게 기소사실의 인정여부를 물어보고(제306조), 사실심리를 진행한다(제307조~제323조). 재판장이 검사, 변호인, 인민참심원에게 심리할 것이 더 없는지의 여부를 묻고 사실심리가 종결된다(제324조).

사실심리가 종결되면 검사, 손해보상청구자,¹¹⁵ 변호인의 순서로 논

¹¹⁴ 김상균, “북한의 사법제도,” 법원행정처, 『남북교류와 관련한 법적 문제점(6)』 (서울: 법원행정처, 2007), p. 61.

¹¹⁵ 범죄로 손해를 입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보상책임 있는 자를 상대로 형사사건을 취급하는 예심원 또는 재판소에 손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70조). 손해보상제도는 북한 형사법의 특징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손해보상이란 범죄행위로 피해를 입은 자가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형사사건을 취급하는 절차에서

고와 변론을 한다(제325조~제329조).

논고와 변론을 마치면 재판장은 피소자에게 최후 진술할 기회를 준다. 피소자의 최후 진술에서 범죄사건의 해결에 본질적 의의를 가지는 새로운 사실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재판심리를 다시 시작한다(제330조).

피소자의 최후 진술이 끝나면 재판장은 재판심리가 종료되었음을 알리고 인민참심원과 함께 합의실에서 판결을 채택하기 위한 협의를 한다(제331조). 판결은 재판에 참가한 판사와 인민참심원들의 다수결로 채택한다(제342조, 재판소구성법 제17조).

지금까지 남한으로 온 북한이탈주민들의 경우 검사, 판사, 인민참심원, 변호사 출신이 없는 상황이어서 정확한 재판절차의 실태를 파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법률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 북한이탈주민들은 재판절차에 대해 상이하게 증언하고 있다. 재판에 들어가기 전 단계인 수사단계나 예심단계에서 판사와 인민참심원이 배제된 채 형벌이 결정된다는 증언들이 있다. 2010년 1월 탈북한 북한이탈주민 ○○○은 자신이 재판을 받은 경험이 있는데 예심단계에서 검찰소 검사와 예심원 2명이 교화를 결정하였다고 한다.¹¹⁶ 이는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재판준비단계에서 재판소와 검사의 조율로 형이 확정되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반면 북한이탈주민 증언 가운데는 북한의 형사재판절차가 형법, 형사소송법, 재판소구성법 등 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상책임 있는 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절차를 말한다. 우리 형사소송절차에서의 배상명령 신청에 대응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북한학자는 손해배상청구제도를 민사소송의 절차를 밟는 경우에 있게 되는 심리의 중복을 피하고 재판소와 재판관계자들의 소송경계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하고 있다. 법원행정처, 『북한의 형사법』, p. 515.

¹¹⁶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 2011』, p. 148.

I
II
III
IV
V
VI

보여주는 사례도 있다. 북한이탈주민 ○○○은 2007년 5월 무산군 재판소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두 달간 예심을 받았으며, 재판소 부소장, 인민참심원 2명, 변호사 1명, 검사 1명 등 5명이 자신을 재판하였고, 검찰의 논고와 변호사의 변론, 재판소 부소장과 인민참심원의 판결로 재판이 진행되었다고 증언하였다.¹¹⁷

서류상으로만 재판을 실시한다는 증언들도 있다. 북한이탈주민 ○○○은 중국에서 한국 영사관 진입 실패로 2004년 3월 1일 체포되어 송환되었는데, 서류상 재판만 진행되었으며 변호사 등은 없었다고 한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은 불법월경죄 및 한국행 시도로 증산교화소에 2003년 7월 12일부터 2004년 12월 24일까지 수감되었는데, 재판 없이 서류상으로 1년 교화형을 선고받았다고 한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은 도강하려다 잡혀서 회령시 보위부에서 한 달 동안 조사를 받고 시보안서로 넘겨졌다고 한다. 그는 증산교화소로 보내지기로 결정되었는데, 탈북자 문제는 재판을 하지 않고 문건으로만 처리하기 때문에 재판을 받지 않았다고 증언하였다.¹¹⁸

유나 리 재판에서는 북한 형사소송법 규정들이 대체로 준수되었다. 재판은 3일 만에 종료되었다. 첫날인 6월 4일 자신을 감시하고 있는 여자 군인 2명이 자신을 데리고 재판소에 갔는데 제일 먼저 재판서기가 재판 개시를 알리고 이어 판사들이 유나 리와 로라 링에게 재판정 안에 기피하는 인물이 있는지 물어봤다. 검사가 유나 리와 로라 링에게 이름과 가족관계를 물어본 후에 유나 리와 로라 링의 진술서를 낭독하였다.

¹¹⁷- 위의 책, pp. 148~149.

¹¹⁸- 위의 책, p. 149.

이후 로라 링이 재판정을 떠나 로라 링과 유나 리는 따로따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¹¹⁹ 검사가 유나 리에게 심문을 하고 첫째날 재판이 종료하였다. 재판 이틀째인 6월 5일에는 검사가 제대로 심문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한 재판장이 유나 리에게 여러 가지를 질문하였다.¹²⁰ 재판 3일째인 6월 8일 재판장이 유나 리에게 최후 진술을 하라고 말하였다. 이후 판사들이 재판정에서 퇴장하였고, 로라 링이 재판정에 들어와 유나 리 옆에 앉았다. 그리고 나서 판사들이 재판정에 들어와 판결문을 낭독하였다.

● 그림 III-2 유나 리 재판일지¹²¹

- 재판 첫째날(2009년 6월 4일)
 - 아침 두 명의 여자 군인이 유나 리를 재판소로 데리고 감
 - 재판소 3층 대기실에서 잠시 대기 후 법정으로 들어감
 - 법원 서기가 재판 개시를 알림
 - 판사들과 검사 입실
 - 판사들이 유나 리와 로라 링에게 이 법정 안에 기피하는 인물이 있는지 질문
 - 검사가 유나 리에게 기립하라고 말함
 - 검사가 유나 리에게 이름과 가족관계를 물어봄
 - 유나 리가 의자에 앉고 이번에는 검사가 로라 링에게 이름과 가족관계를 질문
 - 검사가 유나 리와 로라 링의 진술서를 낭독
 - 로라 링이 재판정을 떠나 로라 링과 유나 리는 따로따로 재판을 받음
 - 검사가 유나 리에게 중국에 간 이유를 물음
 - 심문 종료
- 재판 이틀째(2009년 6월 5일)
 - 검사가 제대로 심문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한 재판장이 유나 리에게 직접 여러 가지를 질문

¹¹⁹- 형사소송법 제309조: 여러 명의 피소자를 함께 심리하는 재판소는 범죄사건의 성질을 고려하여 피소자를 한사람씩 재판정에 불러다 심문할 수 있다.

¹²⁰- 형사소송법 제277조: 재판장은 범죄사건의 진상이 정확히 밝혀지도록 재판심리와 재판관계자들의 활동을 지휘하며 그들이 재판질서를 철저히 지키도록 통제하여야 한다.

¹²¹- Euna Lee, *The World is bigger now*, pp. 196~274.

I
II
III
IV
V
VI

- 재판장이 유나 리에게 (유나 리와 로라 링이 제작하려고 했던) 다큐멘터리가 미국에게 유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질문
- 다큐멘터리가 북한을 세상으로부터 단절시킨다면 미국에 유익을 가져다 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유나 리가 답변
- 유나 리의 답변에 재판장이 분노, 반역자라고 함
- 재판장이 유나 리에게 조선사람이 조선을 배반했기 때문에 로라 링보다 죄질이 무겁다고 발언
- 재판장의 발언에 유나 리는 사형 선고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

○재판 3일째 마지막 날(2009년 6월 8일)

- 재판장이 유나 리에게 최후 진술을 하라고 말함
- 유나 리는 자신에게 4살된 딸이 있는데 엄마(유나 리)를 필요로 하므로 불쌍히 생각해서 용서해 달라고 간청
- 판사들이 재판정에서 퇴정
- 로라 링이 재판정에 들어와서 유나 리 옆에 앉음
- 판사들이 입장(入廷)하여 판결문 낭독

(4) 재판기간

제1심 재판은 재판소가 사건기록을 접수한 날부터 25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예외적으로 노동단련형을 부과할 수 있는 피소자에 대한 재판 심리는 1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특별히 복잡한 범죄사건은 재판심리 기간을 5일간 연장할 수 있다(제287조). 이처럼 재판기간이 단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법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피소자와 검사의 공방은 기대할 수 없으며, 결국 재판소의 실제 역할은 검사의 기소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에 따른 양형을 결정하는 형식적 절차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¹²²

¹²² 한명섭, “북한 형사법률의 적용실태,” p. 189.

나. 제2심 및 상소

북한 형사소송법은 제1심 재판소의 판결, 판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소자, 변호인, 손해보상청구자는 상급재판소에 상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상소권을 보장하고 있다. 검사의 불복신청은 항의라고 하여 피소자, 변호인, 손해보상청구자의 상소와 구별하고 있다(제357조). 최고 재판소 제1심 재판에서 채택한 판결, 판정과 제2심 재판, 비상상소심, 재심에서 채택한 판정은 상소나 항의를 할 수 없다(제359조). 상소를 하려는 자는 판결서, 판정서 등본을 수령한 날부터 10일 이내로 상소장을 제1심 재판소에 제출해야 한다(제361조). 상소, 항의기간이 지나게 되면 판결, 판정은 확정된다(제363조). 제2심 재판의 임무는 사건기록과 상소, 항의 자료에 근거하여 제1심 재판소의 판결, 판정이 법의 요구에 맞으며 과학적인 증거에 기초하였는가를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다(제364조). 제2심 재판은 사실심리가 아니다. 따라서 피소자, 증인, 감정인 등을 재판에 참가시키거나 재판일꾼들이 나가서 그들을 만나는 등의 활동은 할 필요가 없으며, 사건기록과 상소·항의 자료에 근거하여 재판을 진행한다.¹²³ 제2심 재판심리에서는 상소장 또는 항의서에 지적된 부분의 내용심의를 기본으로 하면서 예심 또는 제1심 재판에서 북한 형사소송법의 요구와 절차를 심각하게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준 것이 없는가를 검토할 뿐이다(제370조).

제2심 재판소는 상소나 항의가 제기된 제1심 재판소의 판결이나 판정이 김일성 교시와 김정일 말씀, 노동당의 방침이나 북한 법령의 요구에 맞는가와 과학적 증명에 기초하고 있는가를 검토하고 해당 판정을

¹²³- 이처럼 기록에 기초하여 심리하는 것을 기록심리라고 한다. 필자미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해석』, p. 274; 법원행정처, 『북한의 형사법』, p. 493에서 재인용.

내린다고 한다. 즉, 북한에서 제1심 판결 또는 판정을 재검토함에 있어서 법령위반이나 사실 오인에 앞서 김일성의 교시와 노동당 정책 등이 우선적으로 고려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에서는 상소제도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고 한다. 첫째, 상소제도는 국가와 사회의 주인인 근로자들의 진정한 권리와 이익을 철저히 보호하는 법적 수단이 되며 둘째, 검사로 하여금 형사재판을 감시하는 기능을 원만히 실현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방도가 되고 셋째, 하급재판소에 대한 상급재판소의 중앙집권적 지도와 통제를 실현함으로써 재판소의 프롤레타리아 독재기능을 더욱 높인다고 한다. 이와 같이 북한에서는 상소제도의 목적이 원판결의 잘못을 시정하여 불이익을 받는 재판관계자를 구제하고 법령해석의 통일을 기하는 데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김일성 교시와 김정일 말씀, 노동당 정책을 얼마나 충실히 반영하였는가를 감독하는데 있다.¹²⁴

상소기간은 대체로 준수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북한이탈주민들을 상대로 상소기간이 준수되는지의 여부를 질문한 결과, 모두 24명이 응답하였는데 2명을 제외한 22명이 상소기간이 준수된다고 답변하였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상소에 대해 알려준다고 한다. 북한이탈주민 ○○○은 본인이 재판을 받고 노동단련대 1년을 선고받았는데 예심기간을 빼고 형기를 산정하였으며, 10일간의 상소기간을 주었다고 증언하였다. 더러 상소가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북한이탈주민 ○○○은 1994년에 ○○○이 재판을 받았는데 상소를 하여 교화 3년 6개월에서 2년형으로 감형되었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다고 증언하였다.¹²⁵ 그러나 이런 경우는 예외적인 경우에 속한다. 북

¹²⁴- 법무부, 『북한법의 체계적 고찰(Ⅱ)』 (과천: 법무부, 1993), pp. 734~735.

¹²⁵-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 2011』, pp. 153~154.

한이탈주민 ○○○은 상소나 신소를 하는 경우 추가형량이 더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다고 증언하였다.¹²⁶ 북한이탈주민 ○○○도 2009년 7월 양강도 재판소에서 인신매매 혐의로 기소된 이웃의 재판을 직접 목격하였는데 상소를 하면 형을 더 많이 준다고 증언하였다.¹²⁷ 북한이탈주민 ○○○은 2007년 5월 자신의 딸이 고철을 밀수한 혐의로 양강도 혜산시 재판소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상소를 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증언하였다.¹²⁸ 북한이탈주민 ○○○은 상소하면 형량이 올라가기 때문에 상소하는 사람이 없다고 증언하였다.¹²⁹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을 상대로 실시한 면접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면접조사에 따르면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한 경우는 전체 응답자 17명 중 단 2명에 불과하였고 절대다수인 15명은 상소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상소 결과 제1심보다 유리한 판결을 받았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 8명 중 7명이 아니라고 답하였고, 단 1명만이 제1심에서 노동교화형 8년을 선고받고 상소하여 3년으로 줄었는데 이는 상소 직후 재판소 비서를 찾아가 5만원이라는 큰 돈을 주었기 때문이라고 한다.¹³⁰

다. 현지공개재판

북한 형사소송법 제286조는 “재판소는 균중을 각성시키고 범죄를 미리 막기 위하여 현지에서 재판심리를 조직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 기

¹²⁶- 위의 책, p. 155.

¹²⁷- 북한이탈주민 ○○○ 증언, 2011년 6월 28일.

¹²⁸- 북한이탈주민 ○○○ 증언, 2011년 4월 5일.

¹²⁹- 북한이탈주민 ○○○ 증언, 2010년 11월 2일.

¹³⁰- 한명섭, “북한 형사법률의 적용실태,” p. 191.

업소, 단체의 대표자가 범죄자의 행위를 폭로규탄하게 할 수 있다.”고 하여 현지공개재판(소위 인민재판)을 명문화하고 있다. 이 규정에서 알 수 있듯이 현지공개재판의 목적은 범죄자의 행위를 공개적으로 폭로, 규탄함으로써 일반주민들에게 공포심을 조장하는 데 있다. 이는 아래의 김정일 말씀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현지공개재판은 하나를 쳐서 수백수천의 군중을 교양하고 각 성시키는 좋은 준법교양형식의 하나입니다. 현지공개재판을 잘 하면 재판에 참가한 많은 사람들에게 심각한 교훈을 줄 수 있습니다. 사법검찰기관들에서는 현지공개재판을 교양적의의가 있게 잘 조직진행함으로써 사람들이 법규범과 규정들을 자각적으로 지키며 위법현상들과의 투쟁에 적극 참가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까.”¹³¹

현지공개재판은 중국으로의 도강이나 탈북시도, 절도 등 주로 경제범에게 실시하고, 인신매매나 살인, 강도 등의 경우에도 실시된다. 그러나 정치범의 경우에는 현지공개재판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지공개재판은 일반주민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므로 학교운동장, 장마당, 마을회관 근처, 역전 광장, 강변, 영화관, 공설운동장, 농민시장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장소에서 개최된다.¹³²

현지공개재판과 관련하여 몇 가지 법적인 문제가 제기된다. 첫째, 북한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재판소는 현지에서 재판심리를 조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현지공개재판의 경우 이 규정대로 재판조직이 갖추어지는가, 다시 말하면 판사, 검사, 변호사, 인민참심원이 참

¹³¹ 김정일, “사법검찰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 『김정일선집 7』 (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1996), p. 316.

¹³² 한명섭, “북한 형사법률의 적용실태,” p. 193.

가하는가의 여부이다. 2006년 4월 법원행정처가 실시한 북한이탈주민 면접조사에 따르면, 현지공개재판은 판사와 검사, 인민참심원도 참가하고 재판의 형식도 갖춘다고 한다. 대상 범죄는 일정하지 않으며, 특정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킬 필요가 있거나 사회적인 교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한다.¹³³ 그러나 판사와 검사, 인민참심원의 참가 여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북한주민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둘째, 공개재판 이전에 재판소에서 형이 결정되고 공개재판에서는 단지 판결문을 낭독한 후 형을 집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개재판을 통해 형이 확정되는 것인지의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 선행 연구에서도 북한이탈주민은 상반된 증언을 하고 있다. 현장에서 죄목을 낭독하고 사형을 언도한다는 증언이 있었는데 현장에서 인민보안부 책임자가 판결문을 낭독하는데 판결문 자체는 중앙재판소(현 최고재판소) 명의로 되어 있었다는 증언도 있었다.¹³⁴ 또한, 북한이탈주민 ○○○은 2008년 6월 12일 양강도 혜산시에서 경기장에 주민들을 불러모아 놓고 12명에 대한 공개재판을 실시하였는데 마약 밀수, 유색금속(연, 아연, 동 등) 밀수 혐의로 12명 중 3명은 무기징역형, 4명은 10년 이상의 교화형을 받았다고 증언하였다.¹³⁵ 또한 2011년 2월 탈북한 북한이탈주민 ○○○은 2007년에 자신에게 쇠못치로 피해를 입힌 가해자를 상대로 재판이 있었는데 오전에는 회령시 재판소에서 재판을 하고 오후에는 시 단련대에서 재판을 하였다고 증언하였다. 그는 회령시 재판소에서 판결을 하였느냐는 질문에 오후에 열렸던 단련대에서의 공개재판에서 판결

¹³³- 법원행정처, 『북한의 형사법』, p. 30.

¹³⁴- 김수암, 『북한의 형사법제상 형사처리절차와 적용 실태』, p. 120.

¹³⁵-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 2011』, p. 143.

I
II
III
IV
V
VI

이 있었다고 하였다.¹³⁶ 그러나 북한이탈주민 ○○○은 2007년 3월 말 경 무산군 광산회관에서 공개재판이 있었는데 무산군 재판소 소장, 검찰소 소장, 인민위원장(또는 인민부위원장), 보안소 정치부장이 나왔다고 증언하였다. 그는 “아무개는 사형에 처한다!”, “나머지 누구누구는 15년 징역, 누구는 10년, 누구는 5년” 이런 식으로 재판을 하였는데 판결은 재판소 소장이 낭독한 것 같다고 증언하였다.¹³⁷ 2011년 3월 탈북한 북한이탈주민 ○○○은 동생 ○○○이 녹화물 시청으로 공개재판을 받았는데 재판소에서 형을 확정하고 공개재판에서는 선포만 하였다고 증언하였다.¹³⁸ 북한이탈주민들을 상대로 공개재판 이전에 형이 결정되는지 아니면 공개재판 이후에 형이 결정되는지를 물었다. 59명이 응답하였는데 공개재판 이전에 형이 결정된다는 답변이 35명으로 60%를 차지하였지만 공개재판 이후에 형이 결정된다는 답변도 24명으로 40%에 달하였다.

셋째, 현지공개재판이 공개처형의 법적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는 입장이 있다.¹³⁹ 그러나 범죄자의 행위를 폭로, 규탄하게 하는 현지 공개재판을 공개처형의 명백한 법적 근거조항으로 보기는 어렵다.¹⁴⁰ 왜냐하면 현지공개재판이 모두 공개처형(사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북한이탈주민 ○○○이 2008년 6월 12일 양강도 혜산시에서 있었던 현지공개재판에서 마약 밀수, 유색 금속 밀수 혐의로 12명 중 3명은 무기징역형, 4명은 10년 이상의 교화

136- 북한이탈주민 ○○○ 증언, 2011년 6월 14일.

137-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 2011』, p. 143.

138- 북한이탈주민 ○○○ 증언, 2011년 6월 7일.

139- 최창동, “북한의 2004년 형법개정 및 인권상황의 법적문제,” 『정책연구』, 통권 제155호 (2007), p. 172.

140- 이덕인, “북한의 사형제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 『동아법학』, 제48호 (2010), p. 272.

형을 받았다고 증언한 것을 단적인 예로 들 수 있다.¹⁴¹ 북한이탈주민 ○○○도 공개재판에서 증범을 교화 보낸 적이 있으며, 노동단련형 같은 경우는 없다고 증언하였다.¹⁴² 대한변호사협회가 실시한 면접조사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공개재판의 판결 선고 내용에 대해서는 사형과 함께 노동교화형이 선고된다는 것이다.¹⁴³

넷째, 현지공개재판 판결은 상소가 불가능하다는 증언이 있다. 북한이탈주민 ○○○은 공개재판에서 증범의 경우에는 판사가 나와서 “몇 조 몇 항에 따라서 총살에 처한다. 상기 판결에는 상소할 수 없다.”고 하였다고 한다.¹⁴⁴ 다른 북한이탈주민도 현지공개재판의 경우에는 상소가 불가능하다고 한다. 왜냐하면 현지공개재판을 한다는 자체가 이미 상당한 증거가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¹⁴⁵ 그러나 모든 공개재판의 경우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특정 범죄의 경우에 그런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라. 변호권

(1) 변호 받을 권리 인지 여부

북한 헌법은 피소자의 변호권을 보장하고 있다(제164조). 북한 형사소송법도 형사사건의 취급 처리에서 피심자, 피소자의 변호권을 보장하며, 변호인은 피심자, 피소자의 권리가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

141-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 2011』, p. 143.

142- 북한이탈주민 ○○○ 증언, 2011년 6월 7일.

143- 한명섭, “북한 형사법률의 적용실태,” p. 193.

144- 북한이탈주민 ○○○ 증언, 2011년 6월 7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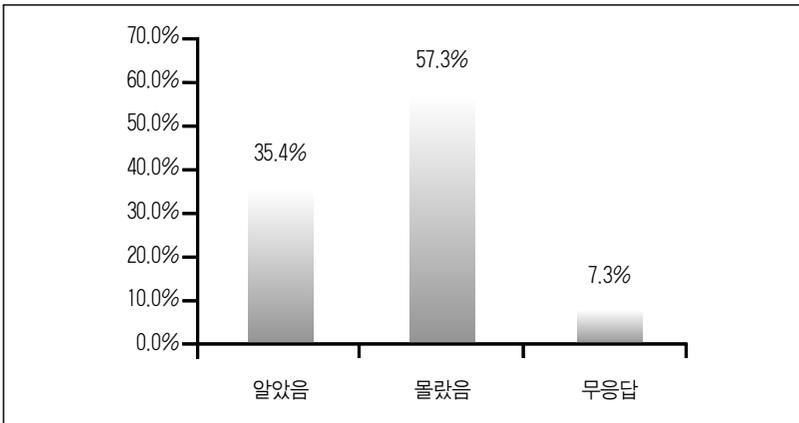
145- 북한이탈주민 출신의 (사)북한민주화위원회 인권조사실장 송현욱 자문결과 (자문일자: 2011.11.8).

I
II
III
IV
V
VI

하고 있다(제106조, 제107조). 피심자와 피소자는 변호인을 선정하여 방조받을 권리가 있다(제108조). 아동권리보장법도 14세 이상 아동은 변호인의 방조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50조).

재판소는 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피심자를 기소하였을 경우 해당 변호사회에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제111조). 2010년 3월부터 10월까지 입국한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재판받을 때 변호인을 선정하여 변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았던 비율은 35.4%, 몰랐던 비율은 57.3%, 무응답은 7.3%로 나타났다.

● 그림 III-3 북한주민들의 변호 받을 권리 인지 정도¹⁴⁶



(2) 변호인의 역할

변호인을 선임할 경우 변호인으로부터 실질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 점에서 북한 변호사법¹⁴⁷은 변호사의 역할을 높여 기관,

¹⁴⁶ 이금순·전현준, 『북한주민 인권의식 실태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2010), p. 79.

기업소, 단체 및 공민의 ‘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 가운데 하나로 천명하고 있다(제1조). 또한 변호사는 변호활동과 법률상 방조를 통하여 ‘인권을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조). 그리고 변호사법은 제9조에서 변호사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데 특히 피심자, 피소자의 변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필요한 의견을 검사 또는 재판소에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9조제5호). 변호사는 사건의 진상을 정확히 밝히고 옳게 분석 평가하여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하며 ‘피심자, 피소자의 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장’해야 한다는 규정도 두고 있다(제12조). 일부 북한이탈주민들은 변호인이 자신에게 유리한 발언을 하였다는 증언을 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은 2005년 본인이 증산재판소에서 재판을 받을 때 변호사가 본인의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형기를 조금이라도 덜어 주기 위한 발언을 했다고 증언하였다. “전처가 여기서 생활할 때에 이렇게, 이렇게 생활한 사람인데 좀 감소를 시켜줘야 하지 않겠나?”고 변호해 주었다고 한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은 2009년 8월 도강을 죄목으로 혜산시 인민재판소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변호사가 피소자는 학생(당시 17세)이라는 것을 고려해 달라고 변호하였다고 한다.¹⁴⁸

반면 북한 변호사법은 법의 정확한 집행을 보장하는 것도 법의 목적 가운데 하나로 내세우고 있다(제1조). 연장선상에서 변호사는 국가의 법률제도를 옹호하고(제2조), 국가의 법과 규정을 정확히 집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1조). 북한학자는 법의 정확한 집행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¹⁴⁷- 1993년 12월 23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43호로 채택.

¹⁴⁸-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 2011』, pp. 160~161.

I
II
III
IV
V
VI

“공화국형사재판에서 변호인이 국가의 법에 따라 법의 정확한 집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활동한다는 것은 사건해결과 관련하여 진행되는 모든 변호활동이 단순히 피소자의 의사에 따라 피소자의 권리와 리익을 실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국가의 의사인 법을 기준으로 하여 재판소로 하여금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증하고 당정책과 법의 요구에 맞게 옳은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 주고 협력하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된다는 것을 의미한다.”¹⁴⁹

북한학자는 북한의 형사재판에서 변호인이 피소자의 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기도 하지만 변호인 활동의 본질은 재판기관과 형사재판사업에 협력하고 노동당의 사법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활동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공화국형사재판에서 변호인의 활동은 본질에 있어서 재판기관과의 형사재판사업을 방조하고 협력하며 우리 당의 사법정책을 옹호관철하기 위한 활동이다.

공화국형사재판에서 변호인의 활동은 무엇보다 먼저 재판기관의 형사재판사업을 방조하고 협력하는 활동이다. … (중략)

물론 공화국형사재판에서 변호인의 활동도 형사소추에 대응하여 피소자의 법적 권리와 리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진행된다. 그러나 공화국형사재판에서 변호인의 활동은 단순히 피소자를 변호하거나 옹호하기 위한 활동이 아니라 재판소로 하여금 사건을 정확히 해결하도록 방조하고 협력하는 활동으로 된다. … (중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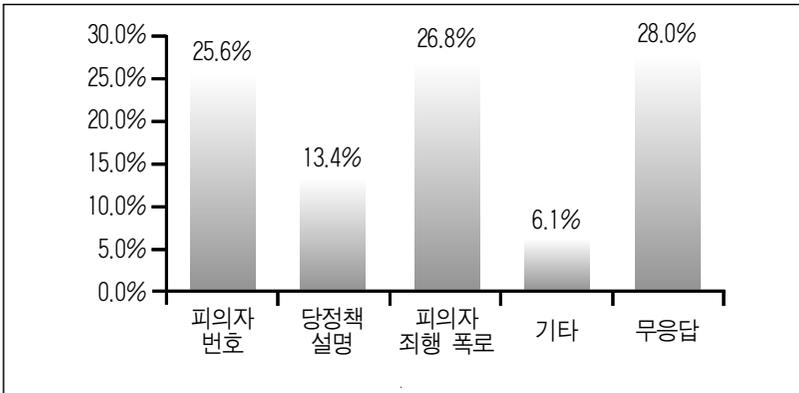
결국 변호인의 활동은 단순히 피소자의 의사에 따라 피소자의 권리와 리익을 옹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제기된 모든 사건이 국가의 의사인 법에 기초하여 당정책과 법의 요구에 맞게 처리되도록 재판소의 활동을 도와주는 것으로 된다. … (중략)

공화국형사재판에서 변호인의 활동은 다음으로 우리 당의 사법정책을 옹호관철하는 행동이다.”¹⁵⁰

¹⁴⁹- 유영태, “공화국형사재판에서 노는 변호인활동의 본질,” 『정치법률연구』, 2006년 제1호 (2006), p. 29.

2010년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변호인의 역할을 ‘피의자 변호’로 생각하는 비율이 25.6%, ‘당 정책을 설명하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13.4%, ‘피의자 죄행을 폭로하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26.8%, ‘기타’ 6.1%, ‘무응답’ 28.0%로 조사되었다. 변호인의 역할이 피고인의 입장을 대변하여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죄행을 폭로하거나 당 정책을 설명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40.2%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위 북한학자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 그림 III-4 북한 내 변호인의 역할¹⁵¹



(3) 변호인의 독자성

북한 변호사법은 변호사 활동의 독자성을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6조). 반면 변호사는 해당 변호사위원회의 지도하에 활동한다는 상충되는 규정도 두고 있다(제8조). 북한은 변호사 단체로서 조선변호사

¹⁵⁰ 위의 글, pp. 28~29.

¹⁵¹ 이금순·전현준, 『북한주민 인권의식 실태연구』, p. 80.

회를 두고 있다(제28조). 조선변호사회는 상무기관으로 중앙과 도(직할시), 해당 부문에 위원회를 두고 있다(제29조). 북한 변호사들은 노동당의 사법정책과 법의 정확한 집행을 보장하는 법일군이며, 조선변호사회에 소속되어 노동당과 국가의 정책에 따라 사업한다. 조선변호사회라는 것도 김일성과 김정일의 영도에 따라 조직되었고 김일성의 사상을 지도적 지침으로 하는 사법기관의 한 부분이다. 조선변호사회에 소속된 변호사들은 김일성 사상과 노동당 사법정책의 집행자에 불과하다.¹⁵²

북한주민들은 변호사의 직책이 존재하는 것은 알고 있으나 그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고, 알고 있더라도 피의자와 그 가족들은 인권보호를 위한 변호사의 긍정적인 역할을 기대하지 않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은 재판을 하게 되면 대개 변호사들이 참석하는 것으로 증언하고 있다. 그러나 재판과정에 변호사가 배석하는 경우에도 변호사들이 피소자를 위해 조력을 제공하거나 실질적인 변호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 예로 북한이탈주민 ○○○은 녹화물 유통 때문에 2007년 함경북도 온성군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변호사가 변론을 하지 않았다고 증언하였다. 북한이탈주민 ○○○은 2006년 12월 ○○○이라는 사람이 재판을 받았는데, 변호사는 한마디도 없었으며, 당 정책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변호가 불필요하다고 증언하였다.¹⁵³ 또한 북한이탈주민 ○○○은 “북한의 변호사는 죄를 지은 사람들을 위한 변호사가 아니다. 북한 변호사들은 재판관들이 시키는 대로 말하고 그 사람들의 비위에 맞춰서 말하지 죄수를 위해 말하는 것은 한마디도 없다. 또 그럴 수도 없다. 재판받는 것을 봤어도 변호사는 필요없는 직업이다.”라고 증언하였다.¹⁵⁴

¹⁵²- 유영태, “공화국형사재판에서 노는 변호인활동의 본질,” p. 29.

¹⁵³-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 2011』, pp. 159~160.

(4) 변호인의 방조 받을 권리 포기

피심자와 피소자는 변호인의 방조를 받을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09조). 이 경우 변호인의 참가 없이도 재판심리를 할 수 있다(제276조). 대표적인 사례가 유나 리 재판이다. 재판에 앞서 북한 관리는 유나 리에게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그녀는 변호인 선임을 포기하였다. 그녀는 북한측 변호인이 자신의 편에 서서 변호해줄 리가 만무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변호인 선임을 포기하고 대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변호해달라고 기도하였다.¹⁵⁵

마. 재판감독절차

북한 형사소송법은 재판감독절차로 비상상소심제도와 재심제도를 두고 있다. 비상상소의 임무는 확정된 판결 또는 판정이 법의 요구에 어긋났을 경우 이를 바로잡는 것이다(제384조). 비상상소는 최고재판소 소장 또는 최고검찰소 소장이 최고재판소에 제기한다(제389조). 북한 학자는 북한 형사소송법상의 비상상소심의 목적과 관련하여 “확정된 판결, 판정에 있는 본질적인 범위반을 철저히 바로잡음으로써 재판사업에서 당의 사법정책을 정확히 관철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법집행에서의 통일성과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정하였다.”며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법의 해석과 적용에서 통일성과 유일성을 보장하는 것은 사건취급처리에서 노동당과 국가의 의도를 정확히 구현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¹⁵⁶ 비상상소심제도의 임무 내지 목적이 법집행의 통일성 및

¹⁵⁴- 북한이탈주민 ○○○ 증언, 2011년 6월 28일.

¹⁵⁵- Euna Lee, *The World is bigger now*, p. 187.

I
II
III
IV
V
VI

이를 통한 노동당 정책의 구현에 있다는 점은 비상상소심에 검사를 참가토록 하는 데서도 잘 나타난다. 즉, 비상상소사건은 최고재판소 판사 3명으로 구성된 재판소가 심리하는데 비상상소심에는 최고검찰소 검사가 참가한다(제385조, 제388조). 이와 같이 북한 형사소송법상의 비상상소심 제도는 법령 위반을 시정하여 개개의 소송절차에서 사회주의적 정의 및 합법성을 실현하고 사법의 통일성을 보장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그 결과가 피소자의 이익, 불이익 어디에도 귀착될 수 있다.¹⁵⁷

북한에서 재심이란 형사 및 민사사건에서 판결 또는 판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 새로운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 해당 판결 또는 판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심리하는 소송상의 제도를 말한다.¹⁵⁸ 형사소송법상 재심은 새로운 사실에 기초하여 확정된 판결 또는 판정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을 임무로 하고 있다(제403조). 재심제기 사유는 ① 판결, 판정의 기초로 하였던 증거가 거짓이라는 것이 알려진 경우, ② 판결, 판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실로서 재판할 당시에 알려지지 않았던 것이 새로 알려진 경우이다(제409조). 재심은 비상상소심과 달리 실제적 진실과 맞지 않게 사실을 잘못 인정한 부당한 판결을 바로 잡는 데 있으므로 무죄판결, 사건기각판정 등 피소자에게 유리한 재판도 당연히 재심의 대상에 포함된다.¹⁵⁹ 재심은 비상상소심과 달리 최고검찰소 소장만이 최고재판소에 제기할 수 있으며(제407조), 재심에는 최고검찰소 검사가 참가한다(제406조).

156- 신광일, “공화국비상상소심제도는 국가의 통일적인 법집행을 보장하는 위력한 수단,” 『정치법률연구』, 2006년 제1호 (2006), p. 30.

157- 이 점에서 법령의 해석·적용에 있어서의 통일성을 보장하면서도 피고인의 불이익을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는 우리의 비상상고제도와 구별된다. 김상균, “북한의 사법제도,” pp. 67~68.

158- 법원행정처, 『북한의 형사법』, p. 504.

159- 김상균, “북한의 사법제도,” p. 68.

대한변호사협회가 실시한 면접조사결과에서는 비상상소나 재심절차를 이용한 경우를 보거나 들은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198명 중 185명(93.4%)이 모른다고 하였고, 단지 13명(6.6%)만이 알고 있다고 대답하였으며, 13명 중 8명(61.5%)은 비상상소나 재심을 통해 잘못된 판결이 바로 잡혔다고 대답하였다.¹⁶⁰

3. 판결·판정 집행의 특징과 실태

가. 공개처형

널리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북한 내에서는 체제에 대한 저항행위, 외부정보 유통과 관련된 행위 등의 반체제 행위와 관련된 공개처형뿐만 아니라 정보통신선·구리 절취, 개인착복행위, 마약 밀수·밀매행위와 같은 경제사범과 인신매매, 살인, 도박, 강간 등의 사회일탈행위에 대해서도 공개처형이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다.¹⁶¹ 법치의 관점에서 북한은 형사법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에 대해서만 그리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공개처형을 집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의적으로 집행하고 있는지의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북한에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형법과 형법부칙에 규정되어 있다. 반국가 및 반민족 범죄에 해당하는 범죄가 국가전복음모죄를 비롯하여 5가지, 고의적 중살인죄를 비롯한 일반범죄가 17가지이다. 이를 정리하면 <표 III-3>과 같다.

¹⁶⁰- 한명섭, “북한 형사법률의 적용실태,” p. 192.

¹⁶¹- 북한인권기록보존소, 『2011 북한인권백서』 (서울: 북한인권정보센터, 2011), pp. 115~162;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 2011』, pp. 62~77; 이덕인, “북한의 사형제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 pp. 275~277.

I
II
III
IV
V
VI

표 III-3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 및 구성요건

범죄의 성격	범죄	구성요건	해당 조문
정치 범죄 (반국가 및 반민족 범죄)	국가전복음모죄	반국가목적으로 정변, 폭동, 시위, 습격에 참가하였거나 음모에 가담한 행위로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	형법 제59조
	테러죄	반국가목적으로 간부들과 인민들을 살인·납치하였거나 그들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로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	형법 제60조
	조국반역죄	공민이 조국을 배반하고 다른 나라로 도망쳤거나 투항·변절하였거나 비밀을 넘겨준 행위로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	형법 제62조
	파괴암해죄	반국가목적의 파괴·암해 행위로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	형법 제64조
	민족반역죄	조선민족으로서 제국주의의 지배 밑에서 북한 인민의 민족해방운동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탄압하였거나 제국주의자들에게 조선민족의 이익을 팔아먹은 행위로 정상이 무거운 경우	형법 제67조
일반범죄	고의적 중살인죄	탐욕, 질투 그밖의 비열한 동기에서 사람을 고의적으로 죽인 행위로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	형법 제278조
	전투기술기재, 군사시설 고의적 파손죄	전투기술기재, 군사시설을 고의적으로 파손한 행위의 정상이 극히 무거운 경우	형법부칙 제1조
	국가재산 약취죄	국가재산 약취행위의 정상이 극히 무거운 경우	형법부칙 제2조
	국가재산 강도죄	국가재산강도행위의 정상이 극히 무거운 경우	형법부칙 제3조
	국가재산 고의적 파손죄	국가재산 고의적 파손행위의 정상이 극히 무거운 경우	형법부칙 제4조
	화폐위조죄	화폐위조 행위의 정상이 극히 무거운 경우	형법부칙 제5조
	귀금속·유색금속 밀수·밀매죄	귀금속·유색금속의 밀수·밀매행위의 정상이 극히 무거운 경우	형법부칙 제6조

범죄의 성격	범죄	구성요건	해당 조문
일반범죄	국가자원밀수죄	국가의 지하자원, 산림자원, 수산자원 같은 나라의 자원을 비법적으로 다른 나라에 팔아먹은 행위로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	형법부칙 제8조
	마약 밀수·밀매죄	마약 밀수·밀매 행위의 정상이 극히 무거운 경우	형법부칙 제11조
	교화인 도주죄	중형을 받고 형벌집행 중에 있는 자가 도주한 경우	형법부칙 제14조
	불량자 행위죄	불량자행위의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	형법부칙 제17조
	비법적인 영업죄	식당이나 여관을 운영하면서 성(性)봉사를 조직한 경우	형법부칙 제18조
	고의적 중상해죄	고의적 중상해죄의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	형법부칙 제19조
	유괴죄	사람을 유괴한 행위의 정상이 극히 무거운 경우	형법부칙 제20조
	강간죄	강간행위의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	형법부칙 제21조
	개인재산 강도죄	개인재산 강도행위의 정상이 극히 무거운 경우	형법부칙 제22조
	예외적으로 사형을 적용할 수 있는 범죄	한 범죄가 범한 여러 범죄행위의 정상이 특히 무겁거나 개준성이 전혀 없는 경우	형법부칙 제23조

사형의 절차는 형사소송법과 판결판정집행법에 규정되어 있다. 판결은 형이 확정된 다음에 집행하는데 사형의 집행을 위해서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형사소송법 제419조).¹⁶² 재판

¹⁶² 철도재판소가 내린 사형 판결의 집행을 위해서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나 군사재판소가 내린 사형판결은 별도로 정한 절차에 따라 집행된다고 한다. 필자미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해석』(2004), p. 306; 법원행정



소는 재판소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판결서 등본, 확정통지서 등의 집행지휘문건 또는 집행문을 발급하고(판결판정집행법 제8조), 재판장은 사형판결이 확정되면 집행문건을 해당 형벌집행기관에 보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420조). 사형판결 집행은 사형집행지휘문건을 받은 기관이 하는데(판결판정집행법 제24조), 사형집행지휘문건은 해당 재판소가 발급한다(형사소송법 제422조제2항). 사형판결의 집행은 사형집행지휘문건과 판결서등본을 받은 형벌집행기관이 총살 등의 방법으로 한다(형사소송법 제422조, 판결판정집행법 제32조). 이 경우 검사가 참가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421조). 판결·판정 집행은 집행지휘문건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로 마쳐야 한다(판결판정집행법 제10조). 그러나 사형판결에 대한 집행은 인민보안기관이 5일 이내로 하고, 임신한 여성은 산후 7개월 이후 집행한다고 한다.¹⁶³ 형벌집행기관은 사형을 집행하고 그 결과를 3일 이내로 해당 재판소에 통보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423조).

아래 문건들은 공개처형을 하는 경우에도 북한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를 대상으로 사형 판결을 하고, 사형이 확정되면 일정한 절차에 따라 사형이 집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구체적인 사례로 평양시 재판소는 리성철을 형법부칙 제4조의 국가재산 고의적 파손죄를 적용하여 사형을 판결하였다.¹⁶⁴ 판결 이유를 보면 리성철은 2006년부터

처, 『북한의 형사법』, p. 508에서 재인용.

163. 필자미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해석』, p. 309; 법원행정처, 『북한의 형사법』, p. 509에서 재인용.

164. 참고로 형법부칙 제4조는 국가재산 고의적 파손행위의 정상이 ‘극히’ 무거운 경우 사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명확한 기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장부문 일꾼들을 위한 참고서는 수감만원에 달하는 재산을 불로 태워버리고 노동자 1명에게 화상을 입힌 행위에 대해 형법부칙 제4조를 적용하지 않고 형법 제97조를 적용하고 있다. 동 참고서에 따르면 국가재산 고의적 파손죄란 “탐욕, 질투,

2010년까지 3명의 공모자와 함께 8차에 걸쳐 평양시 형제산구역을 비롯한 주변구역들에서 부림소¹⁶⁵ 8마리를 훔쳐 밀도살하는 극히 무거운 형태의 국가재산파손범죄와 7차에 걸쳐 부림소 7마리와 후보소¹⁶⁶ 1마리를 훔쳐 밀매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2010년 9월 최고재판소는 평양시 재판소가 사형 판결하여 확정된 피소자 리성철의 공개사형 집행을 승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그림 III-5>). 또한 평안북도 재판소는 형법부칙 제4조를 적용하여 김춘남에게 사형을 판결하였다. 김춘남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12차에 걸쳐 단독으로 또는 공모하여 평안북도 동림군 일대에서 고압 동력선을 절단, 파괴하고 절도한 동선을 밀매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어 사형이 확정되었다. 최고재판소는 평안북도 재판소가 사형 판결하여 확정된 피소자 김춘남에 대한 공개사형 집행의 승인을 요청하였다(<그림 III-6>).

그밖의 비렬한 동기에서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대산을 못쓰게 만드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한다. 리윤기 외 13인, 『법투쟁부문 일군들을 위한 참고서』, pp. 164~165.

¹⁶⁵- 짐을 운반하거나 받을 갈기 위하여 기르는 소를 말한다.

¹⁶⁶- 고기나 젓을 얻거나 종자로 쓰기 위하여 따로 기르는 소를 말한다.

그림 III-5 최고재판소의 사형집행 승인 요청문건 (1)

□ 이성철(40세, 국가재산 고의적 파손죄)

- 피소자 이성철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사건명: 국가재산 고의적 파손죄(형법부칙 제4조)

피소자: 이성철 남자

사는곳: 평양시 형제산구역

직장직위: 형제산구역 로동자

출신성분: 농장원

정당관계: 무소속

- 범죄내용

피소자 이성철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공동피소자 김정길(남자 44살, 대동군 농장원)의 2명과 공모하여 8차에 걸쳐 평양시 형제산구역을 비롯한 주변구역들에서 부림소 8마리(40만 1410원분)를 훔쳐 밀도살하는 극히 무거운 형태의 국가재산 파손범죄와 공모하여 7차에 걸쳐 부림소 6마리와 후보소 1마리(34만 1900원분)를 훔쳐 밀매하는 범죄, 개인의 상적행위 범죄를 감행하였습니다.

※ 피소자 이성철의 추김을 받고 부산물이라도 얻어먹을 목적으로 부림소 8마리를 밀도살하는데 공모한 공동피소자 김정길은 형법 제97조3항(국가재산고의적파손죄)에 의한 무기로동교화형,

부림소 3마리를 훔쳐 피소자에게 넘겨준 공동피소자 권영민은 형법 제89조3항(국가재산훔친죄)에 의한 로동교화형 9년, 부림소 2마리와 후보소 2마리를 훔쳐 피소자에게 넘겨준 김영식은 형법 제89조2항(국가재산훔친죄)에 의한 로동교화형 6년에 처하였습니다.

- 최고재판소 의견

평양시 재판소가 사형 판결하여 확정된 피소자 이성철에 대한 공개사형 집행을 승인하여 줄 것을 제기합니다.

● 그림 III-6 최고재판소의 사형집행 승인 요청문건 (2)

□ 김춘남(36세, 국가재산 고의적 파손죄)

- 피소자 김춘남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 사건명: 국가재산 고의적 파손죄(형법부칙 제4조)
 - 피소자: 김춘남 남자
 - 사는곳: 평안북도 염주군
 - 직장직위: 염주군 로동자
 - 출신성분: 군인
 - 정당관계: 로동당
- 범죄내용

피소자 김춘남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기간 12차에 걸쳐 단독 또는 공모하여 동림군 일대에서 3300V 고압 동력선 1100m(4mm와 5mm 동선, 7만 3300원분)를 절단, 파괴하고 훔친 동선 191.5kg 100만 4100원에 밀매하여 사생활에 소비하는 범죄를 감행하였습니다.

※ 피소자와 공모하여 4차에 걸쳐 동력선 80kg(5mm동선, 3만 5300원분)을 훔치거나 밀매한 공동피소자 최영숙은 형법 제 89조2항(국가재산훔친죄)을 주범조로 로동교화형 3년,
 피소자가 동력선을 절단하여 가지고 온다는 것을 알면서도 3차에 걸쳐 동선 71kg(1만 1500원분)을 사서 밀매한 공동피소자 리기웅은 형법 제115조1항(유색금속 밀수밀매죄)에 의하여 로동교화형 2년,
 4차에 걸쳐 피소자가 가져온 동선 73.5kg(1만 1300원분)을 사서 밀매한 공동피소자 한성윤은 4촌 한성구(남자 24살, 조선인민군군인)가 특수병종이므로, 사건합의를 제기하였으나 내려오지 않아 사건을 분리하였습니다.
- 최고재판소 의견

평안북도 재판소가 사형 판결하여 확정된 피소자 김춘남에 대한 공개사형 집행을 승인하여 줄 것을 제기합니다.

위의 문건들은 북한이 공개처형을 함에 있어서 형사법 규정을 준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최초의 사례들로서 그 의의를 과소평가할 수 없다. 그러나 모든 공개처형이 위의 문건에 나타나 있는 절차대로 집행되고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위 문건들만 보아서는 2심에서 사형 판

I
II
III
IV
V
VI

결이 확정되어 최고재판소가 승인을 요청한 것인지, 아니면 1심에서 재판이 끝났는데 1심 재판소인 평양시 재판소와 평안북도 재판소가 최고재판소를 거쳐 사형 집행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였는지가 명확하지 않다. 또한 최고재판소가 승인을 요청한 기관도 명시되어 있지 않아 북한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 승인을 요청하였는지, 아니면 다른 기관에 승인을 요청하였는지의 여부도 확실치 않다. 아울러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교화소 내에서도 공개처형과 비밀처형이 자행되고 있고, 정치범 수용소 내에서도 약식 재판에 의한 처형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위부원에 의한 자의적인 비밀처형도 이루어지고 있다.¹⁶⁷ 통상 공개처형은 집행사실을 미리 공중에 고지한 후에 하게 되는데, 최근에 와서는 공개처형에 대한 국제사회의 여론이 비등해지고 이에 대한 사전통고문, 비디오테이프 등 증거가 제시되자 외부 세계로의 노출을 피하기 위하여 사전통보 없이 주민들이 모이는 장터와 같은 공개된 장소에서 불시에 집행하기도 한다.¹⁶⁸ 게다가 비공개처형은 외부에 알리지 않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실상을 파악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¹⁶⁹

나. 노동단련형과 노동단련 및 무보수노동

북한 형법은 2004년 개정되면서 형벌의 종류 가운데 하나로 노동단련형을 규정하고 있다. 비록 노동단련형이 2004년 형법에 처음 규정되기는 하였지만 그 이전 북한 형사법제에도 노동단련형에 관한 근거 규정은 찾을 수 있다. 검찰감시법은 “범죄자를 예심에 넘기거나 법을 어

167-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 2011』, pp. 77~78.

168- 이덕인, “북한의 사형제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 p. 275.

169- 북한인권기록보존소, 『2011 북한인권백서』, pp. 163~169.

긴 자를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 또는 동지심판회에 넘기거나 로동단련 또는 구금 처벌을 하려 할 경우” 검사는 범위반행위를 바로잡거나 법적책임을 추궁하기 위하여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검찰감시법 제40조제3호). 또한 판결판정집행법은 “로동교화형, 로동단련, 무보수 로동의 처벌을 받은 자가 중병에 걸려 있거나 산전 3개월부터 산후 7개월까지의 녀성일 경우” 재판소는 집행을 중지 또는 정지하는 판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8조제1호). 검찰감시법이 제정된 것은 1985년이고, 판결판정집행법이 제정된 것은 1997년이다.

북한 형법상의 노동단련형은 범죄자를 일정한 장소에 보내어 노동을 시키는 방법으로 집행하며(형법 제31조), 해당 권한이 있는 기관에 판정서등본과 확정통지서를 송부해야 한다(판결판정집행법 제43조). ‘일정한 장소’는 노력단련을 집행하기 위한 시·도 단위에 존재하던 노동교양소나 구역단위의 노력단련대 이외의 장소, 예를 들어 공장이나 농장, 광산 등에서도 노동을 시킬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¹⁷⁰ 노동단련형 집행기간에는 공민의 권리가 보장된다. 노동단련형 기간은 6개월부터 2년까지이다. 범죄를 병합하거나 형기를 합산하는 경우에도 노동단련형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범죄자가 구속되어 있는 기간 1일은 노동단련형 기간 2일로 계산된다(형법 제31조).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북한주민들은 강제노동을 노동단련대에서 받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회령시 피복공장 노동자로 일하다가 2010년 10월 탈북한 북한이탈주민 ○○○은 예전부터 북한에 강제노동대라는 것이 있었는데 강제노동대는 재판을 받지 않으며 최고 6개월까지라고 하였다. 반면 노동단련대는 재판을 받으며 기간은 6개월부터 2년까지라고 하였다. 그러나 강제노동대와 노동단련대에서

¹⁷⁰ 법원행정처, 『북한의 형사법』, p. 167.

I
II
III
IV
V
VI

하는 일은 건설일, 산에 가서 화목하기, 농사철에 농사일하기 등 비슷하다고 한다.¹⁷¹ 북한이탈주민 ○○○은 2008년에서 2009년경 각 도별로 인민보안부 소속의 단련대를 3개씩 만들었는데 신설 단련대는 재판으로 노동단련형을 받고 가는 곳으로 형기는 6개월 이상 2년 이하라고 하였다. 반면 기존의 시·군·구역 소속 단련대는 교양대로 명칭을 변경하였는데 형기는 6개월 이하라고 하였다.¹⁷²

노동단련대는 1990년 발표된 「간단한 경범죄에 대해 군에서 자체적으로 교양시킬 데 대하여」라는 김정일 방침에 따라 북한의 각 시·군마다 설치하여 운영되었는데, 초기에는 노동교양소, 집결소 등의 형태로 운영되다가 1995년 8월 기존의 노동교양소가 노동단련대로 개편되면서 전국적으로 등장하게 되었다고 한다. 노동단련대는 중범죄에 해당하지 않지만 당의 지시를 잘 따르지 않는 자들을 교양시키기 위해서 노동단련을 가하고 있다.¹⁷³ 노동단련대 소재지는 1990년경 김정일의 「간단한 경범죄에 대해 군에서 자체적으로 교양시킬 데 대하여」에 따라 각 도를 비롯하여 시·군에 노동단련대가 1개씩 운영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북한 전역에 200여개의 노동단련대가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북한인권정보센터에 따르면 인민보안부가 운영하는 시·군 소재 노동단련대가 49개, 보위사령부 소속의 군(軍) 노동단련대가 2개소로 조사되었으며 시·군별로 운영되는 것 외에도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소도 자체적으로 노동단련대를 운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¹⁷⁴

노동단련대에 수감되는 수감자들은 2가지 종류로 구분된다. 하나는

171- 북한이탈주민 ○○○ 증언, 2011년 1월 11일.

172- 북한이탈주민 ○○○ 증언, 2011년 10월 4일.

173- 북한인권기록보존소, 『북한 구금시설 운영체계와 인권실태』 (서울: 북한인권정보센터, 2011), p. 26.

174- 위의 책, pp. 48~52.

재판을 받지 않고 비사회주의적 행위를 하여 들어온 일반 수감자가 있고, 다른 하나는 재판에서 노동단련형을 받고 들어오는 수감자들이 있다. 노동단련형을 언도받고 수감된 수감자의 경우 일반 수감자와는 일도 따로 시킴으로써 재판을 받지 않고 수감된 자들과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 이는 2004년 개정 형법에 새롭게 추가된 노동단련형을 적용한 결과로 보인다. 또한 북한은 형법 규정대로 재판에서 노동단련형을 언도하고 있다. 이는 법치라는 관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는 요소다. 예를 들어 2004년 형법이 개정된 이듬해인 2005년 4월 2일 연길시에서 체포되어 무산군 인민보안서 구류장에 수감되어 있었던 북한이탈주민 ○○○은 같은 해 9월 8일 무산군 재판소에서 재판을 받고 노동단련형 1년을 선고받았다고 증언하였다.¹⁷⁵

노동단련형과 관련하여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첫째, 2004년 형법 개정 이후 7년 여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재판 없이 노동단련대에 수감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북한이 2004년 형법을 개정하면서 재판을 통해 노동단련형을 부과하도록 한 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재판소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문제가 있다. 북한이탈주민 ○○○에 의하면 노동단련대는 공민증을 취득하는 조건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재판이 없다. 인민보안부 개인기록에는 ‘어느 동 몇 반 누구 단련대 몇 개월 갔다 왔다’고 기록되지만 사회에 적용하는 문건에는 오르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은 2004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 말까지 회령시 노동단련대에 4개월간 있었는데 재판을 받지 않았다고 증언하였다.¹⁷⁶ 또한 북한이탈주민 ○○○은 손전화(핸드

175-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 2011』, pp. 94~95.

176- 위의 책, pp. 95~96.

I
II
III
IV
V
VI

폰)를 사용하다 적발되어 2008년 6월에 한달 동안 회령시 노동단련대에 수감되었다고 증언하였고, 북한이탈주민 ○○○은 2008년 7월 혜산시 보안서 구류장에 있었을 때 같이 수감되어 있던 북한주민 ○○○이 미신행위를 이유로 노동단련대에 수감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증언하였다.¹⁷⁷ 북한이탈주민 ○○○은 2007년 3월 강제송환된 후 신의주 보위부 구류장에 1개월간 구류되었다가 신의주 노동단련대에 1개월 7일간, 그리고 나서 온성군 보안서 구류장에서 5개월간 구류되어 예심을 받은 후에 공개재판을 받고서 교화 3년형을 받았다고 증언하였다.¹⁷⁸

둘째, 재판을 받지 않고 노동단련대에서 강제노동에 처해지는 경우 법적 근거가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무보수노동과 노동단련을 동일한 행정처벌로 간주할 수 있는가의 문제라고도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 행정처벌법은 행정처벌의 종류 가운데 하나로 무보수노동을 규정하고 있다(제14조). 무보수노동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무거운 위법행위를 한 자에게 적용하는 행정처벌로서 법 위반자를 어렵고 힘든 부문에서 노동을 시키는 방법으로 집행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부문에서 노동시킬 수 있다. 무보수노동 기간은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이다(제16조). 행정처벌로서의 무보수노동과 재판을 통해 선고하는 형법상의 노동단련형의 차이에 대해 북한이탈주민들은 행정처벌을 받은 사람은 감시를 안 받고 일을 하고 노동단련형은 감시 하에 노동을 하며, 평소 다니던 직장에서 무보수로 일하는 것이 무보수노동이고 노동단련형은 어느 지역에 가서 일을 하게 되며, 무보수노동은 집에서 출퇴근 하면서 일을 시키지만 노동단련형은 수감된 상태에서 일을 시킨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한다.¹⁷⁹ 기간에 있어

177- 위의 책, pp. 95~97.

178- 북한이탈주민 ○○○ 증언, 2011년 9월 6일.

6개월 이하인 점, 어렵고 힘든 일을 한다는 점, 무보수라는 점은 무보수 노동이나 노동단련이 동일하다. 그러나 무보수노동은 직장에서 하는 반면 노동단련은 주로 노동단련대에서 한다는 점, 무보수노동은 출퇴근이 가능한 반면 노동단련은 수감된 상태에서 받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나며 무엇보다 무보수노동은 직무수행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노동단련과 차이가 난다. 현재까지 나타난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을 보면 노동단련이 직무수행과 관련성이 있는지의 여부는 분명하지 않다. 이 부분은 향후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을 통해 또한 관련 문건이 공개 되는 경우 규명될 필요가 있다. 종합해보면 무보수노동과 노동단련이 동일한 행정처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즉, 노동단련은 행정처벌법에서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없으며, 현재로서는 검찰감시법과 판결판정집행법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을 뿐이다.

표 III-4 북한의 강제노동 처벌 비교

	무보수노동	노동단련	노동단련형
장소	평소 다니던 직장	주로 노동단련대 기타 공장, 농장, 광산 등	노동단련대
출퇴근	가능	불가능	불가능
기간	1개월 ~ 6개월	6개월 미만	6개월 ~ 2년
보수지급	무보수	무보수	무보수
직무 연관성	필요	명확하지 않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님(형법에 구성요건 규정)
처벌기관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 위원회, 내각, 중재기관(행정처벌법)	검사(검찰감시법)	재판소

179. 한명섭, “북한 형사법률의 적용실태,” pp. 198~199.

다. 뇌물과 재판

북한사회 전반에 걸쳐 뇌물수수 등 부패가 만연되어 있다.¹⁸⁰ 재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북한 형법은 관리일군이 뇌물을 수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하고 있고, 뇌물을 대량으로 또는 강요하여 받았거나 책임적 지위에 있는 자가 받은 경우에는 4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57조). 또한 재판일군이 고의적으로 부당한 판결, 판정을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하고,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 이상 8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하고 있다(제255조). 그리고 행정처벌법은 뇌물 수수행위 및 중개행위에 대해 경고, 엄중경고, 3개월 이하의 무보수노동, 노동교양을 시키며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의 무보수노동, 노동교양, 강직, 해임까지도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제138조). 그러나 뇌물 수수를 통한 경한 형벌의 부과나 형기 단축 등이 빈번하다. 북한이탈주민 ○○○은 빙두(일종의 마약) 밀거래 등 불법행위가 적발되어 교화형에 처할 범죄라도 뇌물을 바치면 교화소를 가지 않을 수 있으며, 사형의 경우에도 사형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증언하였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은 예심원과 판사에게 뇌물을 주어 노동교화형이나 노동단련형을 받지 않고 사회적 교양으로 처리되었다고 증언하였으며, 북한이탈주민 ○○○은 재판소장에게 30만원 정도의 뇌물을 줌으로써 경한형을 받았다고 증언하였다. 2009년 8월 도강을 죄목으로 혜산시 인민재판소에서 재판받은 북한이탈주민 ○○○도 예심원과 판사에게 뇌물을 주고 사회적 교양으로 처리받았다고 증언하였다.¹⁸¹

¹⁸⁰- 이와 관련하여 국제투명성기구 <www.transparency.org>는 매년 국가별 부패지수를 발표하고 있는데 북한의 경우에는 관련 자료가 없다(2011.11.3 최종 방문).

재판과 판결이 뇌물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에 반영되고 있다. 2011년 북한이탈주민 80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 소송을 당했을 때 판사, 검사, 보안원 중 누구 한 사람을 알더라도 재판을 받을 때 뇌물을 바치지 않으면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응답이 47.3%를 차지하였다.¹⁸² 또한 간부의 부정부패를 처벌하는 법을 제정할 경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응답이 12%, 실질적인 처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응답이 8%, 효과를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응답이 61%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간부들이 부정부패를 하더라도 처벌되지 않을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¹⁸³

¹⁸¹-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 2011』, pp. 113~114.

¹⁸²- 최봉대, 『북한이탈주민 법의식 사례 연구』, p. 30.

¹⁸³- 위의 책, pp. 41~42.

IV. 유사재판제도



정규재판조직에 의하지 않고 유사재판제도에 의해 재판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북한 사법제도의 커다란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 유사재판제도에는 국가안전보위부(이하 ‘보위부’)의 정치범 판결과 동지심판제도 및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가 있다.

1. 국가안전보위부의 정치범 판결

북한은 정치범죄와 일반범죄를 엄격하게 구분하여 처벌하는 정책을 견지하고 있다. 노동당과 인민정권에 반대하는 이른바 반혁명 적대분자들이 행하는 반국가범죄는 정치범죄로 간주하여 사건의 관할권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정치적 사건의 경우 보위부에서 수사와 예심을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형사소송법 제122조, 제124조).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사건은 도(직할시)재판소가 제1심으로 재판한다(형사소송법 제127조). 도(직할시) 관할에 속하는 사건이라도 최고재판소는 직접 재판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29조). 이상과 같이 정치범의 경우 수사와 예심은 보위부가 관할하지만 재판은 재판소가 담당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재판도 보위부에서 담당한다는 증언이 제기되고 있다. 보위부원 출신 북한이탈주민 ○○○에 의하면 도 보위부 피의자 심문 등 예심을 거쳐 사실이 정확하다고 판단하면 국가안전보위부 검찰국에 보고한다. 그리고 검찰국에서 범죄행위가 확실하다고 결정할 경우 예심기관이 있는 현지에서 재판을 실시한다. 보위부 검찰국 검사가 판사로서 최고재판소 명의로 판결하는데 비공개로 재판이 진행되며, 형법에 따라 형량을 정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한다. 가족을 모두 수용하는 것이 좋을지의 여부와 평생 수감 여부도 보위부가 판단하는데, 판단기준으로 삼는 기준문건은 없다고 한다. 사건 처리 방향에 대해 관련 간

I
II
III
IV
V
VI

부들이 사건협의회를 개최하여 수용범위, 수용기간 등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보위부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했던 북한이탈주민 ○○○은 예심이 끝나면 보위부 검찰국에서 검사가 내려와 최종적으로 판결한다고 한다. 남포시의 경우 남포 시보위부에서, 일반 시·군의 경우도 보위부로 이관하고 도보위부에서 국가안전보위부 검찰국 검사가 내려와 판결한다는 동일한 증언을 하였다. 결국 정치범의 경우 정식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는다고 한다. 이와 같이 보위부 출신의 북한이탈주민들은 국가안전보위부 검찰국이 재판소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증언하고 있다.¹⁸⁴ 2006년 4월 법원행정처가 북한이탈주민들을 상대로 실시한 면접조사에서도 보위부가 정치범 판결을 한다는 증언이 있었는데, 정치범의 경우에는 보위부 사건심사위원회에서 정치범에 대한 판결을 내린다는 증언도 있었고, 보위부에 판사가 배치되어 정치범 재판을 한다는 증언도 있었다. 이들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사건을 보위부에서 다룰지의 여부는 도·시·군 인민위원회에 구성되어 있는 법무위원회에서 결정하며, 보위부장이 법무위원회의 구성원이므로 사건이 정치적 색채가 있다고 판단되면 보위부로 이관한다고 한다. 사건심사위원회는 보위부장, 보위부 자료분석실 실무자, 보위부 소속의 검사와 예심처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최종결정은 보위부장이 내린다고 한다. 판결을 내리는 과정은 비공개로 하며, 판결 과정에 변호사는 참가하지 않는다고 한다. 보위부의 사건심사위원회에서 내린 판결도 그 명의만은 해당 인민재판소 또는 도(직할시)재판소로 기재된다고 하는 증언도 있었다.¹⁸⁵

다른 유사재판제도인 동지심판제도와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

¹⁸⁴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 2011』, pp. 151~152.

¹⁸⁵ 법원행정처, 『북한의 형사법』, p. 31.

는 법적 근거가 있다. 이와 달리 보위부의 정치범 판결에 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는 아직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북한이탈 주민 증언의 사실 여부, 증언이 사실인 경우 보위부의 정치범 판결에 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한 내용은 북한 내부 문건이 입수·공개되어야 구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¹⁸⁶

2. 동지심판

가. 연혁

북한에는 정규재판조직과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회적 기관으로서 북한주민을 통제하는 독립적이고 독특한 형태의 재판제도인 동지심판(회)제도가 있다. 동지심판은 종래 인민재판 즉 군중심판과 유사한 제도이나 그 의도가 다르다.

북한 법학자의 설명에 의하면 인민재판이라는 것은 해방 직후부터 조직적인 재판활동이 시작되기 전까지의 시기에¹⁸⁷ 인민들 자신이 원수들에 대하여 적용한 진압의 재판적 형태로서 가장 시초의 것은 인민 재판이라고 하였다.¹⁸⁸ 그러나 1945년 11월 23일 정식재판소가 설치된

¹⁸⁶ 우리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및 하위 행정규칙에 해당하는 북한의 규범으로는 정령, 결정, 명령, 지시가 있다. 북한 헌법에 따르면 최고인민회의는 법령과 결정(제97조),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명령(제104조), 국방위원회는 결정 및 지시(제110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정령과 결정 및 지시(제120조), 내각 위원회와 성(省)은 지시(제136조), 지방인민회의는 결정(제144조), 지방인민위원회는 결정 및 지시(제150조)를 제정한다. 북한 법령과 정령은 대외적으로 공개되는 경우가 많으나 결정과 명령, 지시는 공개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¹⁸⁷ 북한은 1945년 11월 23일 북조선 사법국 포고 제4호 재판소 조직에 관한 건으로 재판소 구성 및 관할을 규정하고 시행하였다.

¹⁸⁸ 리재도, “공화국 재판 입법의 발전,” 『우리나라 법의 발전』 (평양: 국립출판사, 1960), p. 242.

I
II
III
IV
V
VI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인민재판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1950년 12월 23일 김일성 주석이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에서 한 연설문에 잘 나타나 있는데 관련 부분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¹⁸⁹

“지금 일부 지방들에서 반동단체에 가담한 사람이라고 하면 덮어놓고 숙청하는데 그렇게 하면 많은 군중을 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반동단체에 가담한 사람이라고 하여 되는데로 망탕 처리하면 결국은 우리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지장을 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동단체에 가담한 자들의 문제를 심중히 처리하여야 합니다. 각급 당 단체들은 반동단체에 가담한 자들을 일률적으로 처리하지 말고 주동분자와 피동분자를 구분하여 주동분자는 고립시키고 피동분자는 쟁취하는 원칙에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시 말하여 주동분자, 악질분자는 엄격히 처벌하며 기만당한 자, 피동분자는 관대히 용서하고 쟁취하여야 합니다. 악질적 만행을 한자라 하더라도 망탕 처리 하지 말고 군중에게 그의 죄상을 알려주어 군중자체가 악질분자들을 심판·처리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인민재판은 인민들 자신의 창의에 의하여 지방에 따라 각각 상이한 형태를 가지고 자연 발생적으로 시작되었으며, 대체로 인민재판의 이름으로 진행되었다. 재판의 대상은 용납 못할 반역자, 친일파, 일제의 악질 경관, 관리들을 처단하기 위하여 수시로 조직되었다.

재판의 절차도 인민들의 혁명적 창의에 의하여 지방에 따라 상이하였다. 재판은 광범한 군중들의 참가하에 공개적으로 또 구두 심리의 방법으로 진행되었으며 피소자에게 변호권을 보장하였다. 재판에서 소추를 담당하고 해결을 담당하는 성원들이 그때그때 선출되기는 하나 참석한 군중들 자신이 직접 증거와 형법에 관하여 자유로이 발언할 권리

¹⁸⁹- 조선로동당출판사, 『김일성 저작집 6』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p. 219.

를 가졌다.

인민재판은 원수들의 반항을 제때에 봉쇄하고 인민들의 애국심을 고취하며 조국 건설을 위한 혁명적 정열을 고무하고 적아를 분간하며 계급적으로 각성되게 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고 한다.¹⁹⁰

군중심판은 인민재판과 비슷한 취지에서 비롯되었는데 김일성 주석은 1950년 12월 당 중앙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에서 6·25 전쟁 시 반역적 행위를 한 자들의 처벌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연설을 하였다.

“반동 단체에 참가하였다 하여 아무런 법적 수속이나 심사도 없이 되는 대로 숙청한다면 이는 엄중한 과오입니다. 우리는 인민을 사랑하며 아껴야 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만일 악질분자라 하더라도 정당한 법적 절차를 거쳐 처리하며 인민들의 의견과 여론에 기초하여 악질분자들을 인민 자체로 심판하는 사업을 조직하여야 하겠습니다.”¹⁹¹

“악질적 만행을 한자라 하더라도 망탕 처리하지 말고 군중에게 그의 죄상을 알려주어 군중자체가 악질분자들을 심판·처리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얼마 전에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에서는 반동분자들의 숙청문제와 그 재산처분문제에 대한 결정을 채택하여 내려 보냈습니다. 각급 당 단체들은 이 결정에 근거하여 반동분자를 규정하고 처리하여야 하겠습니다.”¹⁹²

북한은 위와 같은 김일성 교시를 실현하기 위하여 1951년 2월 10일 내각결정 제203호로 『군중심판에 관한 규정』을 두었다.¹⁹³ 북한법학자의 설명에 의하면 군중심판에 관한 규정은 김일성 동지가 교시한 악질

190- 리재도, “공화국 재판 입법의 발전,” p. 242.

191- 조선로동당출판사, 『김일성 선집 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54), p. 171.

192- 조선로동당출판사, 『김일성 저작집 6』, p. 218.

193- 군중심판회에 관한 규정은 21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I
II
III
IV
V
VI

분자들을 인민 자체로 심판하는 사업으로서의 군중심판을 규정하였다. 군중심판은 인민총회에서 선정한 심판장과 참심원으로 구성하고 리 인민위원장이 소집하였다. 심판은 심판을 받을 자의 범행지에서 집행되며 군중들이 직접 증거를 제출할 권한이 있고 심판회의 결정은 죄의 유·무 및 제재의 정도에 관하여 군중의 토의를 거친 다음에 채택하였다. 군중심판은 사회적 제재와 군중적 교양의 조직으로서 형벌은 적용하지 않고 두문(杜門)¹⁹⁴ 근신 등의 사회적 제재 수단을 적용하였다. 따라서 자수자로서 형사책임을 져야 할 자도 군중심판은 받아야 하였고 반대로 형사책임을 져야 할 자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민재판에 회부할 것을 결정하였다.¹⁹⁵

군중심판제도는 국가기관사업에 많은 근로대중을 인입하면서 계급적 원수들과의 투쟁에서 재판기관들과 힘을 합하여 국가의 위력,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위력을 강화하며 재판기관들의 역할을 보충하여 주었다고 한다.¹⁹⁶

군중심판제도는 전쟁 후에도 계속적으로 시행해 오다가 1960년대 초부터 민주주의 중앙집권제원칙의 강화, 통상재판소 조직의 정비와 함께 서서히 폐지되었으며, 1970년대에 이르러 동지심판제도로 대체, 정비되었다.¹⁹⁷

¹⁹⁴ 두문은 사회적 제재를 받는 자에게 직업상 필요한 외출 또는 국가 및 기타 공공기관의 소환 등에 의한 외출을 제외한 일체의 자유외출과 주민들과의 왕래를 엄금하며 그 자가 거주하는 가옥의 대문(대문이 없을 때는 그 자가 거주하는 가옥 중 왕래에서 잘 보이는 곳) 전면에 두문이라고 쓴 표지를 함으로서 실시한다. 두문기간은 1개월 내지 6개월로 한다(군중심판에 관한 규정 제15조).

¹⁹⁵ 리재도, “공화국 재판 입법의 발전,” p. 254.

¹⁹⁶ 위의 글, p. 256.

¹⁹⁷ 법원행정처, 『북한사법제도 개관』 (서울: 법원행정처, 1996), p. 97.

나. 법률상 근거와 법적 성격

동지심판제도의 법적 근거는 검찰감시법에서 찾을 수 있다. 이 법은 범죄자를 예심에 넘기거나 법을 어긴 자를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 또는 동지심판회에 넘기거나 노동단련 또는 구금 처벌을 하려 할 경우에 검사가 범위반행위를 바로잡거나 법적 책임을 추궁하기 위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 검찰감시법 제40조는 다음과 같다.

검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 범위반행위를 바로잡거나 법적 책임을 추궁하기 위하여 결정을 한다.

1. 수사, 예심 기관의 부당한 수사, 예심 시작결정 또는 수색, 압수 행위를 취소하거나 수사, 예심 사건을 기각시키려 할 경우
2. 수사 일군 또는 예심원을 바꾸거나 침해된 사건관계자의 권리를 회복시켜주려 할 경우
3. 범죄자를 예심에 넘기거나 법을 어긴 자를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 또는 동지심판회에 넘기거나 노동단련 또는 구금 처벌을 하려 할 경우

동지심판제도는 1972년경 혁명동지를 위협에서 구제하고, 고쳐서 다시 쓰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시 아래 정치사상교양 사업을 강화하기 위하여 만든 제도라고 한다.¹⁹⁸ 그 이후 인민들 내부의 모순에서 발생하는 경미한 범위반행위를 인민 자신이 자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인민을 정치적으로 선동하고 교양하기 위하여 동지심판제도를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즉, 굳이 정식 형사재판절차나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에 회부하여 엄한 처벌을 받게 할 필요가 없는 경미한 사안 또는 노동당의 방침이나 각 기관, 기업소, 단체의 협의에 따라 구제

¹⁹⁸ 북한이탈주민 ○○○ 증언, 2006년 8월 4일; 북한이탈주민 ○○○ 증언, 2006년 8월 4일.

I
II
III
IV
V
VI

해주기로 한 사안을 심판대상자가 속해있는 단체의 구성원 앞에서 일단 폭로하게 하여 사상투쟁을 전개하도록 하되 그 대신 경미한 제재로 같음하도록 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¹⁹⁹ 그러나 인민 앞에서 맹렬한 비난을 받고 당에서 쫓겨나는 경우도 있으며 신상서에 기록 유지되고 있어 오히려 교회소에 가는 것보다 더 수치스러운 경우도 있다고 한다.²⁰⁰

동지심판회는 국가사법기관의 단순한 보조기관이 아니라 독립적이고 독특한 민중재판조직이다. 동지심판회는 국가기관·기업소·군부대·사회협동단체 및 각 지역별로 조직되며, 상설형태가 아니라 심판대상자가 있을 때 필요에 따라 수시로 조직되는 비상설 임시기구이다.²⁰¹ 즉, 심판대상자가 소속되어 있는 기관·기업소·사회협동단체 등의 당 비서가 상급 당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 동지심판회를 구성하고 그에 회부한다. 심판원은 당위원회에서 선출되며 보통 당위원회 비서가 역할을 맡는다고 한다.²⁰²

다. 심판대상 및 처벌

동지심판 대상은 ①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똑바로 서지 못하고 계급적 각성이 부족하며 혁명적 기풍이 없는 자, ② 김일성·김정일 교시와 당 정책 학습을 태만히 한 자, ③ 무의식적으로 당 정책 또는 교시를 비방하는 행위, ④ 교시 및 당 정책의 내용을 왜곡 전달하는 행위, ⑤ 각종 부당이득·공유물의 사유화·관리감독 소홀 및 과오로 인한 손

199- 법원행정처, 『북한사법제도 개관』, p. 630 참조.

200- 북한이탈주민 ○○○ 증언, 2006년 7월 21일; 북한이탈주민 ○○○ 증언, 2006년 7월 21일.

201- 법원행정처, 『북한사법제도 개관』, p. 633.

202- 북한이탈주민 ○○○ 증언, 2006년 7월 21일.

해발생 등 소액의 경제사범, ⑥ 풍기문란 등 비도덕적인 기타 사범으로 ‘유일사상에 저해되는 경미한 사건이나 경미범죄 내지 도덕적 비리’ 등과 관련된 사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동지심판회는 위와 같은 행위를 한 대상자에 대하여 책벌, 엄중경고, 경고 등의 처분을 한다. 책벌에는 정식재판 회부, 출당, 6개월 이하의 무보수노동 처분, 경제적 탐오를 저지른 경우에는 그 액수의 10배 내지 20배 정도 되는 벌금을 월급에서 공제하는 행정벌금 처분, 행정적 권리 행사 중지 처분 등을 하며, 군대에서는 정치지도원이 제기하고 대상자가 자아비판을 하면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어 처벌을 결정하는데 화장실 청소 등 사역을 한다고 한다.²⁰³

동지심판은 군대에서도 실시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북한이탈주민 ○○○에 따르면 동지심판은 중대·대대 등의 각급 단위부대에서도 열리는데, 그 대상은 부대 내 구타사건, 사진화되지 않은 탈영, 기강해이 등이 발생했을 때 개최된다고 한다.²⁰⁴

라. 형사재판과의 관계

동지심판과 일반재판의 관계가 문제된다. 동지심판(군중심판)은 이미 형이 확정된 사람들에게 단지 경각심을 주기 위한 차원에서 실시된다는 증언과 반대로 동지심판(군중심판) 이후에 재판을 받고 형이 확정되었다는 상반된 증언들이 있다.

2008년 7월 탈북한 북한이탈주민 ○○○은 2009년 6월 초 무산군 장마당에서 도강(탈북)을 이유로 군중심판을 받았다고 증언하였다. 군

203- 북한이탈주민 ○○○ 증언, 2006년 7월 21일.

204- 북한이탈주민 ○○○ 증언, 2006년 5월 20일.

I
II
III
IV
V
VI

중 가운데 일부가 나와서 “도강을 해서 엄중한 처벌을 내릴 것을 요구한다.”는 토론을 하였는데 그들은 그러한 발언을 하도록 누군가에게 지시를 받아서 한 것이라고 증언하였다. 판사, 검사, 변호사, 인민참심원 등은 참석하지 않았다고 한다. 군중심판에서는 형이 확정되지 않았고, 군중심판 후 예심을 받았으며, 2009년 11월 무산군 재판소에서 재판을 받고 교화 3년형을 선고받았다고 한다.²⁰⁵

반면 2011년 2월 탈북한 북한이탈주민 ○○○은 이미 재판받고 형벌이 확정된 사람들을 모아 놓고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 동지심판이 열린다고 증언하였다. 증언자는 2007년 여자 2명의 두만강 도강을 중개한 사람 28명이 심판을 받았는데 시보안소가 주체가 되어 군중심판하였다고 증언하였다. 군중심판에는 사람들을 모아 놓고 시보안서장, 정치부장, 보안서 간부가 참석하였다고 하였다.²⁰⁶ 다른 북한이탈주민은 수사가 완결되고 판결이 당연시되는 사람들에 한하여 동지심판을 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한다.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동지심판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이는 동지심판이 아닌 군중규탄의 형식으로 치러지는 것을 말하는 것 같다고 한다.²⁰⁷

마. 실태

동지심판은 주로 공장이나 기업소에서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경우 동료들 앞에서 심판을 받는 것으로서 심판결과 정상이 중한 경우에는 검찰에 이송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한다. 또한 앞에서 언급한 바와

205- 북한이탈주민 ○○○ 증언, 2011년 7월 5일.

206- 북한이탈주민 ○○○ 증언, 2011년 6월 14일.

207- 북한이탈주민 출신의 (사)북한민주화위원회 인권조사실장 송현옥 자문결과 (자문일자: 2011.11.8).

같이 동지심판은 군대에서도 실시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북한이탈주민 ○○○은 1997년 6월에는 황해북도 개성시 9사단 87연대 연대회관에서 동지심판이 있었다고 한다. 3명의 남자가 탈영을 이유로 동지심판을 받았는데 동지심판에서는 형이 확정되지 않았으며, 동지심판 이후 구류장에 보내졌다고 한다. 북한이탈주민 ○○○은 2000년 군 복무할 때 ○○○이라는 부(副)분대장의 텔레비전 도둑행위가 제기되어 부대에서 동지심판으로 군 교양소에 1년 동안 있었고, 부대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담당 보위지도원, 검찰소 담당검사가 공개재판을 진행하였다고 한다. 2010년 11월 23일 발생한 북한의 서해 연평도 도발 사건 이후에도 군대 내에서 동지심판 사례가 존재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북한의 연평도 포격 이후 남한의 보복타격으로 부상당한 소대장을 옮기는 과정에서 3명의 북한군 병사들이 소대장을 그대로 두고 도주했다고 한다. 이에 화가 많이 난 김정은이 도주병들을 동지심판에 넘길 것을 명령했다고 한다.²⁰⁸ 2011년 5월 탈북한 북한이탈주민 ○○○은 2008년 10월경 평양시 대동강구역 문흥동의 호위사령부에서 동지심판을 목격하였다고 증언하였다. 그는 평양시로 들어오는 곳을 지키는 '10호 초소' 분대장이 중좌(우리의 중령)가 단속에 응하지 않는다고 폭행을 하여 군대 내의 단련대에 6개월 노동단련을 받았다고 증언하였다.²⁰⁹ 북한 식량난이 군대 내의 동지심판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0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 ○○○은 탈영 후 도둑질 및 강간으로 인해 동지심판이 있었는데 엄중 경고 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증언하였다. 그는 여단 병사들을 운동장에 모이게 하고서 여단 보위지도원이 그 사람의 나이, 이름, 소속 등을

208-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 2011』, pp. 145~146.

209- 북한이탈주민 ○○○ 증언, 2011년 9월 20일.

I
II
III
IV
V
VI

불러주고 죄를 이야기한다고 증언하였다. 또한 그는 군대 내 경제난 및 식량난으로 인해 탈영하는 군인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증언하였다.²¹⁰ 군인들의 불법월경으로 인한 동지심판도 증언되고 있다. 2011년 1월 말 탈북한 북한이탈주민 ○○○은 하전사 3명이 불법월경으로 인하여 동지심판을 받았다고 증언하였다. 그는 심판시 계급장을 떼고 처형한다고 하고 데려갔는데 여단 보위소대에서 9일 동안 구류 후에 다시 나왔다고 한다.²¹¹

한편, 북한이탈주민들은 현지공개재판과 동지심판을 혼동하고 있으며, 동지심판을 여전히 군중심판이라고 부르고 있기도 하다. 현지공개재판을 목격한 북한이탈주민들에게서 이를 ‘동지재판’이라고 부른다는 증언이 있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들이 동지심판을 목격하였다고 한 증언도 실제로는 현지공개재판에 해당하는 것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²¹² 한 예로 2011년 1월 탈북한 북한이탈주민 ○○○은 북한주민 ○○○이 강간 및 불법월경으로 동지심판을 받고 교화 2년형을 선고받았다고 증언하였다.²¹³ 또한 2011년 3월 탈북한 북한이탈주민 ○○○은 2010년 4월 평안남도 북창군 북창화력발전소 내 경기장에서 북창화력발전소의 자재 절도 혐의로 동지심판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증언하였다. 증언자는 2010년 봄 북창화력발전소 내에서 동지심판을 할 때 군 재판소 인원들(판사, 검사, 변호사 등)과 군 보안서 감찰과 및 수사과 인원들(보안원 등)이 참석하여 심판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하였다. 그는 심판받은 자가 발전소 자재 절도로 인해서 심판을 받고

210- 북한이탈주민 ○○○ 증언, 2011년 4월 19일.

211- 북한이탈주민 ○○○ 증언, 2011년 5월 3일.

212-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 2011』, p. 146.

213- 북한이탈주민 ○○○ 증언, 2011년 5월 3일.

교화 1년 6개월~2년형의 처벌을 받았다고 증언하였다.²¹⁴

바. 평가

러시아는 혁명전 일부 군사지역에서 동지심판제도를 운영해오다가 1918년 여름에는 전체 혁명군대까지 확대하여 군사규율의 사소한 위반 문제를 다루었다. 1919년에는 주로 기업 내의 노동조합에 동지법원을 설치하여 노동규율의 경미한 위반사건을 취급하였으며 그 후에는 기타 국가조직, 행정구역단위까지 확대하여 경미한 형사사건뿐만 아니라 민사사건까지 처리하였다. 그 후 1977년 3월 11일 「동지법원에 관한 규정」(Statute on Comrades' Court)이 제정됨으로써 구 소련 동지법원의 조직과 재판절차에 관한 규정이 정비되기도 하였다.²¹⁵

북한의 동지심판제도는 구 소련의 동지법원과 달리 주민들 내부의 모순에서 발생하는 유일사상에 저해되는 행위나 경미범죄 내지 도덕적 비리 등과 관련된 사건을 대상으로 하여 주민 자신이 자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주민을 정치적으로 선동하고 교양하여 김일성·김정일 유일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한 것이다.

북한의 동지심판제도는 주민 개개인이 심판원 또는 공판 방청자로서 적극적으로 재판절차에 참가하여 주민의 정서를 반영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다소 긍정적인 면도 있으나, 다음과 같은 부정적인 면이 더 큰 것으로 평가된다.²¹⁶

214. 북한이탈주민 ○○○ 증언, 2011년 6월 14일.

215. W. E. Butler, 이운영(역), 『소비에트 법』 (서울: 대륙연구소 출판부, 1990), p. 184; 김철, 『러시아 소비에트 법』 (서울: 민음사, 1989), p. 305.

216. 정광진, “북한 형법의 특징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p. 93.

I
II
III
IV
V
VI

첫째, 동지심판의 대상이 너무 불명확하고 추상적이어서 북한 형법에서 명문으로 처벌규정이 없는 간통죄, 낙태죄, 금전차입행위, 불성실한 가정생활, 낭비생활까지 사회주의 도덕성을 잣대로 하여 심판 대상으로 함으로써 주민의 사생활 전체를 적극적으로 통제할 우려가 있다.

둘째, 심판의 개시 및 절차진행이 동지심판회가 소속되어 있는 조직, 특히 당 위원회나 당 비서 개인의 정치적·개인적 판단에 좌우될 소지가 크다.

셋째, 동지심판에 참여하는 심판원은 직업적인 판사와 달리 군중심리에 휩싸여 감정적이기 쉬워 소박한 응보감정에만 치중하여 사안을 적절하게 처리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며, 또 당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선출되는 만큼 당위원회의 방침에 어긋나는 결정을 하기 힘들 것이다.

따라서 설득과 교육에 의한 인간개조라는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집단의 압력에 그치게 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제재에 대한 법률적 불복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 한, 그와 같은 폐해는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²¹⁷

3.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

가. 의의

사회주의법무생활이란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사회주의국가가 제정한 법 규범과 규정의 요구대로 일하며 생활하는 것을 의미한다.²¹⁸ 즉 사

²¹⁷ 법원행정처, 『북한사법제도 개관』, p. 635.

²¹⁸ 김정일,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할 데 대하여,” 『김정일 선집 7』 (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1996), p. 33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치대학, 『법리론』 (평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치대학, 1980), p. 183; 김억락·한걸, 『국가와 법의 이론』 (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5), p. 233; 심형일, 『주체의 법리론』 (평양: 사회과학출

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사회주의국가가 제정한 법 규범과 규정을 철저히 지키고 그에 의하여 통제되면서 질서 있게 사는 생활이 바로 사회주의법무생활인 것이다.

김일성이 1977년 12월 15일 최고인민회의 제6기 제1차 회의에서 인민정권을 더욱 강화하자는 제목의 연설을 통해 사회주의법무생활이라는 용어가 북한에서 처음으로 등장하게 되었는데 관련 부분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²¹⁹

“원래는 관료주의배제와 관료들의 권력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투쟁수단으로 제시된 것으로 관료주의를 약하게 하기 위하여서는 국가, 경제기관 지도일군들의 권력남용을 감시하는 속에서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우리나라 사회주의 법은 근로인민대중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인민들 자신이 만든 국가관리의 기본무기입니다. 오늘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주의 법에 의하여 전체 인민이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고 있습니다.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하여 모든 국가, 경제기관 지도일군들이 사회주의 법을 잘 지킬 때 인민대중의 이익을 침해하는 관료주의가 없어지고 인민들의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가 더욱 원만히 보장될 것입니다.

인민정권기관들은 국가, 경제기관 지도일군들 속에서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하여 그들이 국가의 법질서를 자각적으로 지키고 인민대중의 이익을 철저히 옹호하며 인민의 참된 행복이 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까.

사회주의법무생활의 기초는 법규범과 규정입니다. 인민정권기관들은 사회주의헌법에 기초하여 여러 부문의 법규범과 규정들을 만들고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그것을 끊임없이 완성

판사, 1987), p. 339;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현대조선말사전』 (평양: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1981), p. 1357; 철학사전 <<http://ndfsk.dyndns.org>>; 정치사전 <<http://ndfsk.dyndns.org>>.

²¹⁹ 조선로동당출판사, 『김일성 저작집 3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p. 541.

I
II
III
IV
V
VI

해나가야 합니다.

사회주의 법을 존중히 여기며 그것을 자각적으로 지키는 것은 모든 공민들의 신성한 의무입니다. 국가, 경제기관 지도일군들은 모든 사업을 법과 규정의 요구대로 진행하며 국가의 법질서와 사회주의생활규범을 지키는데서 군중의 모범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이처럼 사회주의법무생활이란 원래 관료주의를 배격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된 것으로서 국가·경제기관의 지도적 간부들의 권력남용을 감시하고, 온 사회에 혁명적 제도와 법질서를 철저히 세우고 사회주의·공산주의 건설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다.²²⁰

그 후 김정일이 1982년 12월 15일 헌법공포 10주년 기념에 즈음하여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할 데 대하여”라는 논문을 발표하였다.²²¹ 이 논문에서 사회주의법무생활이란 모든 사회성원들이 사회주의국가가 제정한 법규범과 규정의 요구대로 일하며 생활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사회주의법무생활은 국가의 법질서에 따르는 근로인민대중의 자각적인 규율생활이 법규범과 규정에 기초하여 사람들을 통일적으로 움직이게 하고 공동생활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는 국가적인 조직활동이라고

²²⁰- 김영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사회주의법무생활에 관한 이론』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0), p. 4.

²²¹- 이 논문은 머리글과 3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머리글에서는 북한 헌법이 발표된 후 10년 동안 국가사회생활에서 커다란 전환이 일어난 것에 대하여 지적하고 사회주의헌법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함으로써 북한의 국가사회제도를 끊임없이 공고 발전시키며 사회주의의 완전승리와 조국통일의 역사적 위업을 다그쳐 나갈 것을 강조하고, 그 내용으로 첫째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하는 것은 우리 혁명발전의 합법칙적 요구에서는 사회주의법무생활의 본질과 그것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둘째 ‘온 사회에 혁명적 준법기풍을 철저히 세울 데 대하여’에서는 혁명적 준법기풍 수립에서 나서는 이론적 실천적 문제들에 대하여, 셋째 ‘사회주의법무생활에 대한 당 조직들과 인민정권기관의 지도를 강화 할 데 대하여’에서는 사회주의법무생활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는데서 당 조직들과 인민정권기관의 임무를 밝히고 있다. 김정일,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할 데 대하여,” p. 329.

설명하였다.²²² 즉 사회주의 법은 온 사회의 혁명화, 노동계급화를 촉진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추동하는 힘 있는 수단²²³이므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준법생활의 중요성을 지적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문헌과 학자들은 이 논문을 사회주의법무생활에 관한 이론을 집대성하고 노동계급의 국가와 법 건설이론을 더욱 심화·발전시킨 고전적 문헌이며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하여 혁명과 건설을 다그치는 데에서 튼튼히 틀어쥐고 나가야 할 강령적 지침이며,²²⁴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하고 온 사회에 혁명적 준법기풍을 세우는 데서 제기되는 이론적·실천적 문제에 과학적 해답을 준 역사적 문헌이라고 격찬하고 있다.²²⁵ 또한 북한 법학자는 김정일의 사회주의법무생활에 관한 논문을 사회주의법무생활에 관한 전면적으로 체계화된 이론이라고 선전하고 있다.²²⁶ 이상과 같은 북한문헌과 학자들의 주장을 통해 사회주의법무생활이론은 북한사회 전체 구성원들의 생활 전 분야를 포괄하는 권력적 성격을 띤 규범생활로 발전하게 되었다.

나. 법률상 근거와 법적 성격

1992년 북한 헌법은 “국가는 사회주의 법률제도를 완비하고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한다.”는 규정을 추가 신설하여 사회주의법무생활에 관한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제18조제3항). 이 규정은 1998년 헌법 제18조와 2009년 헌법 제18조 및 2010년 헌법 제18조에서도 그대로 규

222- 김정일,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할 데 대하여,” p. 330.

223- 위의 글, p. 332.

224- 철학사전 <<http://ndfsk.dyndns.org>>.

225- 정치사전 <<http://ndfsk.dyndns.org>>.

226- 심형일, 『주체의 법리론』, p. 347.

정되고 있다. 또한 북한 형법 제3조는 “국가는 모든 국민들이 국가의 법을 존엄 있게 대하고 엄격히 지키며 범죄와의 투쟁에 적극 나서게 하여 범죄를 미리 막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북한 형사소송법 제6조는 “국가는 국민들 속에서 준법교양과 법적통제를 강화하여 범죄를 미리 막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들은 사회주의법무생활의 준법교양과 대중노선에 입각한 사상투쟁 및 군중투쟁의 내용을 입법화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북한에는 사회주의법무생활을 조직·지도하는 기관으로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이하 ‘법무생활지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법무생활지도위원회는 1977년부터 조직되었으나 1980년 1월 18일 중앙인민위원회 정령으로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면서 정규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²²⁷ 이후 1982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할 데 대하여”라는 논문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활동 지침이 마련되어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모든 인민들의 법 생활운동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운동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과 도·시·군·구역의 각급 인민위원회에 일정한 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법무생활지도위원회가 설치되었으며, 동 위원회는 모든 영역을 대상으로 형벌을 제외한 거의 모든 형태의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준수법적 성격을 가진 비상설적인 국가기관으로서의 집체적 지도기관이다. 다만 법무생활을 통일적으로 조직하고 지도하기 위하여 상설적인 집행 부서를 운영하고 있다.²²⁸

아래에서 언급하겠지만 법무생활지도위원회는 행정치벌과 신소를

227- 장명봉, “북한의 최근 법제 동향과 평가,” 법원행정처, 『남북교류와 관련한 법적 문제점(5)』 (서울: 법원행정처, 2006), p. 323.

228- 심형일, 『주체의 법리론』, p. 421.

담당하는 등 준수법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 점에서 법무생활지도 위원회는 동지심판회와 정규재판소와의 중간적인 위치에서 실질적인 사법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²²⁹

다. 조직

북한은 김일성 주석의 지시에 따라 사회주의법무생활을 실천하고 그에 대한 주권적 지도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중앙과 각 도·시·군·구역의 지방인민위원회 산하에 집체적 지도기관으로 법무생활지도위원회를 조직하였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 법무생활지도위원회 규정』, 『도 인민위원회 법무생활지도위원회 규정』 및 『시·군 인민위원회 법무생활지도위원회 규정』 등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들 규정에서 동 위원회를 기관, 기업소, 협동단체, 일군들과 공민들이 사회주의법무생활을 잘하도록 지도·통제하는 기관으로 명하고, 그 구성과 임무·권한 및 위법현상에 대한 심의 절차 및 제재형태를 규정하고 있다고 한다. 북한 법학자는 이들 규정이 사회주의법무생활에 대한 주권적 지도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김정일의 독창적인 사상을 관철하기 위하여 제정·실시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²³⁰

법무생활지도위원회는 중앙과 지방 차원에서 협의체 형식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중앙법무생활지도위원회는 당조직지도부장, 인민보안부장, 최고검찰소장을 비롯하여 5~6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

²²⁹- 김상균, “북한의 사법제도,” p. 74.

²³⁰- 홍극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제정사』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6), p. 240; 세종연구소, 『북한 법체계와 특색』 (성남: 세종연구소, 1994), p. 56.

으로 보인다.²³¹ 각급 법무생활지도위원회는 지방인민위원회 산하에 해당 인민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검찰소장, 인민보안책임자, 검열위원회 위원장, 당 책임비서로 구성되며,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법무생활지도위원회 위원장을 겸직하고 인민위원회 서기장이 법무생활지도위원회 서기장을 겸직하고 있다고 한다. 각 인민위원회별로 사회주의법무생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위원장과 법무과가 있으며, 이곳에서 실제적인 업무처리가 모두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²³²

라. 임무와 역할

법무생활지도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하여 김일성은 ‘인민정권을 더욱 강화하자’는 제목의 연설에서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법무생활지도위원회의 역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의 중요한 임무는 국가, 경제기관 지도일군들이 권력을 남용하지 않도록 법적으로 통제하며 온 사회에 혁명적 준법기풍을 세우는 것입니다.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는 국가, 경제기관 지도일군들 속에서 준법교양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사회주의헌법을 비롯한 국가의 법규범과 규정들을 널리 해설하여 국가, 경제기관 지도일군들의 준법의식을 높임으로써 그들이 법규범과 규정들을 자각적으로 지키도록 하여야 합니다.

²³¹ 법원행정처, 『북한사법제도개관』, pp. 643~644. 이 책자는 중앙법무생활지도위원회가 중앙인민위원회 산하에 협의체 형식의 조직으로, 국가주석, 중앙당비서, 당조직지도부장, 사회안전부장, 중앙검찰소장 등 5~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이 책자의 발간 당시 북한 헌법 규정을 따른 것으로 중앙인민위원회와 국가주석제는 1998년 헌법에서 폐지되었다.

²³² 법원행정처, 『북한사법제도개관』, p. 644.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는 법을 위반하는 현상들과 강하게 투쟁하여야 합니다. 법무생활지도위원회는 모든 국가, 경제기관 지도일군들이 국가의 법질서를 어떻게 지키는가 하는 것을 일상적으로 감독하여야 하며 법규를 어기고 관료주의를 부리며 인민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일군에 대하여서는 누구를 막론하고 엄격한 법적제재를 가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법적으로 관료주의를 제지하고 근로인민대중의 이익을 철저히 옹호·보위하여야 하겠습니까.”²³³

김정일은 법무생활지도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는 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 및 공민들의 법무생활을 조직·지도하는 집체적지도기관입니다.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의 중요한 임무는 국가경제기관 지도 일군들이 권력을 남용하지 말고 모든 사업을 법규범과 규정의 요구대로 하도록 법적으로 통제하며 온 사회에 혁명적 준법기풍을 세우는 것입니다.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는 법무생활과 관련되는 문제를 정상적으로 토의하여 관할지역 안의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법무생활을 잘하도록 교양하고 통제하여야 합니다.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는 매 시기 제시되는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에 따라 준법교양과 법적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며 검열위원회와 검찰소를 비롯한 감독통제기관들에 과업을 주고 그 집행정형을 보고받으며 제기된 문제들을 옹계 처리하도록 하여야 합니다.”²³⁴

위의 김일성 연설과 김정일 논문을 종합하면 법무생활지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역할 내지는 기능을 수행한다. 첫째, 국가경제지도기관 지

²³³ 조선로동당출판사, 『김일성 저작집 32』, p. 542.

²³⁴ 김정일,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할 데 대하여,” p. 344.

I
II
III
IV
V
VI

도일군들이 권력을 남용하지 말고 모든 사업을 사회주의 법규범과 규정의 요구대로 하도록 법적으로 통제한다. 둘째, 온 사회에 혁명적 준법 기풍을 세운다. 셋째, 법무생활과 관련되는 문제들을 토의하여 관할지역 안의 모든 사람들이 법무생활을 잘하도록 교양하고 통제한다. 넷째, 매 시기 제시되는 수령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의 정책에 따라 준법교양과 법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다. 다섯째, 검열위원회와 검찰소를 비롯한 감독통제기관들에게 임무를 주고 그 집행을 보고 받으며 제기된 문제들을 처리한다.

북한의 선군정치는 사회주의법무생활에도 강조되고 있는데 선군사상이 2009년 개정 헌법과 2010년 개정 당규약에 명시되기 이전인 2005년 12월 노동신문 논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선군시대의 법무생활은 혁명군대의 기질과 품모에 사회의 모든 성원들의 준법기풍을 적극 따라 배우는 생활이다. … 선군시대의 법무생활은 혁명적 군인정신에 의하여 법의 준수집행이 담보되는 생활이다. … 선군시대의 사회주의법무생활은 나라의 자주권을 철저히 지키고 사회주의를 굳건히 고수하기 위한 위력한 담보로 된다. … 선군시대의 법무생활에 의하여 국방위원회가 지위와 역할이 비상히 강화되고 국방위원회 위주의 국가관리체계와 인민군대를 기중으로 하는 일심단결이 확고히 담보되며 사회주의소유제와 계획적 경제관리체계, 사회주의적 시책들이 고수되고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혁명적 제도와 질서와 확립되게 된다. 사회주의법무생활은 군력강화의 원천이다. … 우리 사회에서 법무생활은 단순히 법을 지키는 생활이 아니라 사회주의를 옹호하는 혁명투쟁이다. … 선군시대의 법무생활은 사람들을 주체의 선군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키는 데서 중요한 작용을 한다. …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법무생활을 끊임없이 강화해 나감으로써 우리의 국가사회제도의 우월성과 생활력을 높이 발양시켜야 할 것이다.”²³⁵

북한학자는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하는 것은 선군시대를 건설하는 데 있어 중요한 과제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 이유로는 사회주의법무생활 강화가 첫째, 인민 대중 중심의 북한식 사회주의제도를 철저히 옹호 고수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며 둘째, 국가사회생활 모든 분야에 혁명적인 제도와 질서를 세울 수 있게 하기 때문이고 셋째, 경제강국 건설 투쟁의 당면한 과업이기 때문이라고 한다.²³⁶

마. 심의대상 및 절차

김정일은 사법검찰기관들에게 법을 위반한 사람들 가운데 재판에 넘길 대상은 재판에 넘기고 사회적 교양을 통해 개조할 대상은 법무생활지도위원회에 넘겨 처리하게 하거나 해당 기관들과 근로단체조직들이 함께 노력하여 교양 개조해야 한다고 하였다.²³⁷ 법무생활지도위원회가 심의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매우 광범위하다. 북한 법학자 심형일은 법무생활은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부분, 모든 단위를 다 포괄하고 사회의 모든 성원을 빠짐없이 대상하는 사회생활분야이며 국가사업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일상생활, 개인생활에까지 그리고 그것도 매우 구체적인 세부에 이르기까지 관여하는 사회생활영역이라고 설명하고 있다.²³⁸ 그러나 법무생활지도위원회는 스스로 범위반사실을 밝혀내어 필요한 여러 조치를 취할 수는 있지만, 법무과 이외의 조사 기구를 별

235- 장재수, “선군시대 사회주의법무생활과 강성대국건설,” 『로동신문』, 2005년 12월 15일; 이해정, “북한 사회에서 법의 역할에 관한 연구: 사회주의법무생활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p. 72에서 재인용.

236- 김경현,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하는 것은 선군시대 혁명과 건설의 중요한 요구,” 『김일성종합대학학보: 력사·법학』, 제55권 제2호 (2009), pp. 104~108.

237- 리운기 외 13인, 『법투쟁부문 일군들을 위한 참고서』, p. 23.

238- 심형일, 『주체의 법리론』, p. 424.

도로 갖고 있지 않으므로, 국가검열기관이나 검찰기관, 인민보안기관의 제기에 따라 범위반사실을 심의하여 조치를 취할 뿐이다. 다만 재판기관, 인민보안기관 등 다른 법 기관과의 차이점은 법 기관들은 주로 법적 통제의 방법을 통하여 위법현상을 미리 막거나 없애는 데 반하여, 법무생활지도위원회는 기본적인 역할이 일꾼들과 근로자들의 법무생활에 대한 조직자적 기능과 행정적 및 규율적 위법현상에 대한 처리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다.²³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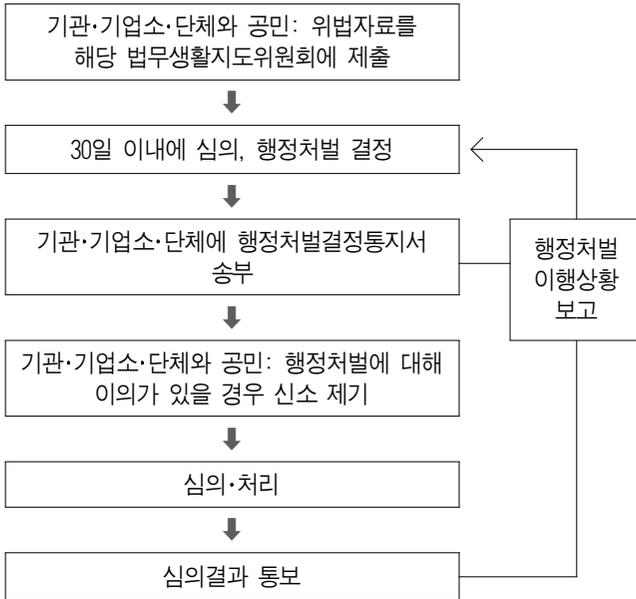
행정처벌법은 내각, 검찰·재판·중재²⁴⁰·보안 기관, 검열감독기관과 함께 법무생활지도위원회를 행정처벌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제175조). 법무생활지도위원회가 내릴 있는 행정처벌에는 경고, 엄중경고, 무보수노동, 강직, 해임, 철직이 있다(제176조). 행정처벌을 제기하려는 기관·기업소·단체와 공민은 위법자료를 해당 법무생활지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제187조). 위법자료를 제출받은 법무생활지도위원회는 30일 이내에 심의하고 행정처벌 결정을 하여야 한다(제190조). 이

²³⁹- 위의 책, p. 429.

²⁴⁰- 북한의 중재개념은 일반적인 중재의 개념과 다르다. 일반적으로 중재(arbitration)라 함은 민사상 분쟁을 분쟁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선정된 제3자인 중재인 또는 중재기관이 중간에 서서 해결하는 것으로서, 국가재판기관인 법원의 법정에서 행하여지는 권력적 활동인 재판과는 다른 재판외의 임의적 분쟁해결활동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국가중재제도는 우선 개인이 아닌 경제기관·기업소·단체라고 하는 사회주의적 소유조직이 인민경제계획을 수행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에 대해 시비를 가리는 국가재판활동이며, 부차적으로는 사회주의적 소유조직이 인민경제계획에 기초하여 체결된 계약을 준수하여 인민경제계획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는 행정활동이다. 북한의 국가중재제도가 인민경제계획에 기초한 계약상의 분쟁을 사법적 구조로 해결하려는 것을 본질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민사소송절차와 흡사하지만, 그밖에 벌금을 부과한다든지 개별적 일꾼들을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나 검찰기관에 넘긴다든지 혹은 검열·감독업무 등을 수행한다는 측면에서는 형사재판적인 특성과 행정적인 특성까지 함께 포함하고 있는 북한 나름의 독특한 분쟁해결 및 인민경제계획수행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법원행정처, 『북한의 중재제도』 (서울: 법원행정처, 1995), pp. 3~7 참조.

경우 법무생활지도위원회는 행정처벌결정통지서를 작성하여 행정처벌을 받은 자의 기관·기업소·단체에 보내야 한다(제193조). 행정처벌을 받은 기관·기업소·단체는 행정처벌정형을 분기에 한 번씩 해당 법무생활지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제197조). 법무생활지도위원회는 신소를 처리할 권한도 부여받고 있다. 기관·기업소·단체와 공민이 행정처벌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해당 법무생활지도위원회에 신소할 수 있다(제198조). 행정처벌과 관련한 신소를 받은 법무생활지도위원회는 신소를 받은 날부터 중앙급은 60일, 도급은 40일, 군급은 20일 이내에 심의·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소를 제기한 기관·기업소·단체와 공민에게 알려주어야 한다(제199조).

그림 IV-1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의 행정처벌 흐름도



I
II
III
IV
V
VI

바. 평가

사회주의사회는 근로인민대중의 사회정치적 자주성이 실현된 사회인 동시에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혁명투쟁이 계속 진행되는 사회이며, 자주성을 구축하는 낡은 사회의 유물이 남아있는 사회인 동시에 그 유물을 완전히 없앨 임무를 지니고 있는 사회이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의 실현을 반영한 사회주의사회의 특성과 면모는 그 공산주의적 성격으로 되며, 자주성에 대한 구축이 남아있는 사회주의사회의 특성과 면모는 그 과도적 성격으로 된다고 한다.²⁴¹

이와 같이 사회주의가 공산주의로 이행되는 과도적 단계에 있는 북한에서의 사회주의법무생활이란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당과 국가의 지도하에 제정된 사회주의 법규범과 규정을 올바르게 지키고 그에 의하여 통제된 질서정연한 생활을 하는 것이다. 즉 근로인민대중의 높은 정치적 자각과 준법의식에 의해 실현된 정치·법률생활이며, 사회주의사회를 질서정연하게 작동시키는 고도로 조직화된 규범생활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에서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해나가는 과정은 공산주의적인 요소는 확대·강화되고 과도적인 요소는 극복·축소되어가는 과정인 것이다.²⁴²

사회주의법무생활은 본래 국가기관이나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들의 자의적인 권력행사를 막고 관료주의의 폐단에 대항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 사회주의법무생활은 북한주민들을 법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이데올로기로 변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당초 사회주의법무생활은 권력행사의 남용을 감시하기 위하여 지도적 위치에 있는

²⁴¹ 심형일, 『주체의 법리론』, p. 349.

²⁴² 위의 책, p. 351.

국가기관의 간부들의 법 준수에 방점이 있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목적 보다는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부자세습체제를 견고하게 지키기 위한 주민통제수단으로 변질되었다.²⁴³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이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하는 이유는 사회주의 건설을 확고히 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서라고 볼 수 있다.²⁴⁴

²⁴³- 이해정, “북한 사회에서 법의 역할에 관한 연구: 사회주의법무생활을 중심으로,” p. 64.

²⁴⁴- 통일부 통일교육원, 『북한의 법제정비 동향과 특징』 (서울: 통일교육원, 2007), p. 21.

V. 특별형사제도



본 장에서는 북한의 특별형사제도로 인민보안단속제도와 행정처벌 제도에 대해 살펴본다. 인민보안단속제도는 인민보안단속법에 의해, 행정처벌제도는 행정처벌법에 의해 각각 규율되고 있다.

1. 인민보안단속

가. 인민보안단속법 입법취지

인민보안단속법(구 사회안전단속법)은 1992년 12월 28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22호로 채택되어 1999년 3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540호로, 2001년 9월 1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566호로, 2002년 5월 2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052호로, 2005년 7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226호로 각각 수정·보충되었다. 인민보안단속법은 제1장 인민보안단속법의 기본, 제2장 인민보안단속대상, 제3장 인민보안단속방법과 절차, 제4장 단속한자의 처리 등 총 4장 62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민보안단속법의 제정 목적은 인민보안단속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법질서 위반행위를 방지하고 정확히 조사·처리하는데 이바지하는데 있다(제1조). 법질서 위반자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사회적 교양을 위주로 하면서 법적 제재를 옹계 결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5조). 인민보안단속법은 단속에 있어서 국가는 과학성과 객관성·신중성을 보장하고(제4조), 군중의 힘과 지혜에 의거하도록 하며(제2조), 준법 교양과 법적 단속을 강화하여 법질서 위반행위를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조). 특이한 점은 인민보안 단속 과정에서 ‘인권’을 유린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제6조). 구 사회안전단속법은 사회안전기관이 사회안전단속에서 세도를 쓰

I

II

III

IV

V

VI

거나 직권을 남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었을 뿐 인권에 관해서는 규정하지 않았었다(제6조).

나. 형사처벌 및 행정처벌과의 관계

인민보안단속법은 형사책임을 추궁할 정도에 이르지 못한 법질서를 위반한 자에게 적용된다(제7조). 행정처벌법도 형벌을 적용할 정도에 이르지 못한 위법행위를 한 기관·기업소·단체와 공민에게 적용된다(제7조). 이 점에서 인민보안단속법과 행정처벌법은 특별형사법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인민보안단속법과 행정처벌법은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인민보안단속법 제1조, 행정처벌법 제1조). 인민보안단속법에 규정되어 있는 단속행위는 행정처벌법에도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행정처벌의 종류와 적용절차 및 방법은 행정처벌법의 적용을 받는다(행정처벌법 제6조). 그러나 인민보안단속법과 행정처벌법의 관계는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구분하는 일반법-특별법의 관계로 보기는 어렵다. 우선, 인민보안단속법의 단속행위는 행정처벌법에도 규정되어 있지만 모두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인민보안단속법 제9조의 국가의 정치적 안전에 위협을 주는 행위는 행정처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둘째, 인민보안단속법과 행정처벌법은 행정처벌에 있어 상호 모순된 규정을 두고 있다. 행정처벌법에 따르면 인민보안기관은 인민보안단속 과정에 발견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노동교양, 벌금, 중지, 변상, 몰수처벌을 가할 수 있다(행정처벌법 제81조). 반면 인민보안단속법은 노동교양, 자격박탈, 강급, 자격박탈, 중지, 몰수, 벌금을 인민보안 단속행위에 대한 행정처벌 종류로 규정하고 있다(인민보안단속법 제57조).

다. 단속대상

인민보안단속법은 제2장에서 단속대상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구 사회안전단속법과 비교해보면 사회안전단속법이 제8조부터 제28조까지 21개 조문에서 단속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데 비해 인민보안단속법은 제8조부터 제40조까지 33개 조문에 달하고 있다. 구 사회안전단속법에 규정된 단속행위는 <그림 V-1>과 같다.

● 그림 V-1 구 사회안전단속법상의 단속행위

- 사회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
- 국가의 정치적 안전에 위협을 주는 행위
- 설비와 원료·자재·생산물을 되는데로 관리하여 못쓰게 만들거나 그것을 유용·낭비·비법처분하거나 또는 계획실행정형을 거짓보고하거나 수출입질서를 위반하는 등의 행위
- 상품을 불법적으로 판매하거나 정해진 수매 가격을 위반하는 등의 상업 질서를 위반하는 행위
- 외화벌이기지가 없이 외화벌이를 하거나 외화를 팔고 사는 등의 외화벌이·외화관리 질서위반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에 출근하지 않고 건달을 부리거나 정해진 노동시간을 지키지 않는 등의 노동행정질서 위반행위
- 퇴폐적인 음악·춤·그림·사진·도서·녹화물·녹음물 등을 허가 없이 다른 나라에서 들여오거나 만들거나 복사·유포하는 행위, 패싸움·불량자적 행위를 하거나 공공시설물을 파손시키거나 그 이용질서를 위반하는 등의 사회공중질서 위반행위
- 불법적으로 의료행위를 하거나 약품을 만들어 파는 행위
- 여행 질서, 걸어 다니는 질서위반행위
- 기관·기업소·단체와 공민이 기밀자료와 인쇄설비의 보관·이용 질서를 위반하거나 기밀을 누설하는 행위
- 기관·기업소·단체의 경비질서 위반행위
- 공민등록·숙박등록·살림집 이용 질서위반행위
- 운전기재를 등록하지 않거나 기술검사를 받지 않거나 또는 운전자격이 없는 자가 운전기재를 운전하는 하는 등의 교통안전질서 위반행위
- 승인 없이 도로를 건설하거나 막거나 또는 교통안전시설을 갖추지 않는 행위
- 기관·기업소·단체에서 화재를 막기 위한 시설 또는 기재를 갖추지 않거나 승인 없이 건물 또는 인화물질 보관시설을 건설·이용하는 행위
- 화약류, 총기류, 방사성 및 독성 물질의 취급질서 위반행위

I
II
III
IV
V
VI

- 내압설비와 사람이 타는 권양설비, 나룻배를 검사받지 않거나 그 운영질서를 위반하는 행위
- 큰물피해, 지진피해, 물에 빠지는 사고를 막기 위한 대책을 세우지 않는 행위
- 금지된 시기와 장소에서 또는 금지된 방법으로 이로운 동식물을 잡거나 채취하는 행위, 토지를 남용하는 행위, 산림을 남벌·도벌 하는 행위, 물·공기·토양을 오염시키는 등의 국토관리·환경보호 질서위반행위
-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재산과 국민의 헌법적 권리, 생명재산 침해행위

인민보안단속법은 주민들에 대한 단속을 일상생활 전반까지, 그리고 구체적인 행위까지 확대하였다. 인민보안단속법에 추가된 단속대상 행위는 <그림 V-2>와 같다.

● 그림 V-2 인민보안단속법에 추가된 단속행위

- 기관·기업소·단체의 설비, 자재를 불법적으로 빼돌리거나 승인 없이 음식물 매대 같은 봉사시설을 갖추어놓고 돈벌이를 하는 행위
- 기관·기업소·단체의 종업원으로 불법적으로 돈벌이를 조직하는 행위
- 농기계·부림소 관리를 바로 않지 않거나 비료, 농약 등의 영농물자 보관·이용 질서위반행위
- 불법적으로 전열기를 사용하는 등의 전기낭비행위
- 기관·기업소·단체의 노력을 다른 일에 망탕 동원시키거나 계획된 노력을 제때에 동원시키지 않은 행위
- 미신행위를 날조하거나 사실을 날조·왜곡하거나 요언(妖言)을 퍼뜨리는 행위
- 컴퓨터, 인쇄기, 수자식촬영기, 반도체라디오가 달린 녹음기의 등록이용 질서위반행위
- 여성을 희롱하거나 남의 옷에 더러운 것을 발라놓는 행위
- 철길, 고속도로로 걸어 다니거나 관광도로와 그 주변에서 공중도덕과 제정된 질서를 위반하는 행위
- 열차, 전차, 버스에 설치한 시설을 파손시키거나 정상적 운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
- 장사, 물물교환을 목적으로 술을 만들거나 또는 국가가 금지시킨 물건을 팔고 사거나 시장 밖에서 물건을 팔고 사는 행위
- 불법적으로 밀수·밀매하거나 허가 없이 국경을 넘나드는 행위
- 도적물건을 숨겨주거나 또는 팔아 주거나 사는 행위
- 술을 마시고 운전하거나 배출기준을 초과하여 유해가스를 내보내는 행위
- 법질서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하거나 충고를 주는 자에게 폭행을 가하거나 반항, 모욕하는 등의 행위

라. 단속방법과 절차

인민보안원은 단속대상 행위에 해당하는 법 위반자를 단속하게 되면 신분을 확인하고 위반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건과 문서를 보거나 필요한 내용을 조사할 수 있다(제42조). 신분이나 범위반내용이 정확히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단속된 자의 증인에게 다른 장소 또는 인민보안기관, 또는 자신의 사무실까지 함께 갈 것을 요구할 수 있다(제43조). 그리고 진술서 첨부 등 조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사진을 찍거나 녹음, 녹화를 할 수 있다(제45조). 인민보안원은 법질서를 위반하고 도주하거나 또는 공모하여 법질서를 위반하였거나 조사를 방해하는 자, 방랑자, 신분이 확인되지 않은 자를 억류할 수 있다(제47조). 이 경우 대장에 등록하고 24시간 이내에 단위책임자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제48조). 법질서 위반자의 억류기간은 인민보안소는 3일, 시(구역)·군 인민보안서는 10일까지 가능하다(제50조). 법 질서 위반자가 단속에 불응하고 도주하거나 단속하는 보안원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의 사회질서 문란자를 체포하는데 다른 방법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술기재를 사용할 수 있다(제51조).

구 사회안전단속법과 비교할 때 인민보안단속법은 인권보호를 강화하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첫째, 인민보안원이 법질서 위반자의 신분을 확인할 경우 먼저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단속 이유를 알려 주도록 개정하였다(제42조). 둘째, 법질서 위반자를 억류하였을 경우 24시간 이내에 검사에게 알리고, 억류된 자의 가족과 직장 또는 거주지 사무소에도 알린다는 조항을 신설하였다(제49조). 셋째, 산전 3개월, 산후 7개월까지의 여성과 중병, 전염성질환환자는 억류할 수 없다는 규정을 추가하였다(제50조제3항). 넷째, 인민보안원이 단속된 자의 몸과 입은 옷

I

II

III

IV

V

VI

에서 법질서 위반행위와 관련 있는 흔적, 특징, 물건을 찾아내기 위해 검신할 경우 2명의 입회인을 세운다는 규정을 추가하였다(제52조제2호). 반면 구 사회안전단속법은 법 위반자를 단속한 경우 24시간 이내로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데 비해(제32조), 인민보안단속법은 현지 또는 필요한 장소에서 조서를 작성한다고만 할 뿐 시간의 제약은 두고 있지 않다(제46조).

마. 단속한 자의 처리

인민보안원이 법질서 위반자를 단속하였을 경우 그의 거주지나 직장을 관할하는 인민보안기관에 넘겨주거나 교양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조서와 증거물 등을 함께 넘긴다(제55조). 북한이탈주민 ○○○은 여행질서 중 걸어다니는 질서를 위반하여 보안원에게 단속되면 인민보안서 담당보안원에 인계되며, 담당보안원은 자료를 취합해서 감찰과에 보고하고 감찰과 부 과장은 처리문건을 작성하여 감찰과장과 협의하고 감찰과장이 최종적으로 인민보안서장의 수표(승인)를 받아 시행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감찰과 부과장이 실질적인 처벌을 결정한다고 증언하였다.²⁴⁵ 법질서 위반자를 처리할 때의 기준은 개준성과 법질서 위반행위의 위험성 정도이다(제54조).

법질서 위반행위가 가벼운 경우에는 교양처리를 할 수 있는데 법질서 위반자의 보호자나 또는 법질서 위반자의 교양을 책임진 자로부터 담보서를 받아야 한다(제60조). 법질서 위반자를 그의 거주지나 직장을 관할하는 인민보안기관에 넘기는 경우에는 법질서 위반 자료를 단위책

²⁴⁵- 북한이탈주민 ○○○ 증언, 2006년 5월 16일; 북한이탈주민 ○○○ 증언, 2006년 7월 8일.

임자의 비준을 받아 해당 인민보안기관 책임일군협의회에 제기하여야 한다(제56조). 인민보안기관 책임일군협의회는 법질서 위반 자료를 심의하고 노동교양, 자격정지, 강급, 자격박탈, 중지, 몰수처벌을 가하거나 교양처리할 수 있다. 다른 행정처벌²⁴⁶을 주려 할 경우에는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에 제기해야 하고 형사책임을 추궁하려 할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 따라야 한다. 여행질서, 교통질서, 빈차운행질서 위반자에게는 직접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제57조). 북한이탈주민 ○○○은 처벌은 극히 일부 훈방되는 경우도 있지만, 한국의 경찰서 유치장과 비슷한 북한의 구류장에 유치되는데 대부분 6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노동단련대에 수감되어 규율교육을 받으며 강제노동을 하거나, 법무생활지도위원회에 회부되어 무보수노동을 한다고 증언하였다.²⁴⁷ 법질서 위반자의 처리는 단속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제58조).

구 사회안전단속법과 비교할 때 인민보안단속법은 인민보안단속 처리에 대한 이의제기도 제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인민보안단속처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단속처리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상급인민보안기관에 의견을 제기할 수 있다. 이의를 제기받은 인민보안기관은 15일 이내에 조사처리하고 의견을 제기한 자에게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제62조).

바. 실태

북한 당국은 일반주민들의 사생활 감시에 공간조직망을 활용하고 있

²⁴⁶ 행정처벌법은 노동교양, 자격정지, 강급, 자격박탈, 중지, 몰수처벌 외에 경고, 엄중경고, 무보수노동, 강직, 해임, 철직, 벌금, 변상을 규정하고 있다(행정처벌법 제14조).

²⁴⁷ 북한이탈주민 ○○○ 증언, 2006년 6월 23일.

I
II
III
IV
V
VI

다. 인민보안부 소속 숙박 검열대는 무단숙박과 비위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자정부터 새벽 3시까지 각 가정을 방문하며 검열을 수행한다. 무단숙박을 검열한다는 목적으로 검열대가 예고 없이 방문하는 것도 일반적인 현상이다. 다시 말해 수시로 숙박검열을 당한다고 한다. 검열단은 도 보위부원 2명에 보안원 1명이 한 조가 된다. 검열단은 먼저 각 인민반 반장 집을 검열한 다음, 인민반장과 함께 각 세대를 검열하고 있다. 매일 저녁 7시에 한 번, 밤 12시에 한 번 해서 하루 2회 진행된다. 대체로 인민반장들의 신고로 잡히는 무단숙박자 수가 절반 이상이라고 한다. 북한 당국은 또한 사생활 감시에 인민반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15~25여 세대로 구성된 인민반은 인민반장에 의해서 통제되고 인민반장은 인민보안부 보안원과 함께 숙박검열 등을 통해 각 가정을 항시 방문할 수 있다. 또한, 사상동향이나 가정 사정을 감시·통제할 뿐만 아니라 노력동원·생활총화 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주민들의 감시는 인민반장으로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인민반에는 보위부, 보안원, 당 비서 등의 끈나풀이 있고, 이들이 이중 삼중으로 인민반장과 주민들을 감시하고 있다고 한다.²⁴⁸

인민보안단속법은 여행질서 위반행위도 단속하고 있다(제30조). 그러나 북한이탈주민들은 경제난이 북한주민들의 여행 행태에 변화를 주고 있는 것으로 증언하고 있다. 여행증 제도가 존속하고는 있으나 안보상 중요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뇌물 등을 통해 여행이 묵인됨으로써 사실상 여행통제가 완화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인민보안단속법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숙박등록과 관련하여서는 특별 경비주간에 숙박검열이 집중적으로 실시된다고 한다. 숙박검열은 지방마다 차이가 있

²⁴⁸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 2011』, pp. 233~234.

는데 국경지역에는 수시로 숙박검열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북쪽으로 갈수록 점점 심해진다고 한다.²⁴⁹

사. 평가

인민보안단속법의 적용 대상범위는 광범위한데, 법질서를 위반하는 행위(제8조), 국가의 정치적 안전에 위협을 주는 행위(제9조) 등 구성요건의 표현이 불확실하며 애매하고 추상적이며 포괄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불명확한 구성요건은 사상이나 계급과 연관되어 계급성과 정치성을 띠고 정형성이 결여된 추상적·상대적 개념이다. 더욱이 광범위하고 다양한 위법행위를 단속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자의적인 조치를 취해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

인민보안단속법은 구 사회안전단속법과 비교할 때 상반된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우선, 인권 측면에서 긍정적인 요소들이 있다. 인민보안단속에서 인권을 유린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인민보안단속 방법 및 절차에 있어 법질서 위반자를 억류하였을 경우 그의 가족과 직장 또는 거주지 사무소에 알리도록 한 규정, 산전 3개월과 산후 7개월까지의 여성과 중병·전염성질환자는 억류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 단속된 자를 검신하는 경우 입회인 2명을 세우도록 한 규정, 의견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규정들이 그렇다. 반면 인민보안단속행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세분화한 것은 그만큼 인민보안단속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점에서 인권측면에서는 부정적으로 평가된다.

²⁴⁹ 위의 책, pp. 192~200.

I
II
III
IV
V
VI

2. 행정처벌

가. 의의

행정처벌법이란 통상적으로 행정질서법에 대한 통칙적 규정과 행정질서법의 처벌절차를 규정한 법규범을 말한다. 예컨대 형사법에 대해서는 형법에 모든 형사법에 다 같이 적용되는 형법총칙과 각종 형사법의 범죄구성요건과 이에 대한 형벌을 정한 형법각칙이 정하여 있으며, 형사법의 처벌절차에 대하여서는 형사소송법에서 이를 상세히 정하고 있다. 행정법규가 정하고 있는 의무위반에 대한 벌칙은 형벌을 처벌수단으로 하는 행정형벌과 과태료를 처벌수단으로 하는 행정질서벌이 있는데, 행정형벌에 대해서는 형사벌과 마찬가지로 형법총칙과 형사소송법이 적용되며 따라서 약간의 특례가 인정되기는 하지만 체계상으로는 형사처벌에 편입되며 보통 행정처벌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리하여 행정벌 중 과태료를 처벌수단으로 하는 행정질서벌만을 행정처벌이라고 한다. 행정처벌에 대한 법규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많은 나라의 경우는 각 개별행정법규에 흩어져 있으며 통일적인 법전이 없고, 일부 국가에서만 통일적인 법전이 있다. 북한의 행정처벌법이 그 예이다. 북한 행정처벌법은 2004년 7월 14일 채택되어 2008년 5월 20일 최종 개정(수정·보충)되었다. 북한 행정처벌법은 통칙적 규정 및 처벌적 규정과 함께 대부분의 처벌대상인 행정처벌을 함께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²⁵⁰

행정처벌법의 제정목적은 행정처벌의 적용에 있어 제도와 질서를 엄

²⁵⁰- 박윤훈, “북한 행정처벌법에 대한 개괄적 고찰,” 『북한법연구』, 제10호 (2007), pp. 27~28.

격히 세워 위법현상을 막고 온 사회에 준법기풍을 확립하고자 하는 데 있다(제1조). 즉 행정처벌법은 인민보안단속법처럼 형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것과 일부 중복되면서 형법에 있어서 보다는 덜 엄격하지만 비범죄화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처벌범위를 확장한 면이 있다. 북한 행정처벌법은 형법에 있어서처럼 위법행위의 미연 방지원칙(제2조), 위법행위와의 투쟁에 있어 행정처벌과 사회적 교양의 배합원칙 등을 적용하고 있고(제3조), 행정처벌 시에 과학성·객관성·신중성·공정성을 보장하도록 하였으며(제4조), 법의 적용대상도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 그리고 영역 안에 있는 국제기구나 다른 나라의 단체, 기업소, 공민에게도 적용하고 있다(제5조).

북한 행정처벌법은 행정처벌을 형벌을 적용할 정도에 이르지 못한 위법행위를 한 기관·기업소·단체와 공민에게 지우는 행정적 제재로 정의하고 있다(제7조). 북한학자는 형사책임을 추궁할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미한 위법행위에 대해 행정처벌을 가하는 이유를 선군정치와 관련짓고 있다. 즉, “경미한 범위반자들에게도 일정한 법적 제재를 적용하게 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사람들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자그마한 낡은 사상 잔재도 없애고 그들이 선군혁명위업수행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도록 하자는 데 있다.”고 한다.²⁵¹ 행정처벌은 16세 이상의 자에게만 적용되며, 16세에 이르지 못한 자가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사회적 교양대책을 세우도록 규정하고 있다(제8조). 형사처벌은 14세 이상의 자연인에게만 적용되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제기구 및 외국 기업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비해 행정처벌은 북한의 행정법규범을 위반한 16세 이상의 공민과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제기구 및 외국 기업체

I
II
III
IV
V
VI

²⁵¹ 리철광, “행정처벌의 본질과 특징,” 『정치법률연구』, 2010년 제3호 (2010), p. 40.

에도 적용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제기구 및 외국 기업체에도 행정처벌을 적용하는 이유는 경제관리에서 엄격한 제도와 질서를 확립하는 데 행정처벌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²⁵²

나. 종류 및 처벌 행위

북한 행정처벌법은 ① 경고, 엄중경고, ② 무보수노동, 노동교양, ③ 강직, 해임, 철직, ④ 벌금, ⑤ 중지, ⑥ 변상, ⑦ 몰수, ⑧ 자격정지, 강급, 자격박탈을 행정처벌 종류로 규정하고 있다(제14조). 북한 행정처벌법은 하나의 행정처벌 적용원칙을 두고 있다. 즉, 한 위법행위에 대하여서는 한 종류의 행정처벌을 적용한다는 원칙이다. 그러나 변상, 몰수, 자격정지, 강급, 자격박탈은 다른 종류의 행정처벌과 함께 줄 수 있다고 하여 병과주의를 병용하고 있다(제27조).

행정처벌 종류에 있어 행정처벌법에서 눈여겨 볼 점은 북한 형법이나 형사소송법 등 형사법에 벌금에 관한 규정이 없는 데 비해 행정처벌법은 행정처벌의 종류로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²⁵³ 벌금은 가벼운 위법행위를 한 기관·기업소·단체와 국민에게 물질적 자극을 줄 목적으로 적용하는 행정처벌이다. 벌금적용 절차와 방법은 해당법규에 따른다고 규정한 것이 흥미롭다(제19조). 행정처벌법 199개 조문 가운데 벌금은 제42조 상포권침해행위를 비롯하여 26개 조항에 적용되고 있다. 벌금 액수는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에서 내부규칙으로 정하여

²⁵² 위의 글, p. 40, p. 42.

²⁵³ 북한은 1987년 사회주의 형법이 있기 이전에는 경한 형태의 인신침해죄, 노동법령위반죄, 개인재산침해죄, 관리질서 및 경제에 관한 죄 등에 주로 벌금형을 규정해 왔었으나, 1987년 형법 이후 ‘벌금형’을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 최은석, “북한과 중국의 행정처벌법에 관한 비교 고찰,” 『공법연구』, 제37집 제1~2호 (2008), pp. 399~400.

운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 행정처벌법은 제3장에서 위법행위 유형을 크게 경제관리질서(제1절, 65개 조문), 문화관리질서(제2절, 19개 조문), 일반행정질서(제3절, 27개 조문), 공동생활질서(제4절, 34개 조문)의 4가지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벌로는 무보수노동이 가장 많이 규정되어 있다. 전체 146개 대상행위 가운데 31개를 제외한 125개 행위에 대해 무보수노동을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특징적인 점은 제3장 제4절의 공동생활질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벌로는 노동교양이 가장 많이 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공동생활질서 33개 대상행위 가운데 24개 행위에 대해 노동교양을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²⁵⁴

표 V-1 행정처벌의 종류와 대상행위

행정처벌	대상행위
경고, 엄중경고	계획수행미달·거짓보고행위를 비롯하여 104개
무보수노동	인민경제계획작성 질서위반행위를 비롯하여 125개
노동교양	전력낭비행위를 비롯하여 68개
강직, 해임	불법적인 경영활동행위를 비롯하여 77개
철직	예비물자관리질서 위반행위를 비롯하여 24개
벌금	상표권침해행위를 비롯하여 26개
중지, 변상, 몰수, 자격정지, 강급, 자격박탈	위법행위를 심의하는 과정에 적용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I
II
III
IV
V
VI

²⁵⁴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 2011』, p. 164.

다. 절차

형사처벌은 법이 정한 소송절차에 따라 수사, 예심기관에 의한 사건 조사, 검찰기관의 기소와 재판소의 심리 및 판결에 의하여 국가의 이름으로 판결한다. 이에 반해 행정처벌은 특별한 절차 없이 권한 있는 국가기관이 행정적인 명령과 지시의 방법으로 직접 적용한다. 그 이유는 행정법규범 위반자들에게 해당 법적 제재를 적시에 적용할 수 있게 하고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며 국가기관들의 사업권위를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한다.²⁵⁵

(1) 행정처벌 제기

행정처벌 제기는 검찰·재판·중재·인민보안기관과 검열감독 기관이 하며, 기관·기업소·단체와 공민도 행정처벌 제기를 할 수 있다(제186조). 행정처벌을 제기하려는 기관·기업소·단체와 공민은 위법자료를 해당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 또는 권한 있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범위반자의 이름, 직장지위, 위법내용, 적용하려는 행정처벌의 종류 같은 것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증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제187조). 제기를 받은 위 기관들은 자료를 제때에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범위반자 또는 관계자를 만나거나 필요한 문건을 볼 수 있다. 위법자료가 사실과 맞지 않거나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행정처벌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않을 경우에는 그것을 돌려보낸다(제188조).

²⁵⁵- 리철광, “행정처벌의 본질과 특징,” p. 42.

(2) 행정처벌 심의·결정

행정처벌은 법무생활지도위원회와 내각·검찰·재판·중재·인민보안 기관과 검열감독기관이 준다. 해당 기관·기업소·단체도 행정처벌을 줄 수 있다(175조).

행정처벌은 법무생활지도위원회 또는 내각전원회의, 상무회의,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일군협의회에서 심의하고 결정한다. 그러나 재판기관이나 중재기관에서 주는 행정처벌은 판정 또는 재결로 준다(제189조). 심의결정기간은 위 기관들이 위법자료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심의하고 해당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정서를 작성한다(제190조). 이때 법 위반자를 참가시키고 심의·결정하는데 벌금, 중지, 변상, 몰수의 심의 결정은 범위반자의 참가 없이도 할 수 있다(제191조). 심의 결과 위법행위가 형사책임을 지울 정도로 엄중할 경우에는 그 자료를 법기관에 넘긴다(제192조).

심의대상 행위와 부과할 수 있는 행정처벌은 각 기관마다 차이가 있다. 법무생활지도위원회는 국가관리일군과 기관·기업소·단체의 일군이 직무수행을 바로하지 못하거나 법질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경고, 엄중경고, 무보수노동, 강직, 해임, 철직을 부과한다(제176조). 내각은 내각소속 기관·기업소·단체의 일군이 내각결정이나 지시를 무책임하게 집행하였거나 행정규율을 위반한 것에 대해 경고, 엄중경고, 무보수노동, 강직, 해임, 철직을 부과하며, 필요한 경우 벌금, 중지, 변상, 몰수처벌도 부과할 수 있다(제177조). 검찰기관은 검찰감시과정에 발견한 위법행위에 대하여 노동교양, 벌금, 중지, 변상, 몰수처벌을 준다(제178조). 재판기관은 재판심리에서 확증된 위법행위에 대하여 노동교양, 벌금, 몰수처벌을 부과한다(제179조). 중재기관은 중재심리에서 확증된 위법행위에 대하여 무보수노동, 벌금, 중지, 몰수처벌을 준다(제180조).

인민보안기관은 인민보안단속과정에서 발견된 위법행위에 대하여 노동교양, 벌금, 중지, 변상, 몰수를 준다(제181조). 검열감독기관은 행정검열과정에서 발견한 위법행위에 대하여 벌금, 중지, 변상, 몰수를 부과한다(제182조). 기관·기업소·단체는 위법행위를 한 소속 종업원에게 변상을 부과한다(제184조).

표 V-2 행정처벌 대상행위와 처벌 종류

기관	대상행위	행정처벌	부과 형태
법무생활지도위원회	국가관리일군과 기관·기업소·단체의 일군이 직무수행을 바로하지 못하거나 법질서 위반행위	경고, 엄중경고, 무보수노동, 강직, 해임, 철직	결정
내각	내각소속 기관·기업소·단체의 일군이 내각결정이나 지시를 무책임하게 집행하였거나 행정규율 위반행위	경고, 엄중경고, 무보수노동, 강직, 해임, 철직(필요한 경우 벌금, 중지, 변상, 몰수)	결정
검찰기관	검찰감시과정에 발견한 위법행위	노동교양, 벌금, 중지, 변상, 몰수	결정
재판기관	재판심리에서 확증된 위법행위	노동교양, 벌금, 몰수	판정 또는 재결
중재기관	중재심리에서 확증된 위법행위	무보수노동, 벌금, 중지, 몰수	판정 또는 재결
인민보안기관	인민보안단속과정에서 발견된 위법행위	노동교양, 벌금, 중지, 변상, 몰수	결정
기관·기업소·단체	위법행위	변상	결정

행정처벌 부과와 관련하여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해 볼 수 있다. 첫째, 행정처벌은 형벌을 적용할 정도에 이르지 못한 위법행위를 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에게 부과된다(행정처벌법 제7조). 이 규정에 따르면 위반행위의 정도가 가벼우면 행정처벌을 주고, 무거우면 형사책임을

주게 되어 있다. 그러면 행위의 경중은 누가 결정하는지, 다시 말해 행정처벌과 형사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어떤 기관에서 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행정처벌법은 행정처벌을 주기로 결정된 경우에 행정처벌을 줄 수 있는 기관들은 규정하고 있지만 위법행위의 경중을 정하는 경우에 대한 규정은 명시하지 않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에 따르면 각 도·시·군에 있는 인민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한다. 예를 들어 군에 속해 있는 기업소의 설비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군 인민위원회 산하의 법무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 행정처벌을 할지 아니면 검찰에 넘길지를 결정한다고 한다. 법무위원회 위원은 인민위원회 서기장 등 주요 간부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²⁵⁶

둘째, 행정처벌 중복 부과 여부이다. 다시 말해 행정처벌을 줄 수 있는 기관이 여러 기관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동일한 위법행위에 대해 이들 기관들이 중복해서 행정처벌을 줄 수 있는지, 아니면 어느 기관이 행정처벌을 부과하면 다른 기관은 행정처벌을 줄 수 없는지의 문제이다. 북한이탈주민에 의하면 위의 각 기관들은 자기들만의 고유한 업무에 따른 권한이 있어 중복 처벌을 하는 경우는 없다고 한다.²⁵⁷

(3) 행정처벌 통보

행정처벌을 결정한 기관은 행정처벌통지서를 작성하여 처벌받은 자의 기관·기업소·단체와 해당 기관에 보내야 한다. 처벌을 받은 자가 직장을 다니지 않을 경우에는 그가 거주한 지역의 주민행정기관에 보낸

²⁵⁶ 북한이탈주민 출신의 (사)북한민주화위원회 인권조사실장 송현욱 자문결과 (자문일자: 2011.11.8).

²⁵⁷ 위의 자문결과.

다. 행정처벌결정통지서에는 범위반자의 이름, 직장, 직위, 행정처벌의 결정내용, 집행 장소와 기관, 방법, 결정일자, 행정처벌을 결정한 기관의 명칭 같은 것을 밝히고 공인을 찍는다(제193조). 무보수노동, 노동교양처벌을 집행하는 기관은 처벌을 받은 자들의 직업, 일과생활, 총화 등을 엄격히 조직하고 통제하며 그들의 생활 자료를 정상적으로 장악하여 행정처벌을 결정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제194조).

(4) 행정처벌의 해제와 취소

행정처벌을 결정한 기관은 행정처벌집행기간이 끝나면 즉시 해제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처벌해제결정서를 작성하여 해당기관, 기업소, 단체에 보내주어야 한다(제195조). 한편 법무생활지도위원회와 해당 상급기관은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 또는 아랫단위에서 잘못 적용한 행정처벌에 대하여 변경시키거나 취소시킬 수 있다(제196조).

(5) 신소

기관·기업소·단체와 국민은 행정처벌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해당 법무생활지도위원회 또는 기관·기업소·단체에 신소할 수 있다(제198조). 신소를 받은 법무생활지도위원회와 기관·기업소·단체는 신소를 받은 날부터 중앙급은 60일, 도급은 40일, 군급은 20일 안에 심의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소를 한 기관·기업소·단체와 국민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제199조).

라. 실태

통일연구원이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면접조사 결과 해

임, 강직, 무보수노동, 벌금 등의 행정처벌이 가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최근 핸드폰 사용, 녹화물 유통, 장마당 단속 등과 관련하여 노동교화형, 노동단련형 등 형사처벌이 가해지기도 하지만 경미한 경우에는 벌금형에 처해졌다는 사례들이 상당수 증언되고 있다. 예를 들어 북한이탈주민 ○○○은 2010년 2월 산에 올라가서 핸드폰으로 가족과 연락을 하다 발각되었지만 자수로 처리하여 북한돈 오십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고 증언하였는데 인민보안부가 처벌했다고 하였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은 북한 당국이 비정기적으로 그리고 수시로 남한 물품을 많이 단속하는데 음식 장사로 단속되면 500원 또는 1,000원 정도 벌금을 낸다고 증언하였다.²⁵⁸

신소의 경우, 예외적으로 성공한 사례도 있지만 북한주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데 실효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에서 신소자는 꼬리표가 붙어 다닌다. 주민등록에 신소자로 기록되어 자식들에게까지 영향이 미친다. 또한 무서운 사람으로 규정되고, 일종의 불평불만자로 분류된다. 따라서 간부가 되려는 사람은 신소를 하지 않는다. 신소에 실패할 경우에는 상대방으로부터 보복을 당하기도 하고 더 나쁜 곳으로 철직되기도 한다. 심지어 신소를 잘못하면 3대가 해를 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²⁵⁹ 2005년 북한이탈주민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도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신소가 받아들여져 자신의 주장의 정당성이 입증된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나 그 반대의 경우에는 불평불만자, 문제를 만드는 자, 조직을 저해하는 자 등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이탈주민들은 “신소를 제기하고 싶어도 위에서 달갑게 보는 것 같지 않고, 이렇게 신소를 제기했다가 혹 가족이나 자

258-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 2011』, p. 164.

259- 이금순·전현준, 『북한주민 인권의식 실태연구』, pp. 135~138.

I
II
III
IV
V
VI

식에게 해가 되지 않을까 하고 잔다. 그러니까 하고 싶어도 안한다.”는 인식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²⁶⁰

마. 평가

북한 행정처벌법이 행정처벌의 적용에서 과학성, 객관성, 신중성, 공정성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행정처벌의 적용대상과 방법을 적시하고 있는 점, 하나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행정처벌만을 적용하고 있는 점, 기관·기업소·단체는 위법행위에 대하여 권한 밖의 행정처벌을 줄 수 없도록 한 점, 행정처벌의 제기 및 심의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점, 행정처벌에 대한 불복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점 등은 북한주민의 인권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요소다. 반면, 북한 행정처벌법은 행정처벌의 종류로 경고, 엄중경고, 무보수노동, 노동교양, 강직, 해임, 철직, 벌금, 중지, 변상, 몰수, 자격정지, 강급, 자격박탈 등 다양한 형태의 제재를 규정하고 있는 점, 총 146개 조문에서 행정처벌 대상 행위를 규정하여 북한주민을 통제하고 있는 점, 법무생활지도위원회와 내각·검찰·재판·중재·인민보안기관, 검열감독기관 등 여러 기관을 행정처벌을 부과할 수 있는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고 해당 기관·기업소·단체도 행정처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은 부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요소들이다. 북한주민들에게 광범위한 행정처벌이 가해지고 있기 때문이다.²⁶¹ 북한은 형법으로도 얼마든지 북한주민의 불법행위와 질서를 침해 내지 위반한 행위를 통제하고 처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특별형법 내지 유사형법화 된 내용을 가

²⁶⁰ 윤대규, 『북한주민의 법의식 연구』, pp. 56~57.

²⁶¹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 2011』, pp. 162~163.

진 행정처벌법을 마련하여 법을 하나의 인민통제 수단으로 삼고 있다. 이는 전형적인 북한식 통치의 일환으로 보여진다. 내용적으로 너무 범위가 넓고 비범죄화할 수 있는 것도 처벌할 수 있게 하였고, 구성요건이 아주 추상적이고 모호하며 포괄적이다. 북한이 특별형사분야인 행정처벌법에 벌금을 도입한 점이 특이하다. 북한은 불법행위를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노동교화형과 우리의 사회봉사명령이나 수강명령에 유사한 노동단련형을 적용하여 처벌하였으나, 북한에도 개혁·개방의 물결이 일고 대외관계에 대한 경제교류 확대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점진적으로 서구화되고 선진화된 법제도를 따르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폐쇄적인 정치체제의 유지라는 근본 목적을 보호하기 위한 법의 수단화는 간과할 수 없다.²⁶²

²⁶² 정광진, “북한 형법의 특징에 관한 연구,” p. 105.

VI. 결론



북한은 2004년 형법을 개정하면서 유추해석을 금지하는 등 죄형법정주의를 도입하여 국내외의 많은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 2007년 형법부칙(일반범죄)을 제정하여 사형에 해당하는 일반범죄를 대폭 확대하였고, 2009년에는 선군정치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내부통제 및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형법을 다시 개정함으로써 북한주민의 인권 측면에서 후퇴를 거듭하고 있다. 한편, 북한형사재판의 실태에 있어 공개처형이 형사법 규정에 따라 진행됨을 보여주는 문건이 공개되고, 일부 재판의 경우 변호인이 피소자의 입장에서 변호를 하였다는 증언이 있으며, 유나 리 재판의 경우 국제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영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재판절차가 대체적으로 준수되는 등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는 요소들도 있다. 그러나 형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행위를 인민보안부 포고에 의해 공개처형하고 있는 행태가 지속되고 있고 재판에 대한 당의 통제도 여전하다. 영사협약이 보장하고 있는 영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미국시민권자인 유나 리에게는 보장하고 남측 주민에게는 보장하지 않은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재판을 받지 않고 노동단련대에서 강제노동에 처해지는 문제도 북한주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 내지는 법치라는 측면에서 간과할 수 없다. 유사재판제도와 특별형사제도가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는 것도 북한주민들의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가 침해받는 점에서 북한주민의 인권에 반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북한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북한인권의 핵심적 요소인 북한 형사법제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야 한다. 국내 차원과 국제 차원에서 정부와 시민단체, 인권 관련 국제기구가 역할을 분담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또한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북한인권법도 조

I
II
III
IV
V
VI

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남북관계에 있어서 특수성도 고려해야 하지만 인권은 보편성을 가진다는 점, 우리 헌법 제3조 영토조항의 해석상 북한주민들도 대한민국의 국민이며 따라서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인 북한주민들을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다는 점, 2005년 12월 29일 제정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은 한반도 분단으로 인한 인도적 문제해결과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정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제9조 제1항), 미국과 일본도 북한인권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북한인권법 제정의 법적 근거 내지는 타당성의 근거를 찾을 수 있다.²⁶³ 그러나 북한주민의 궁극적인 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북한주민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동시에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본 보고서의 서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권은 1세대 인권을 필두로 4세대 인권까지 그 개념이 확장되고 있다. 이 가운데 1세대 인권인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2세대 인권인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는 수레의 두 바퀴와 같다. 어느 한 바퀴가 빠지면 수레가 정상적으로 갈 수 없다. 북한주민의 인권이라고 하는 수레가 정상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두 바퀴인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가 동반 개선되어야 한다. 이 두 개념의 권리는 서로 영향을 미친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의 개선 없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의 개선은 공허한 메아리에 그치기 쉽다. 다시 말해 형사법제가 주축을 이루고 있는 북한주민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의 개선과 함께 북한주민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를 개선할 수 있는 정책도 병행되어야 우리 모두가 염원하는 북한주민의 인권 개선을 궁극적으로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주민의 시민적·정치적 권리 개선 중심으로 되어 있는 현재의 북한

²⁶³- 김찬규·이규창, 『북한국제법연구』, pp. 175~177.

인권법(안)에 북한주민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개선도 반영되도록, 또는 이 두 가지 인권 개선이 병행 추진되도록 우리 정부와 국민의 지혜가 필요하다.

북한주민들이 증언을 통해 일부 실태가 드러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명시적인 근거가 발견되지 않은 문제들도 있다. 또한 북한 형사법에 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실태가 아직 드러나지 않고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도 엇갈리고 있는 주제들도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향후 추가 연구와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

첫째, 현지공개재판의 경우 공개재판 이전에 재판소에서의 재판을 통해 형이 확정되고 현지에서는 단지 판결문을 낭독한 후 형을 집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현지에서 재판 절차를 거쳐 형을 확정하고 집행하는지의 여부에 대해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이 엇갈리고 있다. 아울러 현지공개재판의 경우 상소가 불가능하다는 일부 증언이 있는데 이 증언의 사실여부에 대한 추가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둘째, 공개처형의 경우 공개된 문건을 통해 사형 관련 북한 형사법 규정이 일부 준수되고 있음이 파악되었다. 그러나 최고재판소가 사형 집행 승인을 요청하는지, 아니면 1심 재판소가 최고재판소를 거쳐 사형 집행 승인을 요청하는지가 규명될 필요가 있다. 최고재판소가 승인을 요청하는 기관도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셋째, 강제노동에 있어 재판을 받고 노동단련대에 가서 노동단련형을 받는 경우와 재판을 받지 않고 노동단련대 등에서 노동단련을 받는 경우의 2가지가 존속하고 있다. 법치라는 관점에서 재판을 거치지 않고 노동단련대에서 강제노동을 하는 추이를 지속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행정처벌로서의 노동단련에 대한 법적 근거도 추가 연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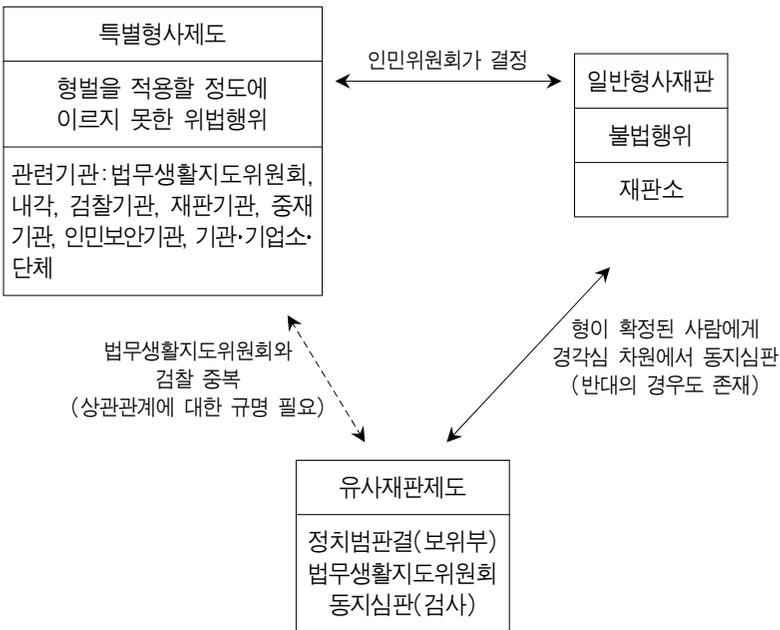
I
II
III
IV
V
VI

사가 필요해 보인다.

넷째, 일부 북한이탈주민들은 국가안전보위부에서 정치범 판결을 한다는 증언이 있는데 이를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표본을 대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증언이 사실인 경우 정치범과 일반범을 누가 어떤 기준에 의해 구분하는지, 정치범에 대한 사형을 판결하는 경우 북한 형사법 규정에 따라 사형을 집행하는지의 여부, 보위부 사건심사위원회의 구성은 어떠한지, 상소는 가능한지의 여부 등이 추가 조사되어야 한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주제로 특별형사재판제도인 군사재판제도와 철도재판제도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림 VI-1 북한형사재판제도의 관계 및 구도



북한의 유사재판제도와 특별형사제도에 대한 실태 파악, 이 제도들과 정규재판제도와와의 관계도 지속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첫째, 동지심판과 일반 형사재판의 관계가 추가 연구되어야 한다. 동지심판이 형이 확정된 사람들에게 단지 경각심을 주기 위한 차원에서 실시되는 것인지, 아니면 동지심판 이후에 정식 재판을 통해 형이 확정되는지의 여부가 밝혀져야 한다.

둘째,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가 북한에서 차지하는 위상도 심층적으로 조사·연구되어야 한다. 특히 검찰, 인민보안기관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의 위상을 차지하는지 파악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이탈주민은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와 인민보안기관은 서로 역할이 다르지만 유기적으로 공유하기도 하는데 이를 총괄하는 것은 당기관이라고 한다.²⁶⁴

셋째, 특별형사제도인 행정처벌과 관련된 실태도 지속적으로 조사되어야 한다. 북한이탈주민은 행정처벌을 부과하는 것과 형사책임을 묻기로 하는 것은 각 시·도·군에 있는 인민위원회 산하의 법무위원회에서 결정하고, 행정처벌은 중복 부과되지 않는다고 증언하였는데 추가 연구 및 조사를 통해 뒷받침되어야 한다.

넷째, 유사재판제도와 특별형사제도와와의 연결고리도 규명되어야 한다. 앞의 <표 V-2>에서 보듯이 행정처벌은 법무생활지도위원회, 내각, 검찰기관, 재판기관, 중재기관, 인민보안기관, 기관·기업소·단체가 줄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검찰감시법은 동지심판에 넘기는 결정을 검사가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검찰감시법 제40조), 법무생활지도위원회도 유사재판제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법무생활지도위원

²⁶⁴ 북한이탈주민 출신의 (사)북한민주화위원회 인권조사실장 송현욱 자문결과 (자문일자: 2011.11.8).

회와 검찰기관이 특별형사제도와 유사재판제도 모두에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정치범판결은 차치하더라도 특별형사제도인 행정처벌 및 인민보안단속제도와 유사재판제도인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 및 동지심판은 관련되어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 그러나 유사재판제도와 특별형사제도가 전혀 별개로 운영되는지, 아니면 연관성이 있는지, 연관성이 있다면 작동 메커니즘은 어떤지 거의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1. 단행본

- 김수암. 『북한의 형사법제상 형사처리절차와 적용 실태』. 서울: 통일연구원, 2005.
- 김억락·한 걸. 『국기와 법의 이론』. 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5.
- 김영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사회주의법무생활에 관한 이론』.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0.
- 김찬규·이규창. 『북한국제법연구』. 파주: 한국학술정보, 2009.
- 김 철. 『러시아 소비에트 법』. 서울: 민음사, 1989.
- 도중진·박광섭·조 훈. 『통일대비 북한 형사법령 통합방안 예비연구』.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8.
- 리윤기 외 13인. 『법투쟁부문 일군들을 위한 참고서』. 평양: 인민보안성출판사, 2009.
- Butler, W. E. 이윤영(역). 『소비에트 법』. 서울: 대륙연구소 출판부, 1990.
- 법무부. 『북한법의 체계적 고찰(Ⅱ)』. 과천: 법무부, 1993.
- 법원행정처. 『북한사법제도 개관』. 서울: 법원행정처, 1996.
- _____. 『북한의 중재제도』. 서울: 법원행정처, 1995.
- _____. 『북한의 형사법』. 서울: 법원행정처, 2006.
- 법제처. 『북한법제개요』. 서울: 법제처, 1991.
- 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국제법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02.
-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현대조선말사전』. 평양: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1981.
- 세종연구소. 『북한 법체계와 특색』. 성남: 세종연구소, 1994.

- 심형일. 『주체의 법리론』.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7.
- 윤대규. 『북한주민의 법의식 연구』. 서울: 한국법제연구원, 2005.
- 이금순·전현준. 『북한주민 인권의식 실태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2010.
- 조선로동당출판사. 『김일성선집 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54.
- _____. 『김일성선집 5』.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3.
- _____. 『김일성 저작집 6』.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 _____. 『김일성 저작집 3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치대학. 『법리론』. 평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치대학, 1980.
- 조순래 외. 『북한용어소사전』. 서울: 연합뉴스, 2003.
- 채형복. 『국제인권법』. 서울: 높이깊이, 2009.
- 최봉대. 『북한이탈주민 법의식 사례 연구』. 통일부 정책연구용역결과보고서, 2011.
- 통일부 통일교육원. 『북한의 법제정비 동향과 특징』. 서울: 통일교육원, 2007.
- _____. 『북한이해 2010』. 서울: 통일교육원, 2010.
-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 2009』. 서울: 통일연구원, 2009.
- _____. 『북한인권백서 2010』. 서울: 통일연구원, 2010.
- _____. 『북한인권백서 2011』. 서울: 통일연구원, 2011.
- 한명섭. 『남북교류와 형사법상의 제문제』. 파주: 한올아카데미, 2008.
- 홍극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제정사』.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6.
- Jennings, R. & A. Watts. *Oppenheim's International Law*. 9th ed. Vol. I. Essex: Longman, 1992.

Lee, Euna. *The World is bigger now*. New York: Broadway Books, 2010.

Malanczuk, P. *Akehurst's Modern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Law*. 7th revised ed. London & New York: Routledge, 1997.

2. 논문

강희준. “형사소송에서 과학적 증거로 되는 조건.” 『정치법률연구』. 2006년 제1호, 2006.

김갑식. “북한 당대표사회와 김정은 후계체제 전망.” 『정책포럼』. No. 2010-34. 제주평화연구원, 2010.

김경현.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하는 것은 선군시대 혁명과 건설의 중요한 요구.” 『김일성종합대학학보: 력사·법학』. 제55권 제2호, 2009.

김상균. “북한의 사법제도” 법원행정처. 『남북교류와 관련한 법적 문제점 (6)』. 서울: 법원행정처, 2007.

김정일.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할 데 대하여.” 『김정일 선집 7』.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_____. “선군혁명로선은 우리 시대의 위대한 혁명로선이며 우리 혁명의 백전백승의 기치이다.” 『김정일 선집 15』.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5.

김홍광. “김정은 후계체제 공식화 과정에서의 북한 법제 개편 전망.” 법제처. 『2011 남북법제연구보고서』. 서울: 법제처, 2011.

리명일. “공화국형사소송법은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의 위력한 법적무기.” 『김일성종합대학학보: 력사·법학』. 제52권 제2호, 2006.

- 리명일. “새롭게 수정보충된 사회주의헌법은 선군정치실현을 확고히 담보하는 위력한 법적무기.” 『김일성종합대학학보: 력사·법학』. 제56권 제2호, 2010.
- 리재도. “공화국 재판 입법의 발전.” 『우리나라 법의 발전』. 평양: 국립출판사, 1960.
- 리정준. “형사책임의 특징.” 『정치법률연구』. 2009년 제2호, 2009.
- 리창세. “공화국형사소송법은 당의 선군정치실현을 법적으로 튼튼히 담보하는 위력한 무기.” 『정치법률연구』. 2006년 제4호, 2006.
- 리철광. “행정처벌의 본질과 특징.” 『정치법률연구』. 2010년 제3호, 2010.
- 박기갑. “북한의 행위와 국제법: 대한민국 국적인 피해사례와 황강댐 무단 방류사건을 중심으로.” 『인암법학』. 통권 제31호, 2010.
- 박윤훈. “북한 행정처벌법에 대한 개괄적 고찰.” 『북한법연구』. 제10호, 2007.
- 박정원. “북한의 체제수호를 위한 규범통제: 2007년 북한 형법 부칙을 중심으로.” 『통일문제연구』. 통권 제53호, 2010.
- 박 철. “자주시대 혁명적당건설의 가장 옳바른 지도적 지침.” 『김일성종합대학학보: 력사·법학』. 제53권 제1호, 2007.
- 신광일. “공화국비상소심제도는 국가의 통일적인 법집행을 보장하는 위력한 수단.” 『정치법률연구』. 2006년 제1호, 2006.
- 안광수. “선군사상은 혁명군대를 주력군으로 하여 강력한 혁명력량을 꾸리는 길을 밝혀준 혁명사상.” 『정치법률연구』. 2006년 제2호, 2006.
- 안광혁. “철도운수부문에 대한 행정경제감시의 중요성.” 『정치법률연구』. 2010년 제4호, 2010.
- 안소율. “북한의 재판제도.” 법원행정처. 『통일사법정책연구(1)』. 서울: 법원행정처, 2006.

- 오승진. “영사보호에 관한 국내법적 실행.” 『국제법학회논총』. 제53권 제1호, 2008.
- 유영태. “공화국형사재판에서 노는 변호인활동의 본질.” 『정치법률연구』. 2006년 제1호, 2006.
- 윤대규. “북한에서의 법의 성격.” 『북한법연구』. 제6호, 2003.
- 이규창. “남한주민의 북한지역 출입·체류와 신변안전보장: 국제법적 분석의 시각에서.” 『법조』. 통권 제644호, 2010.
- _____. “김정은 후계구도하의 북한인권법제 분석과 평가.” 법제처. 『2011 남북법제연구보고서』. 서울: 법제처, 2011.
- 이덕인. “북한의 사형제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 『동아법학』. 제48호, 2010.
- 이백규. “북한의 2009년 개정형법 개관.” 북한법연구회 제157회 월례발표회. 2010. 9. 16.
- 이상철. “북한 형사법에 관한 연구.” 『육사논문집』. 제61집 1권, 2005.
- 이해정. “북한 사회에서 법의 역할에 관한 연구: 사회주의범무생활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이훈재. “북한의 ‘해사소송관계법’ 제정의 의미와 평가.” 북한법연구회 제169회 월례발표회. 2011. 9. 29.
- 장명봉. “북한의 최근 법제 동향과 평가.” 법원행정처. 『남북교류와 관련한 법적 문제점(5)』. 서울: 법원행정처, 2006.
- _____. “북한의 2009 헌법개정과 선군정치의 제도적 공고화.” 『헌법학연구』. 제16권 제1호, 2010.
- 장청송. “자본주의국가의 배심제도와 그 반동성.” 『김일성종합대학학보: 력사·법학』. 제55권 제1호, 2009.
- 정광진. “북한 형법의 특징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 조용춘. “주체의 형법리론이 새롭게 밝힌 공화국형벌의 적용목적.” 『정치법률연구』. 2009년 제4호, 2009.
- 조은향. “배심제도의 발생에 대한 고찰.” 『정치법률연구』. 2009년 제4호, 2009.
- 최은석. “북한과 중국의 행정처벌법에 관한 비교 고찰.” 『공법연구』. 제37집 제1~2호, 2008.
- 최창동. “북한의 2004년 형법개정 및 인권상황의 법적문제.” 『정책연구』. 통권 제155호, 2007.
- 한인섭. “북한의 개정 형법의 동향과 평가.” 『북한법연구』. 제8호, 2005.
- _____. “2004년 북한 형법 개정, 그 내용과 의미.” 『법학』 (서울대). 제46권 제1호, 2005.
- Aceves, William J. “LaGrand(Germany v. United States) Judgement.”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96, 2002.
- Mennecke, M. & C. J. Tams. “LaGrand Case(Germany v U. S. A.)” *International Comparative Law and Quarterly*. Vol. 51, 2002.
- Rosenne, Shabtai.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in R. Bernhardt(ed.), *Encyclopedia of Public International Law*. Installment 7. Amsterdam·New York·Oxford: North-Holland Publishing Company, 1984.

3. 기타

『연합뉴스』 <www.yonhapnews.co.kr>. “스웨덴 대사, 北역류 美여기자들 면담.” 보도일: 2009. 5. 16, 2009. 6. 24.

『연합뉴스』 <www.yonhapnews.co.kr>. “北, 한국계 미국인 전용수씨 역류 인정.” 보도일: 2011. 4. 14.

Avena and Other Mexican Nationals(Mexico v. United States of America), Judgment, I. C. J. Report 2004.

Case Concerning United States Diplomatic and Consular Staff in Tehran(USA v. Iran). Judgment of 24 May 1980, I. C. J. Reports 1980.

IACHR. Advisory Opinion OC-16/99: The Right to Information on Consular Assistance in the Framework of the Guarantees of the Due Process of Law at
<<http://www1.umn.edu/humanrts/iachr/A/OC-16ingles-sinfirmas.html>>.

LaGrand Case. Judgment of 27 June 2001. ICJ at
<<http://www.icj-cij.org>>.

연구총서

2009-01	북한 비핵화를 위한 한·미 전략적 협력에 관한 연구	전성훈	7,500원
2009-02	세계경제위기와 미·중관계 변화 연구: 북한 핵문제에 미치는 영향	황병덕, 신상진	9,000원
2009-03	북한의 국력 평가 연구	전현준 외	10,000원
2009-04	북한경제의 시장화 실태에 관한 연구	임강택	9,000원
2009-05	21세기 한국의 동아시아국가들과 전략적 협력 강화방안	여인곤 외	10,000원
2009-06	북한체제 전환을 위한 전략적 과제와 한국의 동북아 4국 협력전략	배정호 외	10,000원
2009-07	북한 '변화'의 재평가와 대북정책 방향	박형중 외	10,000원
2009-08	북한 개방 유도 전략 목표, 기본방향 및 단계별 과제	최진욱 외	10,000원
2009-09	북한주민 인권의식 고취를 위한 전략적 인권외교의 방향	홍우택 외	6,500원
2009-10	통일대비 북한토지제도 개편방향 연구	허문영 외	9,000원
2009-11	북한인권 침해구조 및 개선전략	이금순, 김수암	7,500원
2009-12	통일대계 탐색연구	조민 외	8,000원
2009-13	Modernization and Opening-Up of North Korean Economy: Roles and Efforts of Neighboring Countries	김규륜 외	7,500원
2009-15	Peace-Keeping on the Korean Peninsula: The Role of Commissions	Gabriel Jonsson	20,000원
2010-01	북한 핵 보유 고수 전략의 도전과 대응	박형중 외	9,500원
2010-02	탈사회주의 경제이행 국가의 권력구조 유형과 개혁 경로: 포스트-김정일 체제에 대한 시사점	최진욱, 김진하	8,000원
2010-03	북한 개방화와 인권개선 방안연구	김국신, 김연수, 서보혁	7,000원
2010-04	북한의 체제위기와 사회갈등	조한범, 양문수, 조대엽	7,500원
2010-05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동북아전략 환경의 변화와 한국의 동북아 4국 통일외교전략	배정호 외	12,500원
2010-06	북한주민 인권의식 실태연구	이금순, 전현준	8,500원
2010-07	라진·선봉지역 물류분야 남북 협력방안 연구	김영윤, 추원서, 임을출	8,000원
2010-08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새로운 접근과 추진방안: 3대 공동체 통일구상 중심	박종철 외	11,500원
2010-09	통일한국의 정치체제	허문영	6,000원
2010-10	북한 핵에 대한 억지방향 연구	홍우택	5,000원
2010-11	북한의 포스트 김정일체제 전망	정영태 외	11,000원
2010-12	북한주민의 의식과 정체성: 자아의 독립, 국가의 그늘, 욕망의 부상	조정아 외	17,000원
2010-13	북·중 경제관계와 남북경협에 대한 파급효과 비교분석	최수영	7,500원
2010-14	East Asian Community Building: Issue Areas and Perspectives of Regional Countries	김규륜 외	10,000원
2010-15(I)	신아시아 외교와 새로운 평화의 모색(I)	김규륜 외	13,000원
2010-15(II)	신아시아 외교와 새로운 평화의 모색(II)	김규륜 외	13,000원

2011-01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와 북한 핵문제	전성훈	14,500원
2011-02 북한군의 기강 해이에 관한 연구	이교덕 외	11,000원
2011-03 통일 진입과정에서의 북한 재건 방향	최진욱, 김진하	5,500원
2011-04 북한의 부문별 조직실태 및 조직문화 변화 종합연구	정영태	16,000원
2011-05 북한형사재판제도 연구: 특징과 실태	이규창, 정광진	8,000원
2011-06 북한주민의 삶의 질: 실태와 인식	김수암 외	12,000원
2011-07 한반도 평화와 북한 비핵화: 협력적 위협감축(CTR)의 적용방안	박종철 외	10,000원
2011-08 대북한 핵협상 전략구상방향	홍우택 외	9,000원
2011-09 중국의 부상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	허문영, 마민호	12,000원

학술회의총서

2009-01 북핵 문제 해결 방향과 북한 체제의 변화 전망		6,500원
2009-02 북핵 일괄타결(Grand Bargain)방안 추진방향		5,500원
2010-01 이명박 정부 2년 대북정책 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		8,000원
2010-02 독일 통일 20년과 한반도 통일비전		6,000원
2010-03 분단관리에서 통일대비로		5,500원
2010-04 독일 통일 20년과 한국의 통일대비		7,000원
2011-01 한반도 통일비전과 국제협력		4,000원

협동연구총서

2009-15-01 북한개발지원의 포괄적 추진방안(총괄보고서)	임강택 외	8,500원
2009-15-02 북한개발지원의 이론과 포괄적 전략	박형중 외	10,000원
2009-15-03 북한개발지원의 쟁점과 해결방안	김정수 외	10,000원
2009-15-04 북한개발지원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	장형수 외	10,000원
2009-15-05 북한개발지원체제의 구축방안	이종무 외	9,000원
2009-15-06 지방자치단체의 북한개발지원 전략과 접근방법	양현모 외	10,000원
2009-16-01 복잡계 이론을 통한 북한의 정상국가화 방안 연구(총괄보고서)	김국신 외	6,000원
2009-16-02 북한체제의 행위자와 상호작용	이교덕 외	8,000원
2009-16-03 북한 계획경제의 변화와 시장화	이 석 외	9,000원
2009-16-04 탈냉전 이후 국제관계와 북한의 변화	민병원 외	8,000원
2009-17-01 비핵·개방·3000 구상: 추진전략과 실행계획(총괄보고서)	여인근 외	7,500원
2009-17-02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및 추진환경과 전략	박종철 외	8,000원
2009-17-03 비핵·개방·3000 구상: 한반도 비핵화 실천방안	조 민 외	9,000원
2009-17-04 비핵·개방·3000 구상: 북한의 개방화 추진방안	함택영 외	7,500원
2009-17-05 비핵·개방·3000 구상: 남북경제공동체 형성방안	조명철 외	7,000원
2009-17-06 비핵·개방·3000 구상: 행복공동체 형성방안	이금순 외	7,500원
2010-14-01 북한정보체계 실태조사(총괄보고서)	황병덕 외	12,000원
2010-14-02 북한정보체계 실태조사(上)	황병덕 외	14,000원
2010-14-03 북한정보체계 실태조사(下)	황병덕 외	13,000원

2010-15-01 이명박 정부 외교안보통일정책의 세부 실천방안 (총괄보고서)	여인근 외	9,000원
2010-15-02 이명박 정부 외교안보통일정책의 추진환경 및 전략과 실천방안	박영호 외	9,500원
2010-15-03 이명박 정부 대북통일정책의 세부실천방안	허문영 외	7,000원
2010-15-04 이명박 정부 외교정책의 세부실천방안(1): 협력 네트워크 외교 분야	남궁영 외	7,500원
2010-15-05 이명박 정부 외교정책의 세부 실천방안(2): 포괄적 실리외교 분야	전재성 외	9,500원
2010-15-06 이명박 정부 안보정책의 세부 실천방안	이수훈 외	7,500원
2010-16-01 북한의 정상국가화 지원방안 연구(총괄보고서)	이교덕 외	7,000원
2010-16-02 북한의 정치부문 정상국가화 지원방안	전현준 외	7,500원
2010-16-03 북한 시장 진화에 관한 복잡계 시뮬레이션	조정아 외	14,000원
2010-16-04 북한의 정상국가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방안	민병원 외	7,500원

논총

통일정책연구, 제18권 1호 (2009)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8, No. 1 (2009)		2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8권 2호 (2009)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8, No. 2 (2009)		2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9권 1호 (2010)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9, No. 1 (2010)		2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9권 2호 (2010)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9, No. 2 (2010)		2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0권 1호 (2011)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0, No. 1 (2011)		20,000원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09	이금순 외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9</i>	이금순 외	20,000원
북한인권백서 2010	박영호 외	2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0</i>	박영호 외	20,000원
북한인권백서 2011	김국신 외	17,5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1</i>	김국신 외	17,500원

기타

2009 Lee Myung-bak Government's North Korea Policy	Suh, Jae-Jean	5,500원
2009 김정일 현지지도 동향 1994-2008		15,000원
2009 The U.S.-ROK Alliance in the 21st Century	Bae, Jung-Ho, Abraham Denmark	10,000원
2009 북한의 주요현안과 한·미 전략적 공조	배정호	10,000원
2009 오바마 행정부의 출범에 따른 미·중관계의 변화와 한반도	배정호	10,000원

2010	김정일 현지지도 동향 1994~2009		15,000원
2010	2010 독일통일백서		13,000원
2010	21세기 러시아의 국가전략과 한·러 전략적 동반자관계		10,500원
2010	Russian National Strategy and R.O.K.-Russian Strategic Partnership in the 21st Century		13,500원
2010	NPT 체제와 핵안보		13,000원
2010	Nuclear Security 2012: Challenges of Proliferation and Implication for the Korean Peninsula		15,000원
2010	통일 환경 평가(통일대계 연구 2010-01)	박종철 외	18,000원
2010	통일비전 개발(통일대계 연구 2010-02)	조민 외	12,000원
2010	독일의 평화통일과 통일독일 20년 발전상(통일대계 연구 2010-03)	황병덕 외	16,000원
2010	사회주의 체제전환 이후 발전상과 한반도통일-중국, 베트남 및 중동부 유럽 국가들의 사회주의 체제전환 중심(통일대계 연구 2010-04)	황병덕 외	15,000원
2010	전환기의 북한과 통일담론(통일대계 연구 2010-05)	배정호 편저	11,000원
2010	한반도 통일과 주변 4국(통일대계 연구 2010-06)	최진욱 편저	11,000원
2010	Korean Unification and the Neighboring Powers(통일대계 연구 2010-07)	최진욱 편저	13,000원
2011	US-China Relations and Korean Unification(Grand Plan for Korean Unification 2011-05)	최진욱 편저	12,000원

연례정세보고서

2009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9~2010	7,000원
2010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10~2011	7,000원

통일정세분석

비매품

2008-12	한·러 정상회담 결과분석	여인곤
2009-01	2009년 북한 신년 공동사실 분석	최진욱, 전현준, 정영태, 조정아, 최수영, 박영호, 박형중
2009-02	하반기('08년 7월~12월) 북한의 정세 분석	최진욱, 임순희, 전현준, 정영태, 조정아, 최수영
2009-03	북한의 대남 비방 공세의 의도와 전망	최진욱, 전현준, 정영태
2009-04	북한의 제12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결과 분석	전현준
2009-05	2008년 북·중무역의 주요 특징	임강택, 박형중
2009-06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1차 회의 결과 분석	최수영, 정영태
2009-07	한·미 정상회담 결과분석	김국신
2010-01	2010년 북한 신년 공동사실 분석	임강택 외
2010-02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2차 회의 결과 분석	최수영
2010-03	김정일 방중과 중국의 전략외교	배정호, 박영호, 전병곤
2010-04	2010상반기 북한정세 분석 보고서	정영태, 이교덕, 최수영, 임순희, 조정아
2010-05	독일통일 20주년 조망: 독일통일이 한반도 통일에 주는 시사점	황병덕
2010-06	야로슬라블 한·러 정상회담 결과 분석	여인곤

2010-07	북한 3대 세습 후계구도 분석 및 정책변화 전망	김진하
2011-01	2011년 북한 신년 공동사실 분석	최진욱 외
2011-02	미·중 정상회담의 의미와 한국의 전략적 고려사항	배정호 외
2011-03	2011년 미·중 정상회담 평가: 동북아 및 한반도에의 함의	황병덕 외
2011-04	2009년 헌법 개정 이후 북한 노동법제 동향	이규창
2011-05	최근 북한주민의 의식변화와 정책적 시사점	임순희
2011-06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4차 회의 결과 분석	임강택, 최진욱
2011-07	중동 민주화 혁명과 한반도 전략적 함의	배정호, 박영호, 박재적, 이기현
2011-08	북한의 여성권·아동권 관련 법 제정 동향	임순희, 김수암, 이규창
2011-09	상반기 북한정세 분석 보고서	최진욱, 임강택, 임순희, 정영태, 김진하, 한기범

KINU 정책연구시리즈

비매출

2009-01	신평화구상 실현을 위한 전략과 과제	김규륜 외
2009-02(I)	접경지역의 평화지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I): 접경지역 평화적 이용을 위한 이론적 검토와 사례연구	손기웅 외
2009-02(II)	접경지역의 평화지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II): 접경지역 평화적 이용을 위한 기존제안 검토	손기웅 외
2009-03	대북정책의 대국민 확산방안	조한범 외
2009-04	통일 예측 시계 구축	박영호, 김지희
2009-05	북핵일지 1955-2009	조민, 김진하
2009-06	미국 대북방송 연구: 운용실태 및 전략을 중심으로	이원웅
2010-01	한반도 녹색성장을 위한 남북한 산림협력 법제 개선방안 예비연구	이규창
2010-02	2010년 통일예측시계	박영호 외
2010-03	북한 경제개발계획 수립방안 연구: 베트남 사례를 중심으로	임강택 외
2010-04(III)	접경지역의 평화지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III): 정책제안	손기웅 외
2010-04(IV)	접경지역의 평화지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IV): 2010년 「코리아 접경 포럼」 자료집	손기웅 외
2011-01	재스민혁명의 분석과 북한에 대한 시사점	박종철 외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비매출

2009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4권 1호	박영호, 이금순, 김수암, 홍우택
2009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4권 2호	박영호, 이금순, 김수암, 홍우택
2010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5권 1호	김국신, 김영윤, 전현준, 이금순, 이규창
2010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5권 2호	김국신, 전현준, 이금순, 이규창
2011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6권 1호	김수암, 전현준, 이규창

- 2009-01 The Evaluation of Regime Stability in North Korea: Scenario Workshop
Choi Jin-Wook, Kim Kook-Shin, Park Hyeong-Jung, Cheon Hyun-Joon
Cho Jeong-Ah, Cha Moon-Seok, Hyun Sung-Il
- 2009-02 Developing Inter-Korean Economic Relations for the 'Advancement of the Korean Peninsula
Lim Kang-Teag, Kim Kyu-Ryoon, Jang Hyung-Soo,
Cho Han-Bum, Choi Tae-Uk
- 2009-03 The Everyday Lives of North Koreans
Cho Jeong-Ah, Suh Jae-Jean, Lim Soon-Hee, Kim Bo-Geun, Park Young-Ja
- 2009-04 North Korea's Regime Maintenance Policy Since the Kim Jong-il Regime and Prospects
for Change Chon Hyun-Joon, Jeung Young-Tae, Choi Soo-Young, Lee Ki-Dong
- 2010-01 Strategy for Encouraging North Korean Opening: Basic Direction and Sequential Tasks
Choi Jinwook, Lee Kyo-Duk, Cho Jeong-Ah, Lee Jin-Yeong, Cha Moon-Seok
- 2010-02 Unification Clock: Predicting Korean Unification Park Young Ho
- 2011-01 A New Approach to the National Community Unification Formula
Park Jong Chul, Hong Woo Taek, Lee Kyu Chang, Kim Philo, Chun Chae Sung,
Cho Seong Ryoul, Hong Ihk Pyo, Hwang Sun Hye

- 2010 2010 Unification Clock: When We Meet a Unified Korea Park Young Ho
- 2010 In Search of New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Kim Kyu-Ryoon

■■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민족공동체 실현을 위한 국민 역량을 축적하고 통일환경 변화에 적극적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일문제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자 연간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회원에게는 간행물을 우편으로 우송해 드리며 각종 학술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1. 회원 구분

- 가)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나)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소속 연구종사자
- 다)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2. 가입방법

- 가) 『회원 가입신청서』 작성
- 나) 신한은행 140-002-389681(예금주: 통일연구원)으로 계좌입금
- 다) 연회비: 학생회원 7만원, 일반회원 10만원, 기관회원 20만원

3. 회원 특전

- 가)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
- 나)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인 『통일정책연구』,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단행본 시리즈인 연구총서, 학술회의 총서, 협동연구총서, 통일정세분석 등 우송
- 다) 도서관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
- 라) 구간자료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

4. 회원가입 문의

- 가) 주소: (142-728) 서울시 강북구 한천로 1307(수유동)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출판정보관리팀 도서관 담당자(pcm@kinu.or.kr)
- 나) 전화: (02)901-2559, FAX: (02)901-2547
- 다)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 가입기간 중 주소변경시에는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